

#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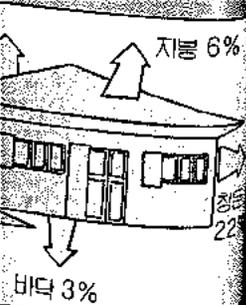
大韓建築士協會誌 NOVEMBER 1982, No. 164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이파



몰입니다

스티렌의  
단열재로  
서는 건축  
시회 호성  
소를 참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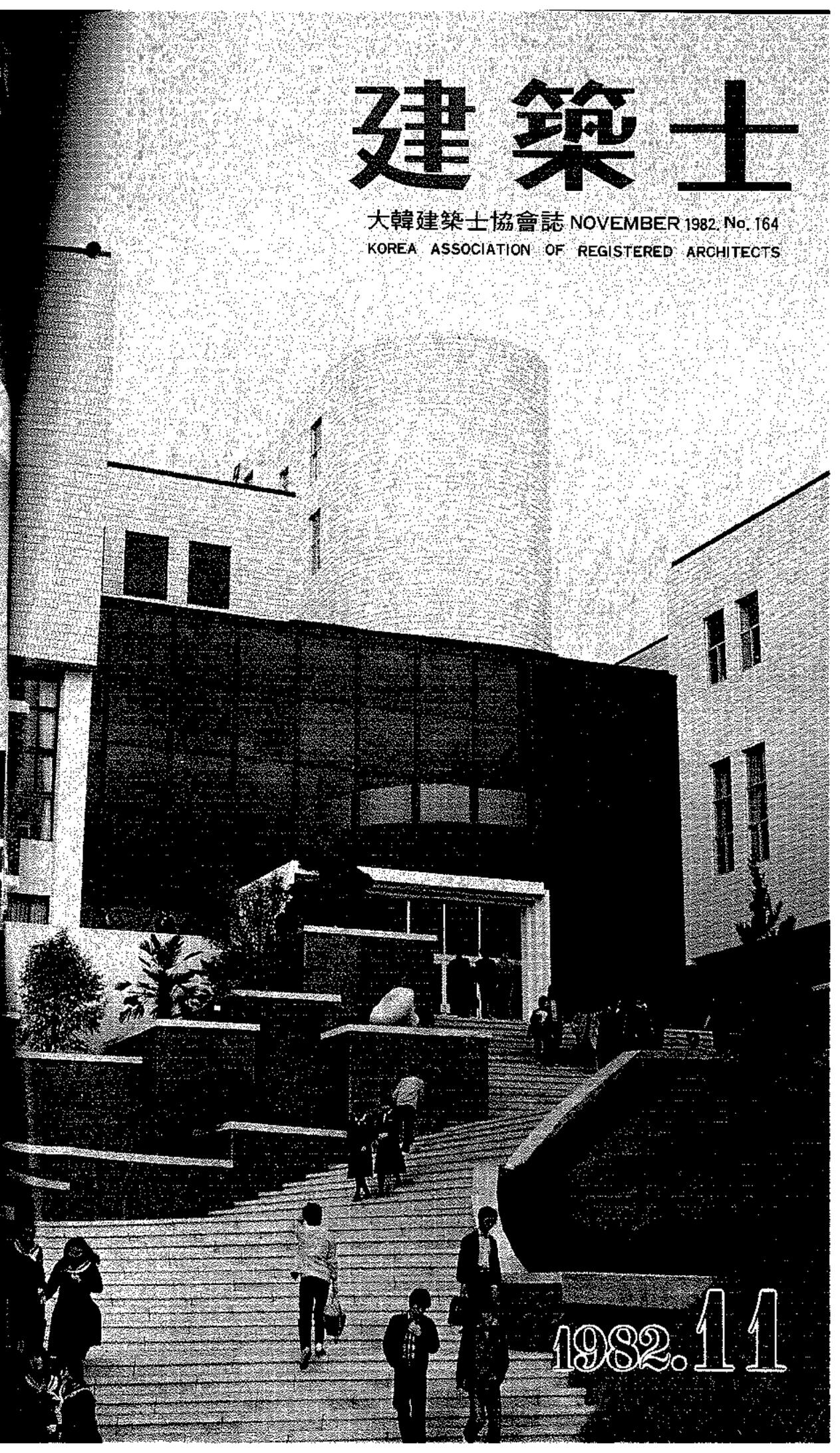


지붕 6%

창문 22%

바닥 3%

SF



1982.11

# 플로트 공법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플로트 유리시대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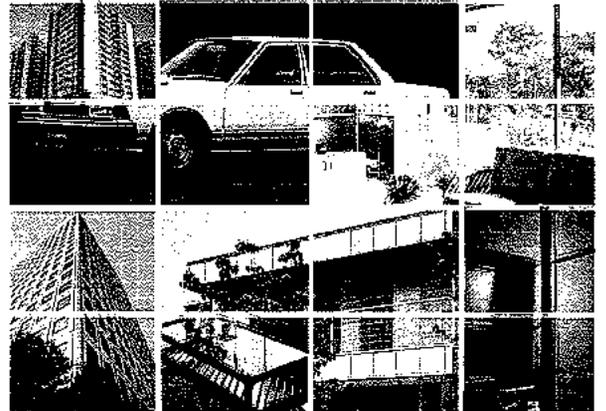
플로트 유리(Float Glass)란 인류가 발명해 낸 유리 중 가장 고급스런 품질의 유리로, 플로트 공법으로 만든 유리를 말합니다.

종래 멋진 환경을 꾸미시는 분, 품위있는 건물을 짓는 많은 분들이 찾았던 英國製 유리, 그것이 바로 플로트 유리로 韓國유리가 새로이 생산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영국의 필킹톤社(Pilkington Brothers Co.)가 개발하여 세계적 특허를 갖고 기술을 보급한 이 플로트 工法은, 금속욕조(Tin Bath)에 朱錫(Tin)을 녹여 그 위로 유리물을 水平으로 흘러보내 만드는 製造方法을 말합니다.

따라서 플로트 유리는 表面이 아주 고르며, 大型化가 가능하고 또 모든 工程을 컴퓨터로 조정하므로 결점없는 최고의 品質이 보장됩니다.

이 플로트 유리는 세계에서 10여개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을뿐인 세계적 제품입니다.



## 플로트 유리의 장점

1. 視覺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2. 모든 工程을 컴퓨터化 하여 品質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價格이 저렴합니다.
3. 모든 加工유리(복층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裂鏡유리, 기타)에 이상적입니다.
4. 厚板유리는 그 자체로서 防音, 防熱의 효과를 냅니다.
5. 두께와 規格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제품특성

두께 (%)	무 과 특 성					열전달률 Kcal /m <sup>2</sup> hr°C
	가시광선 투과율 (%)	반사율 (%)	흡수율 (%)	적외선투과율 (%)	반사율 (%)	
3	90.1	8.0	7.4	84.9	7.7	5.88
5	89.1	7.9	11.5	81.1	7.4	5.78
6	88.6	7.9	13.5	79.3	7.2	5.75
8	87.6	7.8	17.2	75.8	7.0	5.59
10	86.7	7.7	20.6	72.6	6.8	5.56
12	86.7	7.6	23.8	69.6	6.6	5.46

## 두께별 최대규격

두께 (m/m)	길이×폭 (m/m)	길이×폭 (inch)
3	2138×1220	96×48
5	3048×2134	120×84
6	3048×2438	120×96
8, 10	8380×3048	330×120
12, 15, 19	8380×3048	330×120

※ 15m/m이상의 유리제품은 주문생산합니다.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HANKUK GLASS INDUSTRY CO., LTD.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54

783-0311·0911-3711·3911

※ 자세한 문의는 당사 영업부나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月刊 建築士

November 1982. No. 164

U. D. C. 69/72(054-2) : 0612(519)

發行所: 大韓建築士協會 / 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 89 / 郵便番号: 110  
光化門郵遞局 特刊函 第795番 / 電話 723-9491 ~ 2, 723-4287, 724-1045  
免行人 兼 編輯人: 具 琬 會 / 登錄番号: 第라-125 / 登錄: 1967.3.23  
發行: 1982.11.15 / 非売品 / 印刷人: 金 允 坤 (福祉文化社 / 265-7323)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 目次

# 1982.11

論 壇	"未來指向的인 轉機마련  필요"	金枝泰	2
프 리 즘	獨立紀念館建立을 앞두고 獨立紀念館建立과 建築界의 役割 "새로운 創造的 造形필요" "궁극적 실제에 도달하는 일"	金正澈 安秉義 金琪碩	12 14 16
	住居環境의 質을 가늠하는 指標	金 麟	18
	에너지節約的 建築設計를 위한 考察	朴相東	47
	會員設計作品		35
	● 부산 시민도서관 (공간건축연구소) 崔行雄		36
	● 제일은행 청주지점 (건축설계연구소삼정) 金基雄 · 朴英建		38
	● 성암야영장 (미진·신진건축설계사무소) 洪鍾植		40
	● 한일은행 본점 (원도시건축연구소) 尹承重 · 卞 鎔		42
	●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신조건축연구소) 吳雄錫		44
	● 동광빌딩 (유니온건축연구소) 朴智遠 · 李外龍		46
傳統建築	서울의 南大門	申宋勳	21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 [Ⅲ]: 連載		29
	建設業에 있어서의 設計 VE [I]: 連載		66
	인테리어 디자인의 實際 [Ⅱ]: 連載	朴 弘	33
現 場	제 1 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24
海外作品	CONFERENCE CENTRE: Princeton, New Jersey, USA		62
	□ 협회소식		3
	□ 건축계 뉴스		26
	□ 질의응답		59
	□ 건축자재 소개		73
	□ 법개정내용		75
	□ 신입 회원		96
	□ 회원 동정		97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판번호	통권 제 164 호
구입년월일	1982.11.15
대한건축사협회 서울도지부	

### 編纂委員會

委員長	朴商浩
委員長	李明浩
~	姜健熙
~	朴秀煥
~	李榮一
~	金漢根
~	金基哲
~	姜哲求
~	趙東榮



표지설명: 부산시민도서관  
설계: 崔行雄

# “未來指向的인 轉機 마련 필요”

金 枝 泰 -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親愛하는 會員여러분.

지난 10월 29일 本會 第17回定期總會에서 淺學非才한 本人이 14代 會長으로 莫重한 責任을 맡게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주어진 職務를 어떻게 遂行해서 協會發展에 寄與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活動하는 昨今の 諸般條件은 급변하는 世界情勢와 오랜 景氣침체로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時期에 처해있으며, 따라서 會員事務室의 運營도 여의치 못한 實情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協會는 會員여러분들의 協助에 힘입어 業務의 幅을 넓히고 나아가 會員의 權益보호와 地位向上을 위해 不斷히 努力하고 있음을 會員의 한 사람으로서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協會가 建築文化 暢達과 會員의 權益추구를 위해 創立된 지 어언 18년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선배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名実共に 우리나라 建築界를 主導하는 団体로서 成長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時點에서 本人은 協會運營을 責任지는 會員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발자취를 헤아려 새로운 도약을 위한 轉機마련을 위해 會員여러분의 高見을 바탕으로 未來指向的인 目標設定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점의 解決과 나아가 協會育成發展을 전제로한 長期的인 眼目에서 몇가지 事業을 展開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協會組織運營體制를 보다 發展的인 見地에서 變化시키기 위한 試圖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즉 支部運營에 탄력성을 부여해서 活性化하기 위해 自律的인 運營體로서 外

國의 경우와 같은 聯合會制度의 導入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多角的인 연구와 기초적인 作業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昨今の 建築景氣 침체와 여의치 못한 條件으로 날로 減少되어가는 設計事務所의 필수 要員인 우수 건축설계 보조사를 確保하고, 나아가 보호육성하기 위한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關係當국의 협조아래 부설 研修棧構를 설치 운영하여 그들에게 업무에 대한 금지 和 資質向上으로 보다 밝은 將來의 건축인으로서 自負心을 갖도록하는 指導育成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限定된 會員業務의 領域을 넓히고 國家的인 命題앞에 부응할 수 있는 次元에서 受容態勢를 갖추기 위한 業務開發 내지 技術研究開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部門에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몇가지 協會運營目標設定은 비단 本人의 在任 때에만 局限해서 展開해야 할 일은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未來指向的인 사업이면서도 당면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고 이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느 한 個人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2千餘 會員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성취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會員여러분의 보다 많은 參與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협회발전이 곧 회원개인의 권익추구와 지위 향상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다 진지하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줄 압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주어질 責務가

建築藝術을 진작시키 文化를 꽃피우게 함은 물론 더불어 國家政策에 호응해서 公益에 이바지함은 余他 專門職種에 앞서있어 실로 그 召命意識이 크다는 것은 再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숭고한 使命感을 망각한 일부 會員들의 非違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全體會員의 權益과 地位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社會的인 地탄을 면치못하고 있어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造形藝術을 통한 建築文化暢達과 밝은 社會造成에 앞장선다고 自負하는 우리들의 금지를 提高하고 보다 많은 權益伸張과 品位向上을 위해서도 會員業務와 相關한 非違행위는 하루속히 불식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本人은 지난 總會에서 決議된 여러가지 事業計劃을 遂行함에 있어 우리의 條件을 최대한 감안해서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約束드리며, 予算執行면에서도 건축을 통한 內實있는 運營으로, 최소의 予算으로 최대의 效果를 거둘 수 있도록 努力하겠습니다.

부디 協會가 會員여러분의 共同体이며 求心點인 동시에 對話의 場으로서 우리의 삶의 地진임을 생각할 전대,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結속으로 상부상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나아가 協會를 믿고 忠화단결하는 것만이 우리의 권익을 爭取할 수 있는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어떤 先入見을 가지고 協會를 白眼視하는 風潮는 止揚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協會의 새로운 未來가 우리의 團結과 協調 여하에 따라 明暗을 달리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끊임없는 지도 轉달을 바라마져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제17회 定期總會 개최

金宗鎬 長官 등 來賓 다수 참석

新任 會長에 金枝泰씨 被選

## 第17回 定期總會 및 建築士 去來秩序 決意大會

大韓 建築士 協會



□제17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29일 내빈다수와 전국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 17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29일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건축사 거래질서 확립결의대회를 겸해 열린 이날 총회에는 金宗鎬건설부장관을 비롯해서 국회건설위원회 申元湜의원, 金報根건설부 주택국장 그리고 대한건축학회 金根德회장과 한국건축가협회 李丞雨회장 등 내빈 다수와 1백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오11시 具琬會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렸다.

본회의에 앞서 具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경기의 침체로 회원 사무실 운영난이 심각했던 시가였다고 지난해를 회고하고 "재임 2년간 협회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대외 이미지제고와 5대정책사업을 근간으로 각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회원 권이 보호 내지 지위향상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만료된 具회장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근간 사업은 신임회장이 취임해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재임기간 중 회원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金宗鎬장관은 처사에서 우리나라 건축계를 이끌어 나가는 협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회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전제하고 건축물은 한시대, 한민족의 문화를 가름하는 귀중한 유산으로서 이에 중사하는 회원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작은 주택을 설계하는데도 정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건축한국의 참모습을 세계에 보여 줄 좋은 기회로서 회원들의 활약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金장관은 "회원여러분들은 개인의 영리를 떠나 새역사건설에 앞장서 줄 것"과 이에 따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金宗鎬장관의 축사에 이어서 金根德건축학회 회장과 李承雨 건축가 협회 회장의 축사가 각각 있었으며 끝이 金基壽부회장의 신임인사가 있었다.

계속해서 10명의 원로회원에 대한 추대회원 추대와 대구지부 및 전남지부의 단체 표창이 있었으며 이어서 임원 및 시도지부장 재임시의 공로를 기리는 공로패가 각각 수여되었고 또 모범 직원 6명에대한 표창이 있었다.

이어서 본회의에 접어들어 82년 제 1회 임시총회 회의록 승인을 비롯 31개항에 달하는 주요업무보고와 尹鉦감사와 李康楨감사의 감사 보고가 각각 있었다. 지난 9월22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본부 및 지부감사 결과를 보고한 감사보고에서는 "협회 업무 수행면에서 문서규정 및 계약식의 제정 등으로 업무질서를 확립하고 성년기도달한 위용을 갖추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계속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업무

“ 새 歷史創造에 앞장서기를...”



親愛하는 建築士 여러분! 오늘 大韓 建築士協會 第17次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本人이 致辭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生覺합니다.

貴協會가 創立된 以來 17년이만 歲月이 흐르는 동안 이제 2千의 會員을 거느리며 그 規模나 活動範圍가 크게 成長하였을 뿐 아니라 會員을 爲한 協會로서 會員의 福利增進에 不斷한 努力을 傾注하여 왔음은 勿論 建築技術의 發展에 參與한바 至大함을 本人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貴協會의 發展은 任職員 여러분과 이 자리에 모인 代議員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時間에도 全國 방방곡곡에서 活動하고 계시는 建築士 여러분들의 團結된 힘과 努力의 結果라고 믿어 다시한번 致賀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建築士 여러분, 이제 우리 國民은 그간 國內外的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克服하고 새로운 歷史를 創造함으로써 民主福祉, 正義社會를 具現함과 아울러 文化의 暢達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찬 발 걸음으로 前進하고 있는바, 建築分野에 있어서도 建築士 여러분은 過去 우리의 祖上들이 꽃피웠던 산연한 建築文化를 繼承發展시키는 한편 世界 先進建築技術과 겨루어 조금도 遜色없이 앞서 갈 수 있도록 不斷한 努力을 傾

注하여야 하겠습니다.

建築物은 人間生活을 담는 그릇일 뿐 아니라 建築物이 그 内外空間을 通하여 創出하는 아름다움은 그 社會와 그時代 文化를 反映하는 尺度가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는 많은 國家자원이 投入된다는 점에서 政府는 國家施策으로 建築文化의 發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작은 住宅 한채를 設計할 때에도 이것이 곧 國家發展에 直結된다는 점과 傳統文化를 創造한다는 것을 銘心하여 加一層 研究 努力함으로써 社會로부터 尊敬받는 建築士像을 定立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6年後에는 全世界 人類가 注視하는 가운데 '88올림픽이 우리의 首都 서울에서 開催됩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文化와 우리의 모든 것을 世界에 알리는 좋은 機會가 되도록 各分野別로 이에 對備한 各種準備를 착착 進行中에 있으며 이중에서도 建築이 차지하는 比重이 莫重한만큼 建築士 여러분들의 活躍이 크게 期待되고 있으니 이 拳國의 큰 事業에 여러분들의 獻身の 奉仕를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建築士 여러분, 이제 우리는 民主福祉國家建設과 世界文化 속에 우리文化를 빛낼 歷史의 使命 앞에서 個人의 賞利나 利益만을 爲하여 事理들

分別 못하거나 大義를 忘却하는 舊態依然한 姿勢를 버리고 우리 모두가 時代의 主人으로서 새 歷史創造의 隊列에서 熱心히 일해야 하겠습니다.

世界의 一部에 不過했던 우리의 活動舞臺도 이제 검은 大陸 아프리카까지 벌어 五大洋 六大洲 구석구석에 大韓의 자취를 심어가고 있으며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모든 方面에서 先進隊列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 激動하는 世界 속에서 보다 賢明하게 対処하고 永遠이 繁榮할 새나라 建設을 向한 新時代의 기틀을 다지기 爲하여 各界 各層에서는 社會淨化運動과 意識改革運動을 活潑히 展開하고 있습니다. 이에 建築士 여러분도 새로운 覺悟로 앞날의 座標를 設定하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政府에서도 建築士 여러분의 業務伸張과 權益保障을 爲하여 最善을 다 할 것이니 여러분에게 賦與된 國家의 使命을 認識하고 全會員이 一致團結하여 資質向上은 勿論 建築技術의 研究 發展을 爲하여 不斷히 精進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貴協會의 無窮한 發展과 會員여러분의 健闘를 祈願하면서 致辭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2年 10月 29日

建設部長官 金宗鎭

를 합리적으로 配제되하여 시도지부의 행정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간소화에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에 이어서 부의안건처리에 들어가 건축사법개정에 따른 준회원 제도의 신설과 협회윤영상 일부제도 개선 및 보상을 위한 정관개정을 비롯해서 12개항에 달하는 83년도 사업계획승인과 총규모 약 1억 2천만원 정도 수지에산안 승인 건과 82년도 추가개정예산 승인 및 기타사항들이 차례로 처리되었다.

오후 4시 30분경에 접어들어서는 회

장 및 일부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개선이 있었다.

張起仁회원이 임시 회장으로 진행된 임원개선에서 신임회장에는 金枝泰 전 서울지부장이 참석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며 이사에는 金仁錫, 李用夏, 尹鳳源, 金漢根, 金曠植, 成勳燮회원, 감사에는 朴弘雨회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임원개선을 끝으로 오후 6시경 협회발전원 기약하는 만세삼창을 부르고 제17회 정기총회의 막을 내렸다.

한편 총회에 앞서 건축사현장 선포와 건축사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결의

문제백이 있었다.

具琬會회장 감사패 받아 建築家協會로 부터

한국건축가협회는 본회 具琬會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지난달 29일 본회 17회 정기총회석상에서 있었던 증정식에서 건축가협회 李丞雨회장은 지난 10월에 동협회가 주관한 제 1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공로를 높이 기리기 위해 전회원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 제17회 定期總會 / 具琬會 會長 開會辭全文

## 理想實現 위한 協助體制 필요



존경하는 建設部長官님, 그리고 大韓 建築學會會長님, 韓國建築家協會會長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全國 代議員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17회 定期總會에서 本人이 개사회를 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國政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빛내 주신 長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定期總會가 지나간 한해동안 協會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 內實을 살펴보고 다시 앞으로의 한해를 設計하는 貴重한 자리로서 2千여 會員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視野를 넓혀 建築士界, 나아가 우리나라 건축계에 여계와 오늘을 의미하고 來日을 함께 생각하는 길이있는 時間이기도 한데에 보다 값진 意味가 있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모든 면에서 어려운 해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經濟를 주도해 나가는 건축경기의 不況은 國民經濟를 不安하게 했고 따라서 우리會員들의 作品활동도 저조해서 設計事務所운영마저 심각했던 時期였습니다. 本人이 協會 會長으로 在任한 지난 2년간 外部的인 여건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웠던 時期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本人은 會員여러분의 協助에 힘입어 우리의 權益을 보호하고 地位를 向上시키는 母體는 協會뿐임을 確信하고 協會育成 發展에 가능한 한 모든 힘을 기울여 協會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在任 첫해인 지난 81년에는 會員의 權益과 地位向上을 위한 청경은 우선 우리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方法의 하나로 보다 強力한 求心體로서의 協會像 具現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協會를 보는 對外 이미지를 提高하고 아울러 協會機能을 活性化하기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무처의 行政體系를 확립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으로 본연의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고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5大政策事業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기본정책 사업을 근간으로 協會機能의 正常軌道進入을 확고히 다지고 會員을 위한 會員의 協會育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안고있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아직도 一部 會員들의 이해와 協助의 不足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現實에서는 우리가 갈망하는 바람직한 風土造成과 나아가 協會의 發展을 기대한다는 것은 실로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의 權限과 地位向上을 저해하는 요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活動하는 社會에서 支持를 받고 있다는 것은 곧, 전문직업인 이면서도 전문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權利를 포기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實情을 하루속히 刷新하기 위해서는 發展적요인에 대한 가치없는 제재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協會를 求心點으로 한 강력한 공동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一部 會員들의 자각과 공동체인 協會가 제 機能을 착실하게 발휘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명제인 建築文化의 칭달이 가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會員은 會員 相互間의 협조체제가 갖춰져야 하고 協會는 會員을, 또 會員은 協會를 묶는 상호보완 내지 相互 協助 체제가 조직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고 믿습니다.

헤아려보면 協會創立以後 오늘날까지 이만큼 協會가 성장하기 까지는 많은 난관과 이를 슬기롭게 대처한 선배회원 여러분의 노고가 뒷받침 되었다고 믿으며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고충도 결국 우리 스스로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숙제로서 會員모두가 현실을 直視하고 새로운 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이 協會의 發展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責任을 다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협회의 根幹事業은 연계성을 가지고 會長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協會運營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과는 달리 규모면에서 다소 폭이 넓어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특히 協會의 체제가 새로운 형태로 변한다면 여러가지로 예산상의 효율화도 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협회 체제 및 제반 여건으로서는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다소간의 예산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지난 한해를 결산하면서 2千여 會員의 命運을 좌우하는 우리의 協會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또 보다 나은 협회운영방안은 어떠한 것인가를 代議員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해있는 現實 속에서 우리協會가 응성해지고 우리가 갈고닦는 建築藝術의 참다운 승화를 위하는 길은 비방과 경원, 물이해와 비협조가 아닌 성원과 참여, 이해와 協助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本人이 在任한 지난 2年間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會員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開會辭에 거듭합니다.

## 定期理事會 개최

### 支部長會議도 열려

제17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사회와 지부장회의가 지난날 20일 각각 열렸다. 상오 10시부터 지부장 회의에

앞서 열린 제10회 이사회에서는 부의 안전으로 예비비 사용 및 목간전공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경기도지부 직원 채용의 건, 독립기념관건립성금 가운데 일부를 일선장병 위문금으로 전용하는 건에 대한 승인 등이 논의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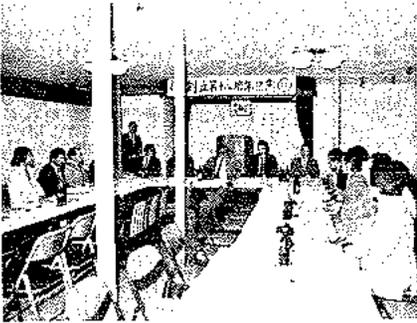
다.

또 총회 개최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한 세부점검이 있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는 83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제반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교환

이 있었다. 이어서 정기총회 개최를 앞두고 주요 안전에 대한 협의와 협회의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創立18周年기념식



협회 창립 18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0월23일 본회 전시실에서 열렸다.

역대회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具琬會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립이후 협회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앞으로 더욱 회원을 위한 협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임을 강조하고 재임 2년간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姜奉辰 前회장은 축사에서 초창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나 내실면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치하하고 특히 협회 대변지로서 건축사지가 제구실을 다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다과회를 갖고 고간의 협회 성장 과정 등에 대한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본부 및 서울지부 임직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잠실고수부지 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지부 회원이 주축이된 동부 건축사 연합친목회가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 定期監査 실시

82년도 정기 감사가 지난 9월22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각지도 지부를 비롯해서 본부를 마지막으로 실시되었다. 尹錡감사와 李康植감사가 지부별로 나누어 실시한 이번 감사는 본부 및 지부운영에 따른 전반사항을 총망라해서 살펴 본 것으로 17회 정기 총회에서 감사결과가 종합 보고되었다.

다음은 지난 제17회 정기총회에서 추대된 추대회원과 공로패 및 모범표창 수상자 명단을 적은 것이다.

### 〈추대회원 명단〉

- 許 楸 (성일동화건축 대표)
- 金 榮 (광성합동건축 대표)
- 崔昌奎 (신진건축 대표)
- 金洞銀 (오성합동건축 대표)
- 千昌吉 (양지건축설계 대표)
- 金台植 (한미건축설계 대표)
- 趙泳錫 (가보건축연구소 대표)
- 裴漢九 (비·케이 건축설계 대표)
- 申文澈 (동양신도시합동건축 대표)
- 黃福明 (도일건축설계사 대표)

### 〈공로패 증정〉

- 金校泰 (서울지부장/삼아건축 대표)
- 張起秀 (부산지부장/동인건축 대표)
- 金在佑 (대구지부장/한남건축 대표)
- 金晶滌 (인천지부장/시대극동건축 대표)
- 李錫九 (경기지부장/조건설합동 대표)



□총회장에 입장하는 金宗鎬장관



□致辭를 하는 金宗鎬장관



□회의중인 대의원



□감사보고를 하는 尹錡감사

- 李國男 <강원지부장 / 국남건축대표>
- 吳世炯 <충북지부장 / 종합건축대표>
- 柳根洙 <충남지부장 / 류근열·정인협 건축대표>
- 文尚植 <전북지부장 / 대도건축대표>
- 金映植 <전남지부장 / 국제설계대표>
- 孫在守 <경북지부장 / 경주제일대표>
- 曹台和 <경남지부장 / 태화설계대표>
- 金守賢 <제주지부장 / 금강종합대표>
- 安箕泰 <본회이사 / 동화건축대표>
- 閔榮基 <본회이사 / 정원건축대표>
- 朴商浩 <본회이사 / 석림건축대표>
- 宋鶴杓 <본회이사 / 남성건축대표>
- 金一榮 <본회이사 / 동지건설대표>
- 尹 錕 <본회감사 / 도시종합설계대표>
- 李康植 <본회감사 / 주·완종합설계대표>

〈모범직원 표창〉

- 李 燾 <본부 총무부 서무과>
- 姜金善 <서울지부 총무과장>
- 李景錫 <대구지부 총무과장>
- 權重浩 <경기지부 총무과장>
- 呂榮玉 <충남지부 서무과>
- 崔性雲 <전북지부 총무과장>

建 築 士 憲 章

1. 建築士는 造形創作 藝術人으로서 創意力을 發揮하여 建築文化 暢達에 이바지 한다.
2. 建築士는 國民의 快適한 生活空間과 環境의 改善을 위하여 建築士業務를 誠實히 遂行한다.
3. 建築士는 技術開發과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위하여 專門人으로서의 使命을 다한다.
4. 建築士는 友愛와 信義를 바탕으로 會員 相互間에 協同하여 명예와 品位를 保存한다.
5. 建築士는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國土建設의 先峰이 되어 國家와 社會에 獻身的으로 奉仕한다.

1982. 10. 29.

大韓建築士協會



□ 대구지부 표창패 수여



□ 전남지부 표창패 수여



□ 人事말을 하는 金箕泰신임회장



□ 모범직원 표창패 수여

《新任 任員 프로필》

다음은 지난 10월 29일에 개최된 본회 제17회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회장·이사·감사)의 주요 프로필을 간추려 소개한 것이다. <편집자>



◆ 金暎植이사

- 1933·2·28일생 전남
- 조선대 공대건축공학과 졸업
- 대한건축사협회 전남지부장
- 전남 도시계획위원
- 범 민족 올림픽추진 전남 위원회 위원
- 전남 정책 자문위원
- 국제설계사무소 대표(현)



◆ 尹鳳源이사

- 1937·3·29일생 경기
- 한양대대학원 건축과 졸업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 감사·간사·윤리위원 역임
- 각 방송국 주택 상담역
- 대한건축사협회 편찬위원 역임
- 대한건축사협회 설비분과 위원장(현)
- 건축연구소 원건사 대표(현)

◆ 金枝泰회장

- 1926·1·30일생 서울
- 한양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 한국산업은행 주택기술실 근무
- 대한주택공사 건축과장
- 한양공대 건축공학과 강사
- 상공부 표준국 건축부 전문위원
- 대한건축학회 이사
- 대한건축사협회 총무이사
- 국민대학 건축공학과 강사
-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및 감사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장(현)
- 삼아건축연구소 대표(현)



◆ 李用夏이사

- 1934·3·15일생 서울
- 홍익대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홍익공전건축과 강사
- 한국건축가협회 구조분과 위원
- 홍익대 건축과 강사
- 건축구조분야 기술사
- 국민대 건축과 강사
- 한국기술사회 이사
- 대한건축사협회 구조분과위원(현)
- 신건축기술연구소 대표(현)



◆ 成勳燮이사

- 1938·4·18일생 경남
- 부산대 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 울산 특별건설국 근무
- 건축시공 기술사
- 경남공전 건축과 강사
- 부산대 공대 건축과 강사
- 도성건축연구소 대표(현)



◆ 金仁錫이사

- 1931·5·29일생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숙명여대 근무
- 성균관대 시설주임
- 대한건축연구소 실장
- 美Russel Gibson Von Dohlen Architects 근무
-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대표(현)



◆ 金漢根이사

- 1936·12·18일생 서울
- 한양대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 국방부 건설본부 근무
- 텔타 건축연구소 개설
- 서울대 환경대학원 수료
-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 한양대 공과대학 강사
- 한중합설계사무소 대표(현)



◆ 朴弘兩감사

- 1935·12·15일생 충남
- 충남대 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 충남지구 청년회의소회장 역임
- 대한건축사협회 충남지부장역임
- 대전실업전문대학 강사
- 충남 도시계획위원(현)
- 충남대 공대 강사(현)
- 충남도정 자문위원
- 민정당 중앙위원(도시분과)(현)
- 협창 건축연구소 대표(현)

委員會소식

편찬위원회

열한번째 편찬위원회(위원장 朴商浩)가 지난 4일 오후에 열렸다.

회지 11월호 편집계획을 확정짓고 앞으로의 편집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작품 선정과 논문 등 기사심사가 있었다. 회원작품에는 한일은행 본점 작품을 비롯한 6개 작품과 논문을 게재키로 했다.



설계도서 분과위원회

설계도서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李丞雨)가 지난달 27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보충사항으로 각종삽도를 완성키로 한데 이어 83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한편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금년내로 완성키로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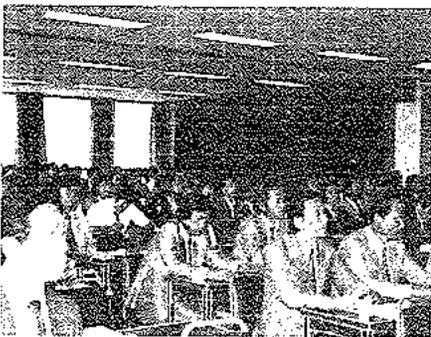
에너지 분과 위원회

에너지 분과위원회(위원장 李鍾寬)의 두번째 회의가 지난달 29일 열렸다. 소속 위원에 대한 위촉패전달식을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선정된 연구과제인 에너지를 이용한 건축물의 설계 자료정리와 태양열주택 관계자로 및 설계지침용 메뉴얼 발간 외에 시준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문제 연구를 추가과제보 선정했다.



회원 행정실무 강습회

서울지부회원 7백여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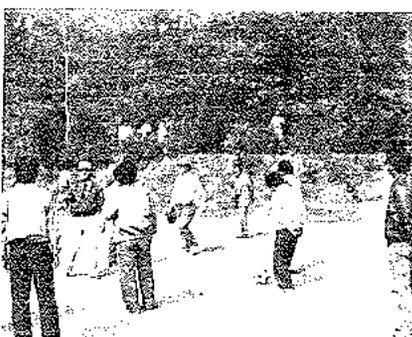


서울지부는 지난달 8일 건축실무 행정처리에 대한 회원강습회를 개최했다. 시내 중근당 빌딩 대강당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가진 이날 강습회에는 서울시청 건축지도과 盧泰植과장이 맡아 진행되었다.

모두 7백3명의 서울지부 소속회원이 참석한 강습회에는 ① 건축사사무소등록 및 신고 업무처리지침 변경 ② 건축사 사무소 실태조사 ③ 건축사 대행처리(조사 및 감사 업무) 건축물 확대 및 위법 건물 단속강화 ④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범위 및 건축허가 절차 업무 개정 ⑤ 잔존 부조리 체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뤘다.

회원 단합대회 가져

서울지부 자연보호 캠페인도



자연보호 캠페인을 겸한 서울지부(지부장 金枝燾) 회원 친목 단합 대회가 지난달 15일 열렸다.

경기도 고양군 송추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인데 이어 축구대회, 밥줍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진행으로 회원간의 친목을 다졌다.

서울 東部建築士 체육대회

잠실 고수부지 운동장서

서울지부 회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동부건축사 연합 친목회가 주최하고 강동지구 건축사 친목회가 주관한 제 8회 동부건축인 축구대회가 지난달

23일 열렸다. 잠실 체육공원 내 고수부지 축구장에서 열린 이날 축구대회에는 관련구청 건축과 팀을 비롯해서



지역별로 나눈 건축사팀과 본회팀 등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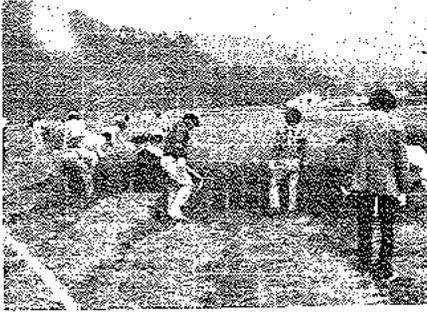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정 남국회의원을 비롯 강덕기강동구청장 등 1백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고적대의 취주악에 맞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농촌일손돕기 실시

대구지부 2천5백여평 거둬

대구지부(지부장 金在祐)는 농촌일손돕기운동 일환으로 벼베기 작업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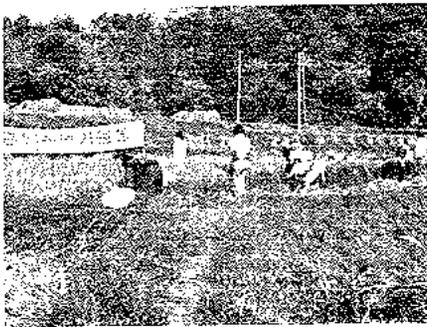
지난달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실시한 작업에는 회원 76



명과 직원 5명이 참석, 동구 봉무동에 있는 논 2천5백평에서 잘여문 벼포기를 모두 거둬들였다.

### 벼베기작업 도와

경기지부 화성군 마도면에서



경기지부(지부장 李錫九) 회원23명은 지난달 7일 바쁜 농촌일손을 도와벼베기 작업을 했다.

화성군 마도면에서 벌인 동지부 일손돕기 작업은 이날 오전부터 회원들

이 부지런히 벼베기를 실시 약 8백여평에 달하는 논이 벼를 거둬들였다.

### 취호대회서 大賞 수상

충북지부 鄭舜模회원

충북지부 소속인 鄭舜模(정화·기신 합동건축 설계사무소 대표) 회원이 제 6회 충청 취호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10일 충주중앙여고 강당에서 충청일보와 해동연서회가 공동주최한 이 대회에서 1천여명의 참가자를 물리치고 정순모 회원이 최고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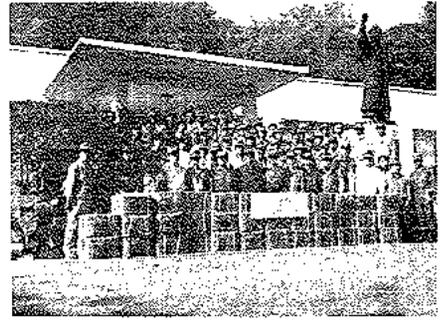
필력 6년인 정회원의 작품은 구양 순체로 단아하고 정제된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을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았으며 이미 지난 79년부터 이 대회에서 금상·은상등을 수상한 바 있는 실력 있는 작가로 알려졌다.

### 일선장병위문 실시

충남지부 위문품도 전달

충남지부(지부장 柳根洙)는 지난달 13일 장병위문을 실시했다.

동지부회원 60명은 이날 오후 1시 〇〇사단을 방문하고 극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 준비한 위문품 사과 70여 상자를 전달했다.



### 불우아동 찾아 위문 제주지부 추석선물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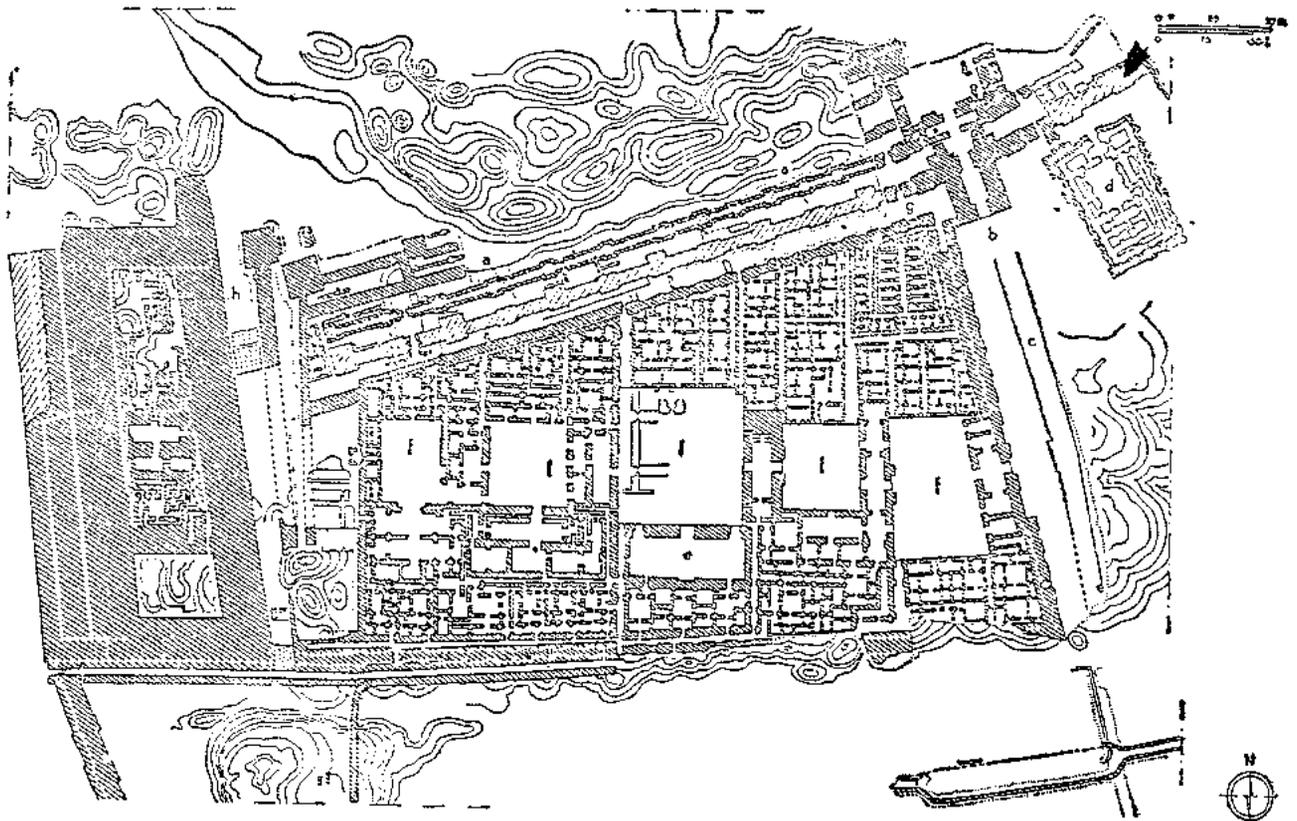
제주지부(지부장 金守賢)는 중추절을 앞두고 불우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지난 9월27일 동지부 임직원은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제주 보육원을 찾아 이들에게 학용품을 비롯한 식품류 1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주고 특히 결연을 맺은 아동 2명 등 1백10명의 원아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건축설계보조원취업안내

본회 서울지부에서는 회원사무소에서 일할 설계보조원 취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 이력서·경력서 각 1 통
  - 마 감 / 매월 20일 까지
  - 제 출 처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 사무국
- TEL 723-6258-8059



바빌론宮殿의 平面圖

連載 [ 6 ]

## 잃어버린 古代都市

### Ⅵ. 바빌론은 왜 폐허화 되었는가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유프라테스河畔에 있었던 고대도시이다. 바벨탑이나 바빌론탑으로도 유명한 이 도시의 이름이 역사상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즈카王朝(기원전 2350년경~2150년경)로 부터라고 전한다.

기원전 1830년경 아모리인에 의해 이 땅을 중심으로 바빌로니아 제 1王朝이 시작되면서 급속히 도시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하무라비法典으로 유명한 제 6 대의 왕 하무라비(기원전 18~17세기)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전성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 후 가끔씩 성쇠를 되풀이 하면서 기원전 689년에는 아시리아의 세나케리브에 의하여 파괴되지만 新바빌로니아時代(기원전 625~528년)의 배부가도네자르 2 세(기원전 604~562년 재위) 때 호화스런 건물이 속속 건립되어

궁전의 번영을 누렸다.

유명한 바벨탑이나 空中庭園이 세워진 시기도 이때이며 2층으로 외벽이 되어, 당시로서는 길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페르샤灣으로 부터 해상으로 통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로서 또는 고대 오리엔트의 세계적인 상업도시로서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의 페르샤軍에 의한 철저한 파괴로 그후는 쇠퇴일로를 걸었다.

알렉산드리아大王이 바빌론에 入城하면서 부터 세계제국의 수도로서의 역사가 시작되는 듯 싶었으나 그의 돌연한 죽음에 의해 그것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1세기경까지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폐허가 된 이 都市에 서면 그곳에는 끝없는 泥土의 퇴적에 의해 이루어진 구름과 불과 약간의 모양을 갖춘 벽돌쌓기의 벽과 기둥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太陽은 눈부시다기보다 그 光線이 눈에 보이지 않는 微粒子로 되어 마치 떠돌아 다니는 인상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빛이나 열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곳에서는 반대로 죽음을 연상시키게 한다.

빛은 밝다기보다 차라리 회백색이어서 하늘·길·땅의 흙, 泥土로 된 집의 벽들이 모두 회백색 일색으로 발라져 있는 것같이 보인다.

바빌론이 파괴된 것은 페르샤王의 노여움을 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그별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빌론이 문자 그대로 폐허화 되고한걸 채로서 돌아간 것은 인간의 일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자연의 運行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말라빠진 건조한 정적이 팽차있는 세계, 바로 이것이 오늘의 바빌론 모습이다.

자료제공 : 朴商浩(본회편찬위원장)

## 獨立紀念館 建立과

### 建築界의 役割

金正澈—주·정림건축



#### □ 明白한 역할을 알아야

70년대 말 우리 建築界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民族博物館 건립계획을 想起하게 된다. 당시의 刮目할 만한 經濟成長의 所産物이었던 이 民族的 사업은, 그러나 그 動機의 必然性이나 關心의 熱情度가 결코 不足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着想과 基礎調査에 그친 空論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금 그 오랜 民族的 宿願이, 간사한 일본인들의 歷史教科書 歪曲事件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獨立紀念館 건립이라는 汎國民的 念願으로 확산되어 감을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 建築人으로서 우리들의 할일은 무엇이며 우리 建築界의 使命과 責任은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이 舉國的인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깊이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중차대한 만큼 우리의 역할이 明白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集畵된 民族的 正氣는 우리 專門家들의 使命感과 叡智, 그리고 노력과 봉사의 結晶으로서 具體化될 것이다.

事業의 方向과 內容, 運籌과 施行은 어떻게 될까? 敷地와 環境은 어떻게 選定되고 性格지어져야 할 것인가? 또 실제로 하나하나의 임무를 담당해야 할 專門家들은 이러한 하나의 求心

점을 향한 細部作業을 함께 있어서 어떻게 調和되고 協力해야 하는가? 展示效果 위주의 形式主義를 이번만은 탈피하여 民族의 恒久한 精神的 支柱로서의 그 具體的 實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30여년 동안 放置되다시피한 重大事가 흥분 속에서 자칫 誇大妄想的이거나 即興의이거나 非現實的으로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 □ “民族 비전”의 바른 인식 필요

建築界는 여러 分野의 專門家들로 구성되어 있다. 간혹 우리 社會에서 專門分野別로 그 專門性이 認定되고 尊重되지 못하는 弊態가 있기는 하나, 各々が 使命感에 입각하여 私心없이 本分을 다함으로써 忍辱의 結果를 보여 줄 때, 그러한 風土는 서서히 拂拭되리라 믿는다. 과거의 예를 볼 때 클라이언트가 國家나 公共機關일때 저질러지기 쉬웠던 誤謬, 즉 여러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참여하여 分野別로 철저히 연구검토·작성된 根本的인 마스터 플랜이 先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이커 워크에 의한 行政的인 문제가 主先했던 先例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겠다. 이 경우 六千萬 民族이 클라이언트로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民族의 비전이 어떤 委員會나 혹은 어떤 建築家들의 偏狹할 수 있는 비전으로서 默殺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建築計劃에 있어서 그 創作的 가치나 專門性의 認識水準이 낮은 우리 社會를 감안할 때, 우리 建築界가 一心同體가 되어 紀念事業에 이바지할 수 있는 實質的인 寄與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建築人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적 矜持와 自負心과 使命感으로 建築界의 同意를 求하고 이 사업이 汎建築界의 積極적 참여로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方案을 다음에 적어 提案코자 한다.

첫째, 建築界 三團體가 汎建築的으로 뭉쳐 우리의 통일된 의견으로 推進委員會를 選出派送하여 民族史觀의 定立에서부터 獨立紀念館 建立計劃樹立과 그 運營 및 推進에 이르기까지 참여케 한다.

둘째, 本事業은 위에 정해진 計劃內容에 따라 우리 建築人의 誠心으로 計劃設計를 公募하고, 올바른 設計競技 運營과 審査 프로세스로서 이 時代에 걸맞고 後孫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當代의 民族的 創作物을 선정하여 提供함으로써 그 實現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일은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우리 建築界의 向上된 能力과 蓄積된 經驗을 模範的으로 보여줄 수 있는 絶好의 기회로서 어떤 特定한 建築家에게 의뢰되어 個人的인 寄與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폭넓은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가운데 공평하게 公募되어 모여진 아이디어 중에서 엄선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가 널리 社會에 公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案을 分析·檢討·選定하고 建築事業을 變換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紀念館建立을 願하는 國民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集約할 수 있음은 물론, 어떻게 함으로써

① 바람직한 創作活動의 正道와 建築家의 역할 및 使命感에 대한 社會的 認識의 올바른 개선

② 建築三團體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각각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社會的·舉國的 役事에 있어서는 聯合하여 團合된 力量을 과시하고

③ 現今까지의 그릇된 懸賞風上을 개선한다는 一事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특히 懸賞問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便宜主義的으로 이용되어 作品選定에 뜻이 있다기 보다는 人選에 그치고 말았던 事例를 방지하고, 國家와 民族의 象徴的 建物로서의 역사적이며 가치 있는 참신한 안의 選出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숙한 設計競技運營과 公正性이 결여된 심사라는 痼疾的 問題點에서 탈피하여 올바른 懸賞設計 運營方法의 提示와 그 意義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현상 설계라는 美名 아래 부당하게 강요되어 온 建築家들의 不必要한 노력을 拂拭하고 民族中興의 大役事에 建築界가 大同團結하여 同參한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提案은 가급적 빨리 실천에 옮겨져서 民族的 念願인 建立事業이 建築界의 이바지로 꽃피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建築文化의 올바른 向上이 이루어져야겠다.

#### 獨立紀念館에 대한 建築的 바람

우리의 獨立紀念館은 우리 民族抗爭의 投影物이기 때문에 民族的 精神과 生活, 그 自體의 진실하고 숨김없는 投影이어야 한다. 그것은 지난 歷史에 대한 肯定的 再照明이며 未來에 대한 民族的 生의 執念이다.

建築的 表現은 造形이나 材料 또는 設定된 狀況으로서 結果되어 지지만,

이 경우 우리는 무엇보다도 意志를 表現하는 문제가 심각함을 느낀다. 獨立紀念館의 참모습은 特定한 형태에서 찾으려는 노력보다 그 있음직한 意味에 있다고 보고 싶다. 建築的 意志는 물론 民族的 意志와 同一線上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民族의 平凡한 意識의 集合이면 足하지 않을까? 어떠한 이유나 동기모든 몇몇 사람이나 몇몇 集團의 獨創의 意志로만 나타나서는 안된다.

#### □건축 3단체의 단합된 역량 보일때

紀念性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 허무맹랑한 虛構的 結果를 誘發하게 된다. 뿌리없는 意識과 強壓의 手段에 의하여 강요된 이미지라든가 거창한 계획 속에서 核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해석한 傳統 意識을 경계해야 한다. 解放後 37년간, 우리나라의 살림을 맡아온 行政府의 總本山인 中央廳建物이나 우리 民族의 文化의 評價를 하나로 集約시키려 했던 景福宮 綜合博物館 建物들이 누구의 마음 속에도 내 나라의 象徴으로서 갖들지 못하고 있음은, 歷史的 價值判斷의 기준이 民衆으로부터 비롯된다는 觀點에서 특히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는 이번 사업의 경우도 脈絡을 같이할 것이다. 우리가 紀念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時間的 斷面과 같은 狀況만이나 어느 理念的 斷面과 같은 狀況만이 아니고, 本質的으로 獨立된 民族으로서 그 永久한 自存의 의미가 결코 變換될 수 없는 持續的 狀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意識의 調和, 自然과의 調和, 建物의 전체적 調和, 부분적인 材料나 오브제의 緊張된 調和에서 起因되는, 기쁨에 넘치는 紀念性을 강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 □民族의식의 集合體로...

建築은 한 社會의 意識이 만드는 產物이므로 아무리 조그만 建築物이라도 한 建築家만의 所産이 아닐진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숨결이와 닿은 民族的 意識이 수합된 結晶體가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黃金 몇실길로써 없

었다던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材料를 썼다던가 하는 念센스는 없어야겠다. 最新의 엔지니어링, 가장 섬세한 테크놀로지를 驅使하되 檢素하고 素朴한 처리로서 지나친 誇示나 꾸밈없이 우리의 自然을 닮아 秀麗하고 端雅하며 清明하고 悠然할 수 있으면, 그래서 周開와 더불어 生氣와 氣魄이 있는 感興을 줄 수만 있으면 되겠다.

물을 하나로, 열 사람의 힘을 한 사람의 힘으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되려면, 스스로 自尊과 矜持를 느낄 수 있는 感動的인 空間을 演出해야 할 것이다. 바쁘고 지친 生活 속에서 문득 생각키우고, 찾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즐겨 찾을 수 있음으로써 새로운 發見과 再確認 속에 고요히 思惟하는 生命의 深淵같은 空感帶를 갖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敷地와 命題의 시퀀스를 明快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獨立紀念館은 遺物이나 資料만을 전시하는 文化的인 측면의 空間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過去를 통해 現在를 다짐하고 未來를 展開할 精神的 修練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段階別로 확장이 가능한 敷地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 建物群의 有機的 構成配置와 外部空間의 처리 또한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教育的이지 못한 환경에 아무리 귀한 資料나 內容을 담아 보았자 그 목적을 達할 수 없을 것이며, 先烈들의 愛國愛族의 抗爭에 대한 精氣를 傳할 수 없을 것이다. 이 紀念館과 環境들은 찾는 이들에게 民族의 矜持와 自尊에 대한 意志와 力量을 되새겨 줄 수 있는 道場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겨레와 後孫들이 언제나 즐겨서 자주 찾는 곳이 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傳統樣式 운운하며 어울리지도 않는 過去의 祠堂과도 같은 기와집의 配列만을 생각하는 偏狹과 齷齪을 피하고, 核當分野 專門家들의 微知를 충분히 모아 반영하고, 公廳會를 통해 各界의 意見과 衆智를 수합한 歷史的 計劃으로서 建築界의 적극적인 寄與 속에 깊이 남을 훌륭한 事業이 되어야겠다.

# “새로운 創造的 造形 필요”

安 秉 義 - 김중업합동건축연구소



日帝의 王政에서 解放된지 37년이 지  
난 오늘날에 와서 獨立紀念館이 세워  
지게 되는 것은 무척 뒤늦은 일이지  
만 그래도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우리들 建築에 종사하는 사람들  
에게는 그일에 직접 참여하든 안하든  
간에 호뭇한 이야기겠다.

그러나 기쁘고 호뭇한 마음 한구석  
에 잘될까 하는 가느다란 걱정 어린 마  
음이 일어난다. 이것은 나만이 느끼  
는 의구심일까.

獨立紀念館은 어떤 機能을 가지며,  
어떤 造形이 어울리겠는가, 그리고 設  
計는 어떻게 推進되어야 할까 하는 내  
용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적어  
보기로 한다.

## □ 기념관의 기능 이해 앞서야

獨立紀念館은 어떤 機能을 갖는가,  
이 불음에 대한 대답은 우리 國民  
의 成人쯤이면 누구든지 알만한 常識  
의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나라 과거에서 現在에 이르는 社會·  
經濟·文化와 政治体制의 변천 등, 우  
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展示場의  
性格을 띄울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  
고, 未來의 우리나라 비전을 보여 줌  
으로써 國民에게 밝은 앞날에 대한 희  
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곳을 찾은 外國觀光客에게는 韓國  
의 모든 것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들

을 理解시키고, 나아가서 國際親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이다. 展示될 내용은 좀더 시일이 지  
나면 建立을 추진하고 있는 委員會에  
서 밝혀질 것이며, 굳이 우리들 建築  
家가 알가알부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어떠한 造形의 建築이 어울릴까.

建物の 平面보다 造形부터 생각하  
게 된 것은, 建物の 規模나 展示內容  
이나 平面의 機能도 아직 發表되지 않  
은 까닭이기도 하지만 원래 造形이란  
우리들에게 直接的으로 호소하고, 감  
명을 주는 것인 까닭이다.

우리들은 建物を 그 造形을 통해 認  
識하게 되고 느끼고 감명을 받으며  
상징적으로 받아 들이기도 한다. 獨立  
紀念館은 그 造形美가 매우 重要한 것  
이 된다. 우리들 建築家는 이 紀念館  
을 생각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어떤  
造形이 좋을까 하고 한번쯤은 머리 속  
에 그려보았으리라.

물론 推進委員會에서 앞으로 이 建  
物の 基本精神을 밝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로서 表現되는 抽象的  
인 것으로 建物の 造形과의 사이에는  
까마득한 거리와 자칫 잘못하면 그릇  
理解되기 쉬운 함정마저 도사리고 있다.

## □ 건축양식 따라 견해차이 있을듯

建築을 構想하는 과정이, 建築家에  
따라 各樣各色이겠으나 내가 하는 스

타일의 예를 든다면 우선 獨立紀念館  
의 機能을 理解하고 이 機能에 맞는  
어떤 이미지(Image)가 떠오르게 된  
다. 이 단계는 아직 막연한 모습에  
지나지 않으나 이 이미지에 뚜렷한 平  
面의 機能과 材料와 構造 등 많은 要  
素가 주어짐으로써 뚜렷한 포용(Form)  
을 갖게 된다.

機能→이미지→포용의 세 過程에서  
推進委員會가 결정하는 것은 첫단계  
인 機能의 아우트라인(Outline)에 지  
나지 않는다.

같은 機能이지만, 여기서 탄생하는  
이미지는 建築家마다 다를 것이고, 포  
용에 이르러서는 더욱 크게 달라질 것  
이다.

## □ 전통이념 확립할 좋은 기회

앞으로 推進委員會에서는 展示될  
紀念物의 儀과 이를 수용할 스페이스  
와 업무를 수행할 부속空間의 넓이 등  
의 아우트라인을 결정하고 아울러 이  
紀念館의 精神을 밝힐 것이다. 建國의  
理念, 5천년의 빛나는 歷史와 傳統,  
祖上들의 슬기로움 등의 單語가 나열  
된 文章, 그리고 이 文章을 象徵하는  
造形을 꾸미는 것은 우리들 建築家의  
일이다.

이러한 글귀에서 우리 國民이라면  
으레히 청기와를 씌운 하늘을 향한 웅  
장한 樓閣, 서까래와 처마의 유연한

曲線, 또는 花崗岩으로 된 基壇 위에 서있는 獨立紀念館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즈음 해서 推進委員中 몇분이 獨立紀念館이나 이와 비슷한 性格의 建物を 視察하기 위해 世界 여러나라를 돌아 보고 우리의 傳統樣式을 獨立紀念館에 표현해야 한다는 基本方針을 굳히게 될지도 모른다. 邦政 밑에 시달리다가 解放된 東南亞의 여러나라에 세운 獨立紀念館이나 民族博物館 또는 國會議事堂들이 으레히 그나라의 전통적인 建築樣式을 본받은 것을 보았을 터인즉,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하고 느끼는 의구심은 바로 이 紀念館의 造形을 둘러싼 문제이다.

누구는 우리나라 國民들의 머릿속에 새겨진 傳統樣式의 이미지를 否定할 수는 없다. 단순한 民俗博物館이 아니라 獨立의 氣象을 象徵해야 하는 獨立紀念館인 까닭에.

우리를 建築家라면 누구나 모두 알고 있는 일이지만 基壇 위에 서있는 기와지붕의 傳統樣式은 어디까지나 李朝時代나 또 그 이전의 스타일이지 결코 우리들의 世代에서 要求되는 建物は 아니나.

갓쓰고 긴 담뱃대를 물고 가마를 탔던 時代의 것이지 TV를 놓고 航空機를 타고 民主主義를 논하는 時代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것은 돌과 나무와 종이로 만든 고요하고 아담한 空間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時代에 要求되는 것은 鉄과 콘크리트와 우리와 여러가지 最新設備에 넓적하고 다이내믹하며 개성이 있는 空間이다.

西洋建築史는 한마디로 말해 時代가 바뀌어짐에 따라 좀더 넓고 좀더 높은 空間이 요구되면서 建築의 構造와 表現의 樣式이 달라져 온 變遷의 歷史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그리 넓지않은 空間이면 족했으므로 나무와 돌과 기와지붕으로 집을 지었다. 단 그 材料 밖에 없었고 그러한 構造 밖에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獨立紀念館의 巨大한 空間을 나무기둥과 서까래 대신에 콘크리트로 꾸미고 경사진 스타브에 청기와를 씌워 놓고 國民들이 이런 것을 원

하니까, 또는 東南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安住할 것인가.

李朝時代의 우리 조상들에 비해,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은 덩치도 머리도 큰 巨人으로 자란 셈이다. 巨人이니까 巨人에 맞는 것을 쓰면 되는 것일까. 「세 포도주는 세 푸대에」라는 말이 있다. 獨立紀念館이라는 세 포도주는 어떠한 세 푸대에 담아야 할까.

獨立紀念館을 짓게 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앞으로 당분간 시끌시끌하겠구나 하고 느낀 것은 바로 이런 점이다. 傳統的인 建築樣式이 되어야 한다는 國民의 바람을 뒤에 업은 大義名分과 청기와를 씌우는 것만이 傳統이나 하는 두갈래의 論爭이 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기회에 올바른 傳統理念을 확립하고 그 본보기가 되는 獨立紀念館을 建立하는 것이 우리를 建築家에게 주어진 使命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이 紀念館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다음 世代들에게 傳統이란 청기와를 씌워 놓는 것이라는 그릇된 思考를 올바르게 고쳐놓는 試金石이 될 것이다.

傳統을 계승한다 라는 말에서 傳統이란 낱말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西歐의 建築史를 훑어보면 그리스·로마·고딕... 이렇게 이어지는 建築樣式은 모두 그 時代의 精神을 충실히 反映한 建築이었다. 우리나라 또한 高麗·新羅·李朝 이렇게 약간씩 다르다. 어느 時代이건 그 時代 사람들에게는 살고 있는 時代가 곧 現代이며 現代의 生活·思想·精神이 反映된 것이 現代建築이다.

歷史란 언제나 變遷하고 발전하는 現代라는 時間의 連續인 셈인데 이 現代建築이 後世에 이르러 傳統을 意識시킨다. 즉 傳統이란 過去樣式의 모양이 아닐뿐더러 차라리 斷絶이나 超克이라는 뜻에 가깝다. 웬 까닭인지 傳統이라는 낱말의 참뜻이 그릇 解辭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줄여서 現代의 精神에 充實한 建築이 곧 傳統意識의 精神이다. 옛날의 樣式에 머물러 내려가는 한 우리들 時代의 建築은 없는 셈이며, 모방한 過去時代의 連續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단 文化·文明은 20世紀 人代 建築은 李朝時代인 셈이다.

언제나 위대했던 時代의 建築은 결코 그 이전의 조상들의 樣式을 초월한 새로운 創造였다. 흐르지 않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구르는 불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個人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民主主義의 위대한 歷史는 우리에게 暗示하는 것이 있다. 懷古趣味의 지난 樣式을 고집하는 現代精神에 違背되는 그릇된 方法으로 民族의 團結을 꾀했던 일본·독일과 이탈리아 軍國主義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모두 망해버렸다. 일본은 帝冠樣式이라는 스타일을 만들었고, 지금은 허물었지만 半島호텔이 청기와를 씌웠다. 나치 독일도 역시 지붕을 씌운 목직판 스타일을 고집했고, 이탈리아는 로마樣式인 아치로 建物を 장식했다.

獨立紀念館의 基本構想이 發表되기도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너무 과민한 탓이 아닐까.

오래 전 일인데 春川가는 길목, 자그마한 휴게소를 설계했을 때의 일이다. 그 일을 담당했던 官當局은 내가 스케치한 平面은 좋아했으나 지붕은 청기와를 씌우라고 고집했다. 언제까지 李朝樣式을 팔아먹을 것인가? 앞으로 100년? 200년? 하고 나도 매들었으나 결과는 뻔한 일이었다.

지금도 그 자리에 現代의인 平面의 커피숍이 청기와의 갓을 쓴채 江가에 서있다.

만일 프랑스가 그들의 革命紀念館을 세운다면 어떤 스타일로 지을까. 그러나 그들의 조상樣式인 고딕聖堂 같은 것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다.

## □ 과거 양식을 초월한 새 造形

獨立된 主權國家라는 自覺과 民主主義를 이 땅에 이루어 놓겠다는 意志와 先進國 對열에 끼어 보겠다는 氣象 등이 곧 우리 民族의 힘이며 이 힘이 象徵된 獨立紀念館이 세워질 때 後世에 이르러 傳統의 意識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建築家인 우리들에게 要求되는 것은 청기와나 基壇이 아니라 과거의

樣式을 초월한 새로운 어프로우치를 통해 얻어지는 새로운 創造의 造形이었다.

數千年의 歷史를 굽어 볼 수 있는 歷史라는 巨人의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이 기념관을 構想해야 한다. 獨立紀念館의 設計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건축계는 이 문제 때문에 더욱 시끄러워지게 될 것 같다.

누구에게 設計를 맡길 것인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몇가지의 방법이 있다.

1. 어떤 個人에게 맡기는 경우
2. 數名의 1·2차에 걸친 지명 현상설계
3. 不特定 多數의 한국에서 태어난 건축가(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게 현상설계를 시킨 다음 2차 현상설계
4. 設計委員會를 구성, 數人이 공동설계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게 맡기는 案은 그 명예로운 건축가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다. 民主主義를 표방하는 국가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둘째 案은 선택된 數人의 건축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推進委員會에서 기준을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투표로서 뽑을 수 밖에 없겠다. 그러나 선택된 數人에 끼이기 위해 아몸답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세째 案은 완전히 門戶를 개방했으니 둘째 案과 비교할 때 잡음이 없는 게 큰 장점이다.

물론 세째 案이 모두 가능성이 있긴 한데 문제는 현상설계의 심사과정이다. 이제까지 통털어 열번이 넘는 현상설계가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심사결과가 개운치 않았다. 많은 건축가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는 일으므로 다시 說往說來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또 대개의 경우 審査委員의 선정이 잘못된 것은 建築家보다 해당 行政部측 인사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건물을 사용하는 각도에서 平面의 機能을 검토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겠으나, 建築은 平面이 전부는 아니며 적어도 指名현상에 끼일 정도의 건축가라면 그 기능을 行政官보다도 오히려 더 잘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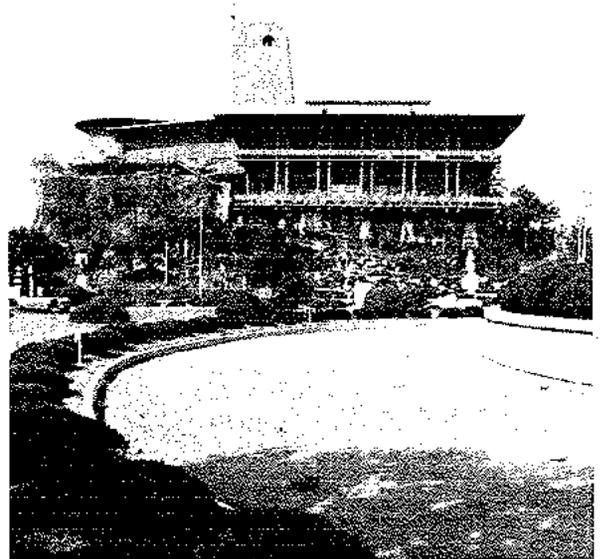
악하리라고 생각한다. 建築의 審美感이 결여되었다고 보아도 될 분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不合理的 이야기이다. 이래저래 현상설계 때마다 말이 많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2·3案의 공통된 문제점이다.

생각다 못해 짜본 것이 네번째의, 몇사람이 모여서 그야말로 기지를 모아 좋은 紀念館을 만들어 보자는 案이지만 人選의 문제에서 2案과 같으니 시끄러워 지겠고 또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도 여럿이 모여서 한 作品을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나오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들은 공통으로 작품을 하는 습관에 전혀 익숙해 있지도 않다. 피카소와 마티스와 金基稔화백, 金煥基화백을 모아놓고 모나리자를 그리라는 이야기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여러가지 생각나는 방법들을 두서없이 적어 보았지만 모두 시끄러워질 게 분명하다. 우선은 推進委員會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다려 볼 수밖에 없겠다. 그저 모처럼 이루어지는 獨立紀念館,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루어지기를 빌 따름이나.

## “궁극적 실제에 도달하는 일”

金 琪 碩 - 아홉건축연구소



### □ 공감 위해 궁극적 실제 도달 필요

기념관 건축에 대하여 쓴다는 일은 나에게 당황스러운 경험을 주었다. 왜냐하면 기념관 건축이라는 그것 자체가 몹시 당황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자료 전시를 어떻게 해야 한단든가 기타 어찌고 저찌고 하는 이야기로서 기념관은 되지 않는다. 기념관 건축은 객관적 논리가 가장 바보스러워지는 건축이다. 건축에는 공식

이 없다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공식을 만들어 내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진 건축설계의 명제가 나오면 얼른 몇가지 종류의 공식이 떠오르게 마련이며,

더군다나 불행하게도 <독립기념관>같은 공공건물이 설계된다면 아마 이러한 형태와 디자인 수법을 가진 설계가 나오리라 하는 것은 금방 상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한국적>인 것을 다시 떠들기 시작할 것이며 요즈음 한국적 현대건축이라고 공식화된 어떤 기법을 무책임하게 엮이듯이 늘어놓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객관화된 지식능력으로 출발할 때 <기념관>은 이미 사라진다는 것이다. 기념관이라는 테마는 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그 주관적인 것이 <기념성>을 가지고 동일성(Identity)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 테마의 궁극적 의미, 궁극적 실재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축의 궁극적 실재란 아주 핵심적이고 형이상학적이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실현(발현)되어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녀 일아보기 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초가집(民家)을 보면 안정과 평화와 간절한 생활의 복락을 원하는 地上지향적인 마음이 아주 솔직하고 단순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런때도 불구하고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궁극적 실재의 모습을 보인다.

#### □역사적 의미성 표출이 문제

한국의 상류층의 전통건축에는 天空지향적인 마음이 유연하고 어색하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전통건축이 도달하였던 공간은 극히 소박하고 정빈한 생활을 그대로 기능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통합과 분리의 화합에서는 유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허위가 보이지 않으며 극히 형이상학적이다. 우리는 건축의 궁극적 실재의 실례를 가까운 우리들의 유산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정신의 발전은 단절되었고 36년간의 객관적 단절 후의 36년이 일년넘게 흐른 지금까지 우리는 혼미상태에 빠져 있다.

도대체 독립이란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본 적

이 있는가?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 주권을 찾았다는 것일까? 주권이라는게 뭘까? 국가의 주권이란 개별적 주권의 적분적 개념일 뿐이며, 自我의 사실의 현상적 드러남일 뿐인 것이다.

독립이란 결국 自我의 발현인데, 自我의 발현은 부단히 궁극적 실재를 찾는 마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마음이요, 그것이 또다시 추구되지 않는다면, 또 그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독립기념관>을 생각하는 것은 노골적인 년센스인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어떤 역사적 계기에 충격을 받아 떠들썩하게 돈을 모아서 우리가 아직 독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공표하게 되거나 않을는지.

적어도 독립기념관이 건축에 의하여 표현될 수 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걱정은 훨씬 실감나는 걱정이요 가까운 걱정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發想위해 폭넓은 참여 있어야

우리는 아마 서울주변의 어디에, 세종문화회관(그것 자체는 훌륭한 건축이지만)의 아류같은 건축들을 모아놓고, 상처받은 시대의 증거들을 늘어놓고,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조명이 어떻게 환기가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한국적인 의장이 어떻게 떠들어 댈지도 보려는 일이다. 아마도 거국적인 지식이 동원되겠지.

그러나 지식의 집산이 지성을 이루지는 않는다. 지성은 즉각적인 것이다. 즉각적인 실재에서 출발하는 일이며, 그 실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부디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겠다는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상처>를 기념하겠다는 것일까? 목적이 상처의 되풀이에 있다면, 올바른 지성은 <상처기념관>같은 것을 세우지는 않는 것이 국민건강상 좋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가 상처에 매달린다면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부정적인 마음은 형태를 바꾼 부정적인 마음을 낳을 것이며 우리는 다같이 병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아의 개현은 상처를 극복한 마음에서 쫓겨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

성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독립을 말할 수 있는가?

<독립기념관>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건축가로서 가질 때,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건축이 추구하여 왔었던 궁극적 실재의 단순성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포착되지 않으면,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지성과 창조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건축이라는 공간인식적 창조력으로 <독립>의 의미에 도달한다면, 어떤 역사적 의미성의 표출에 성공한다면, 그에 내장된 상처의 기념물들은, 오늘날 우리가 무수히 부딪치고 있는 문화적 현실 속에 내장된 상처의 뿌리를 발견하는 좋은 장소를 가지게 될 것이며, 기념관 모금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시대적 현상 속에 자리잡고 있는 식민주적 잔해, 상처의 변형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심리학자들의 일이겠지만 이것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왜곡간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그것을 포착하여 오늘날의 우리들의 내면의 문제점들을 다시 거기서 만나게 해줄 때 기념관은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국민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의례적인 단체관광 대상의 범주를 넘는 <살아 있는 충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리라고 본다.

또 구체적인 실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상과정>에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모뉴먼트의 설계에는 건축적 지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비록 충분한 표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 설계의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각의 깊이에 따라 더 근원적인 발상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는 건축가적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와질 필요가 있다. 발상이 있는 다음에 전문가들의 협동이 필요한 것이다. 지식은 지성의 보조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

# 住居環境의 質을 가늠하는 指標

金 麟 - 가전건축연구소 / 건축사

## INDICATORS FOR HOUSING QUALITIES

Kim, Lin - Ga Joen Architect & Associates/Architect

### 1. 序 論

住居環境의 의미는 住生活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간접적으로 住生活에 영향을 주는 公共·公益施設 등을 망라한 物理的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近隣住區(Neighbourhood) 또는 커뮤니티(Community)의 개념에서 住居環境을 파악한다고 하면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겠으나 本稿에서는 주거환경의 범주를 住宅(Dwelling House)과 그 주위에서 住生活에 비교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만으로 국한시켜 논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상은 도시형 住居 패턴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1960년대 초에 國家經濟政策의 최우선 목표가 開發經濟·産業經濟體制로 돌입하면서 심한 都市化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1980년의 총인구에 대한 都市人口의 비는 57.3%에 달하였으므로 1960년대 초의 都農間 人口比는 정반대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大都市 개발형의 경제정책이 肥大都市의 주된 원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러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대도시에서 주택의 공급부족을 초래하게 되었다.

주택부족을 심화시킨 또하나의 원인은 가족형태의 빠른 변형이다. 핵가족화에서 기인한 家口數의 급증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住宅産業이 物量面에서 볼 때에는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住居環境의 質에서는 평균수준으로 보아 物量이 늘어난 만큼 개선되어 갔다고는 할 수 없다.

小數의 고소득계층의 주택이 지나치게 대형화·사치화해 가는 반면 多數의 저소득계층에 있어서의 住居環境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갔다고만은 할 수 없는 현실이 그 實象이다.

한편 중산층의 住宅은 본래의 주거목적 이외에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저서 購買慾을 증동하는 상품으로서 더 가치를 갖는 듯한 느낌이다.

本稿에서는 住居環境의 質을 가늠하는 指標를 前提하고 이 지표에 의하여 도시형 共同住宅과 獨立住宅을 불리쳐 환경이라는 이해 아래 그 질의 수준을 고찰코자 한다.

### 2. 住居環境의 質을 가늠하는 指標

住生活環境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서는 住居適合性·便益性·프라이버시 등이 쓰여졌다.

주거적합성의 개념은 주택을 생활의 用器인 物理的인 시설로서 파악할 때, 그 크기와 양에 있어서 최저기준을 뜻한다. 이에 반하여 편의성과 프라이버시는 효율·패감·안락 등의 所望水準으로 말할 수 있다.

建築家가 주거환경을 계획 또는 설계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이들 지표를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해결하여 가느냐 하는 것은, 意圖한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가까와질 수 있는가 하는 關件이 된다고 믿어진다.

#### (1) 住居適合性(Habitability)

住宅의 크기와 양에 있어서 최저기준(Minimum Standard)이며 동물적인 본능에서 인간의 隱居(Shelter)가 가능한 최소기준인 동시에 居住者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저시설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住居適合性의 절대적인 기준,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거적합성의 定義를 단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류역사의 변천과 발전에 따라 주거적합성의 의미는 달라지며 民族間·地域間의 주생활 형태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의 1인당 점유면적은 주거적합성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부가 정책목표로 제시한 <住宅政策과 長期建設計劃·1975년 간행>에서 1980년대의 1인당 住居面積(共有面積 포함)을 16㎡(4.8평)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韓國國際關係研究所에서 1971년 간행한 <韓國 住宅政策의 方向>에 의하면 1인당 최소 주거면적을 2.4평~3.7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等比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공유면적은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점유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1인당 최소 주거면적은 가구수·가구의 형태·住居패턴 등에 따라서도 산정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예컨대 居住者數가 6인이라고 할 때 1가구 6인, 2가구 6인, 1세대 6인, 2세대 6인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치들은 1가구 1가족의 기본적인 家族構成(부모+자녀)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便益性(Livability)

편익성을 만족시켜 주는 因素로서는 주거환경의 場外要素인 주위의 公共施設을 포함하여 주택 안에서의 편의

설비·서비스施設 등을 들 수 있다. 주위 공공시설은 家內의 생활권과 연결된 道路·購買施設·레저施設과 녹지·상하수도·조경 등을 뜻하며 주택 안에서의 편의설비는 住生活의 기능적인 측면을 만족시켜 주고 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위생급배수설비·냉난방설비·환기시설·단열시설 등을 의미한다.

또한 기능별로 空間을 합리성 있게 配分·配置하는 것도 편의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이 편의성은 居住者 각자의 편익과 요구를 최선의 방법으로 만족시켜 주면서 상호 마찰의 因子를 최소화시켜 주는 것으로서 住居環境에서 그 질을 가능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이다.

便益性은 거주자의 능률과 노동생산성을 증대시켜 주며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住居單位에 있어서 가장 보편성을 가지면서 快感度의 척도가 되는 디자인의 기초적 수단이 되는 것이다.

### (3) 프라이버시(Privacy)

住居環境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外部狀況으로부터의 自己保護慾 또는 간섭 畏內으로부터의 隱居慾 등으로 설명된다. 소음과 視界의 간섭으로부터 주거생활의 독립성과 개인 또는 가족의 機密性을 보장해 주는 일은 현대에서는 주거환경의 질을 평가하는데 어느 요소보다 중요한 척도로 보여진다.

住居群이 점차 高密度·高層化되어 가는 현대의 주거양식에서 視界를 차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공동주택과 독립주택이 混在하고 있는 住居團地에서는 視界간섭을 제거하는 일이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교통수단의 量的인 팽창과 산업화·기계화의 生活패턴에서 소음의 완벽한 차단 또한 난제일수 밖에 없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변화추이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과제이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기도 하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境界意識의 인식도 또는 眞偽度로서 이해가 가능하다. 개념의 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境界意識의 범위에 따라 이를 분류해 보

고자 한다.

㉞ 1次的인 프라이버시 — 이것은 개인의 獨居空間, 즉 침실·전용욕실 등에서 인식되어지는 프라이버시이다. 인간에게 生理的인 본능으로 요구되는 개개의 自己空間에서만 느낄 수 있는 프라이버시이다.

㉟ 2次的인 프라이버시 — 이것은 가족의 共用空間으로 인식하는 거실·가족실·식당·부엌·응접실 등에서 單位家族이 동시에 보호 받고자 하는 프라이버시이다.

㊱ 3次的인 프라이버시 — 담장이나 울타리, 대문 등으로 區劃되어지는 소위 <우리집>이라고 하는 領域內에서 보호 받고자 하는 프라이버시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세대간 칸막이 벽과 천장과 바닥, 현관 등이 이를 보호해 주는 경계가 된다. 宅地의 크기가 비교적 협소한 우리나라의 주택에서는 이 領域內의 프라이버시가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所有意識의 절대적 경계이기도 하다.

㊲ 4次的인 프라이버시 — 地理的 境界에 의하여 구획되어진 지역으로서 거주자들의 환동 및 사회적 관계의 集台團體, 다시 말하면 近隣住區(Neighbourhood)의 영역 내에서 느껴지는 프라이버시이다. 建築家나 都市計劃家에게는 계획의 空間의 범위나 한정의 필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근린주구 설정이 불가피하지만 거주자들의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定義되어 지는 바의 近隣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 3. 獨立住宅의 質

우리나라의 住宅産業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독립주택의 建立主體는 수요자의 自家建立과 群小住宅業者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1960년대 都市家內의 격증으로 주택의 수요는 크게 늘어났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 할 餘力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업으로 공급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영세한 주택전립업자들이 앞을 다투어 집을 지어냈다. 이즈음의 독립주택은 부족한 물량을 충당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질은 전반적으로 수준에 미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년 정도가 지난 오늘날 그 당시

건립한 주택은 대부분 그 수명을 다하고 있으므로 本稿에서 前提한 지표에 의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평가한다고 하면 편의성이나 프라이버시에서는 거의가 최저수준에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住居適合性에서도 현시점에서는 대부분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초에 植産된 독립주택의 동계를 정부가 현시점에서 주택 보유량으로 計定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당시의 建築資材나 建築技術이 수준미달인 데다가 부분별한 量産體制(비전문·소자본)의 所産이기 때문에 그 수명이 거의 다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때 건립된 住宅數를 보유량으로 산입하여 주택 부족운을 산정한다고 하면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믿어진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 사이에 독립주택의 질은 상당히 향상되었다.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소득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졌고 주거환경 또는 주택의 질을 요구하는 購買心理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건립된 중산층 이상의 독립주택에서는 주거 적합성의 최저기준은 대부분 극복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便益性과 프라이버시 문제는 고소득층이 파인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산층 이하의 주택에서는 아직도 수준에 겨우 達하거나 미달된 정도가 아닌가 싶다.

특히 저소득층의 독립주택은 1960년대 초의 주거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重視해야 할 것이다.

넓지 못한 宅地에서 서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으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에는 既存 獨立住宅團地 隣近에 뒤늦게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독립주택을 피뎌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근본적으로 독립주택과 공동주택의 混在原則이 수립되어야 될 줄로 믿는다.

### 4. 共同住宅의 質

1960년대에 住宅公社와 서울시에 의하여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가 약 2

만여 가구 건립되기는 하였지만 이 시기는 壽人期라고 할 수 있으며, 아파트가 새로운 住居形式으로 일반화되면서 각광을 받기는 1970년대 초이다.

1980년 경제기획원이 실시한 <人口 및 住宅센서스> 통계에서 보면 전국의 주택수는 5백50만호이고 이 중 공동주택의 수는 58만호이므로 공동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6%이다.

공동주택의 建立主體로서는 초기에 住宅公社가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그 후 일반의 급증하는 수요에 의하여 대형 住宅建設業體들이 앞을 다투어 건립하였다. 급증하는 수요에 정책적인 배려까지 받으면서 共同住宅建設業體들은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수준급의 기술축적도 하였다.

事業主體立場에서는 이윤을 추구해왔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들 공동주택 건설업체들이 국민주거환경 개선 보급에 적잖게 기여했다고 믿어진다.

독립주택에 비하여 비교적 便益性에서 우수했던 것이 공동주택의 장점이었다. 초기에 건립되었던 공동주택이 독립주택에 비하여 住居適合性이나 프라이버시에서 월등히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토록 수요가 급증했던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편익성이 현저하게 좋았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사실을 바꾸어 말하면 독립주택에서는 수준높은 고소득 주택이 아니고서는 공동주택에 비하여 住居適合性·便益性·프라이버시 등의 지표를 놓고 볼 때 그 수준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갑자기 건립되기 시작하여 아직도 계속 건립되고 있는

연립주택에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 理論上 연립주택은 독립주택의 좋은 점과 아파트의 장점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주거양식이다. 그러나 이의 建立主體가 1960년 초의 獨立住宅建立主體와 같이 영세 주택업자들이었다.

그 결과 이들이 건립한 연립주택은 도시의 구석구석에 새로운 <슬럼>을 형성해 가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행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들 연립주택은 주거 적합성·편익성·프라이버시 등에서 어느 한쪽도 수준을 기대할 수 없음을 주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大企業에서 이 세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연립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들은 前例가 없을만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주택이 저소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 가도록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의 소규모 주택을 無住宅家니에 공급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長期低利 住宅資金의 지원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 5. 結 論

住宅도 수요공급의 경제원칙에 의하여 생산되어지는 상품이다. 그러나 주택이 상품으로서 갖는 특성은 타상품에 비하여 그 투자액이 크고, 도시의 構成要素로 보면 개인의 재산이면서 국가적인 재산이다. 他生産品에 비하여 交替性이 대단히 낮다. 따라서 質이 낮은 주택을 건립하여 그 수명이 짧아진다면 변화하는 住生活패턴에 만족스럽지 못한 주택으로 그 몫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舍人

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巨視的 주택정책에도 큰 차질을 빚어내게 될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최저수준을 날피하여 미래지향적인 所望水準을 주택생산의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共同住宅團地의 적정규모와 적정위치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독립주택과 공동주택의 무질서한 혼합배치는 상호간섭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住宅産業의 主體는 수준급의 기술축적과 자본을 갖춘 대기업이 이를 선도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산업도 이윤추구에 눈을 돌리기 전에 정부에서 장기적 재정지원을 수립하여 저소득계층에 소규모의 질이 좋은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택의 절대 부족량을 공급하는 것만이 주택의 지나친 商品化를 막는 첩경이 될 것이다. 상품으로서 購買慾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면 결코 실질적으로 질 높은 주택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金 麟 : 아파트의 實態와 아파트住民의 住居意識 및 行態에 관한 研究 (1976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金原培 : 都市内 近隣集團의 社会的行態와 空間的 패턴의 확인에 관한 研究 (1976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경제기획원 : 韓國統計年鑑 (1971·1976)
- 경제기획원 : 1980人口 및 住宅센서스 暫定報告 (1980)
- 건설부 : 住宅政策과 長期建設計劃 (1975)

# 서울의 南大門

申 榮 勳 —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 1.

1907년 8월 초하루, 舊韓國軍隊의 해산령이 내렸다. 侍衛第 1聯隊의 第 1大隊와 第 2聯隊 第 1大隊 소속의 군인들이 이에 항거하여 남대문 북쪽의 성벽을 의지하고 일본군대와 대치하며 市街戰을 벌였다. 일본군대는 남대문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용사하였다. 이 전투에서 남대문이 피해를 입었는지의 기록은 없다. 그러나 총격전이 벌어진 바에는 총알이 날아들었을 터이므로 피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옳겠다.

1907년에 통감부의 일본인들은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성벽의 절단이 요망된다는 핑계로 남대문 좌우의 성벽을 허물었다. 지금처럼 길 복판에 의뭉게 남게되는 모습이 이때로부터 비롯된다.

이보다 앞서 南大門通을 지나는 電車가 南大門驛으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전차길이 홍예문을 통과하도록 부설하였다.

남대문의 큼직한 문짝을 받아주던, 장대석으로 설치하였던 문지방들이 이때에 제거되고 말았다.

南大門驛에서 바라다 보면 南大門은 언덕 위에 있다. 초기의 작은 전차는 차들거리며 이 언덕을 올라가 홍예문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전차가 울리는 진동은 南大門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후대에 전차궤도는 남대문 북쪽으로 우회하도록 부설된다. 그러나 이때에 다니기 시작한 대형전차가 일으키는 진동, 특히 정차장에 멈추고 출발하는 데에서 오는 진동이 역시 남대문에 누적되는 피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정적인 치명타는 6. 25 때 있었다. 거침없이 날아든 각종 총포탄으

로 홍예문을 연 육축(陸築: 높직하게 대를 모으고 門樓를 세우게 한 구조물)과 초루(譙樓: 육축 위에 지은 木造의 建物, 門樓라고도 함)는 심한 상처를 입었고 지붕의 기와는 깨어지고 벗겨졌다. 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화필름을 보면 당시의 처참하였던 모습은 참으로 에처러웠다.

수복하자 서울시는 응급처치라도 해서 이 애처로운 모습을 씻으려 하였다. 그 공사는 1952년 11월에 착공되었다. 137,875 圓의 공사비로 시공하였다. 「南大門災害復舊工事」라는 문자 그대로의 응급수리공사였다.

1954년 8월부터 12월 중순까지 世宗路의 紀念碑開과 함께 丹青工事を 하였다. 慶國寺의 住持 金普現에게 위촉하여 실시하였는데 남대문 단청의 공사비는 1,800,620 圓이었다. 그러나 丹青만으로 남대문의 수명이 회생될 수는 없었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1961년 7월에 「서울市 南大門重修工事指導委員會」가 조직되었다. 서울시 文化財保存委員會에서 4명,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1명,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고 著名人士 다섯분이 顧問으로 추대되었다.

남대문의 중수공사는 1945년 광복 이래의 문화재보수 첫사업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이어서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많았고 일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터무니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人士도 있어 처음부터 이 공사는 말이 많았다. 그래서 1962년 3월에는 「重修工事事務所」의 직제가 개편되고 관계자들을 정비하여 실제 시공에 임하였었다. 그리고 1963년 5월에는 공사가 준공되었는데 그 중요

공정의 시기는 다음과 같았다.

- 外部實測: 1961. 8. 1 ~ 1962. 11. 28.
- 建物解體: 1962. 1. 16 ~ 1962. 2. 20.
- 石築解體: 1962. 2. 21 ~ 1962. 5. 10.
- 施工圖作成: 1962: 2. 1 ~ 1962. 5. 30.
- 木材搬入: 1962. 12. 16 ~ 1962. 12. 30.
- 治材作業: 1962. 5. 5 ~ 1962. 10. 20.
- 陸築再建: 1962. 5. 15 ~ 1962. 9. 30.
- 譙樓再建: 1962. 10. 30 ~ 1963. 3. 30.
- 丹青工事: 1963. 3. 21 ~ 1963. 5. 2.
- 周邊整理: 1963. 4. 20 ~ 1963. 5. 13.

※ 本工事費總額 19,371,040 圓

부대비 911,882 圓

工事費는 화폐개혁 직후이어서 그 금액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建物實測을 위하여 各工科大學 建築科에서 추천한 2명씩의 학생들이 南大門國民學校의 교실을 빌어 작업을 하였다. 이런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고, 여기에 관여하였던 당시의 학생 중에는 지금도 이 방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제 관계하였던 당시의 人士들 중엔 他界人이 많다.

## 2.

나는 육축부분을 해체하는 일의 책임을 맡았었다. 당시의 직함은 현장

감독이다. 그때의 문교부에서는, 문화재보수의 경우는 가장 적절하다고 추천되는 사람을 초빙하여 감독관으로 상주하도록 발령하는 제도를 따르고 있어서 楊澈洙·金正基兩氏와 더불어나도 감독관에 위촉되었던 것이다. 육축해체는 관리사무소의 직영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목부구조 해체작업을 도급주어 趙元載氏가 맡아 하면서 學術的인 조사에 소홀하였다는 輿論이 크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학술적인 조사를 겸행하는 직영체제를 택하였던 것이다.

육축의 해체에는 精密實測이 따랐다. 해체하면서 드러나는 모습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기록하고 해체되는 部材들에 一連番號를 부여하여서 재사용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실측에는 崔容完氏팀이 관여하였다. 실측팀은 製圖室이라 하여서 解體前實測으로 부터 관여하던 各大學에서 派遣되어 온 건축과 학생 중의 일부가 잔류하는 조직으로 운영되며 공사관리사무소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도록 되었다.

육축에 사용된 武砂石(장대석보다 운두가 높고 큰 돌, 성벽·석축 쌓는 때 쓰이는 석재)은 표면에 전모를 나타내어 길쭉한 것도 그 규모가 커서 아랫도리에 있는 것은 100톤에 가깝지만 밖으로는 작은 면적의 머리만 내밀었으면서도 뒤로 길쭉하게 뻗어 積心の 役割과 柱礎의 荷重을 떠받게 된 돌은 2백톤 가까운 것들도 있다. 이것의 해체와 해체하여 地上에 내린 것을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小運搬 일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 목뚝군들도 동원되었는데 그 중에는 60개의 영감님들도 섞여 있었다. 그 중의 한 노인은 鉄橋 놓는 일에도 종사한 바 있었다는 본인인데 어떻게나 기운이 좋은지 웬만한 卅年の 일꾼들도 그의 힘을 당하지는 못하였다. 이 분이 포함된 목뚝군반은 남들보다 능률이 2배나 올라서 내 기억으로는 특별 수당이 지급되었던 것 같은데 이들도 책임자인 金千石씨에게는 경의를 표하였다. 金千石氏는 지금은 他界한 분인데 생김새가 天王像 같고 얼굴은 마마손이 없어 지벧대 들고 버티고 서면 할일 없는 四天王像이라, 별명이 곰보·천왕동이였다. 큰 돌을 운반하거나 쌓거나 부리

는데 독보적인 기량을 지녀 生前에 수많은 塔과 성벽을 고쳤다. 그러는 중에도 사람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와 얽힌 이야기는 그래서 많고 또 인간적인 秘話도 많은 분이였다.

金七星이란 분도 대장쟁이로 참여하였다. 돌 다듬는 정·망치는 물론이고 집에 쓰일 鮮釘(대장간에서 만드는 각종 쇠못들, 긴 것은 2尺이 넘는 것도 있음) 등도 그의 손에서 다 만들어졌다.

이 부분이 육축해체와 쌓는 일에 쓰일 기구 하나를 고안하였다. 일터가 좁아서 큰 돌을 운반하거나 물리거나 바꾸거나 하는데 쇠동아줄을 걸어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사용될 돌 정수리에 네모진 구멍을 파고 거기에 쇠를 넣어 팽 물리게 하고 그 쇠에 달린 고리에 거중기(擧重機,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기중기의 한가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림)의 끈을 걸어 올리게 하여서 좁은 곳에서도 자유자재로 돌을 돌려가면서 제자리에 찾아 놓을 수 있게 하였다. 간편하지만 막상 생각해 내려면 까다로운 그런 구조물이다.

육축과는 관계없는 기능공이지만 林培根·朴琪燮·趙元載·李光奎라는 都大木級 목수들과 奇善吉이라고 하는 기와쟁이가 인상적인 분들이었다. 이분들은 다 他界하였고 李光奎氏만 生存하는데 국가에서 人間文化財로 指定하여 후배양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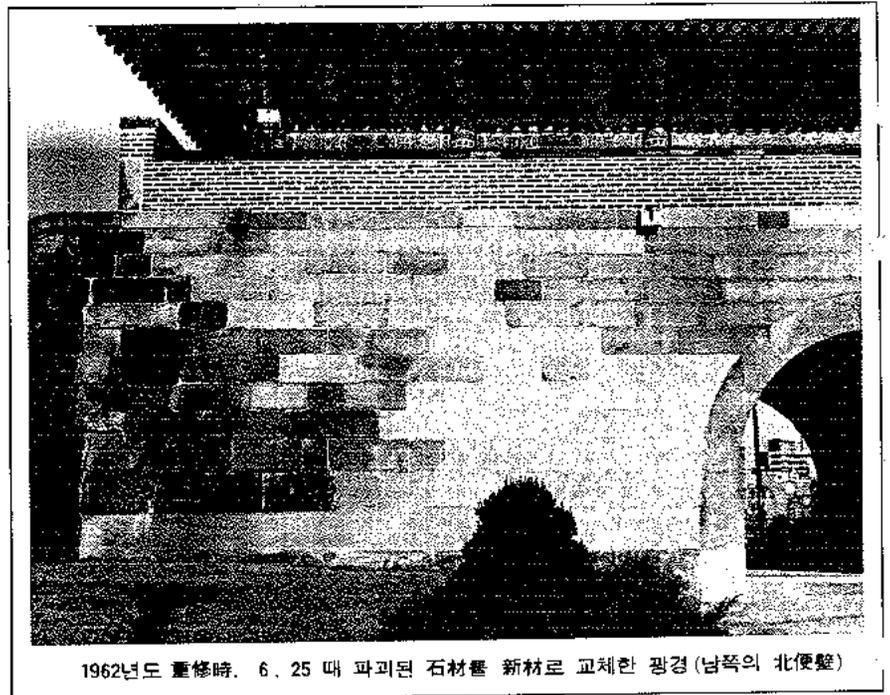
楊澈洙氏라는 監督官도 역시 돌아가셨다. 初期 우리나라 建築界에 공헌하던 분들이다. 반면에 현장소장을 지낸, 崔某라는 터무니 없는 사람이 있어서 工役期中 빈축을 사고 영망으로 만들었다.

### 3.

서울의 南大門은 수도의 正門으로 위엄을 갖추었다. 本名이 崇禮門인 이 大門은 지금의 서울역 부근에 있던 南池에서 퍼낸 흙으로 골짜기 사이를 메꾸어 육축하고 축조한 건물이다. 이런 공사는 世宗30年(1448年, 解體時)도리와 장혀에서 墨書한 上樑文과 重修記가 발견된 바 있음)에 시행되었는데 태조 5년(1396)에 처음 축조될 때에는 골짜기 문만 세우는 작업을 하였고 성벽도 토성이 배반이었다.

지금의 도규호텔에서 내려오는 언덕과 남산국민학교로 이어지는 地形은 능선에 따라 경사져 있는데 世宗 때에 상당한 土量으로 築土하기 이전까지는 남대문이 서있는 자리는 깊은 골짜기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여기를 메꾸어 쌓으므로 해서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가는 길이 경사를 이루게 되었다.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태조 때의 남대문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敦化門처럼 홍예문이 있는 陸築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世宗 때 重建하는데, 王朝實錄에서는 이때의 공사를 가리켜



1962년도 重修時, 6. 25 때 파괴된 石材를 新材로 교체한 광경 (남쪽의 北便壁)

「新作崇禮門」이라고 할 정도였다. 육축하고 2층의 초루를 짓는 작업이 이때에 완성되었던 것이다.

成宗 10年(1479)에 남대문이 重修된다. 世宗이 1448년에 지은지 32년만의 큰 수리공사인데 32년만에 重修한다는 일은 너무 기간이 단축하다. “왕조실록”에는 성종과 신하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듯이 기록되어 있다. 신하들은 “약간 기울어 보이나”고 주장한 반면에 성종은 “많이 기울어졌다”고 하였다. 결국 해체수리가 감행되는데 실제 어떤 결함이 있어 중수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성종 이래로 수리한 기록이 없다. 梨大史學科 출신의 具熙晝氏에게 위촉하여「서울南大門修理報告書」(1965年刊)를 편집할 때 ‘왕조실록’을 전부 통과하면서 남대문에 관계된 기록을 발췌하였으나 그후의 보수된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62년도 중수시에 조사된 바로는 壬辰倭亂 때 燒失되지 않았고, 또 그 후로 큰 사업은 없었더라도 부분부분의 보완공사는 거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중에 남대문 모습을 크게 바꾼 사건도 있었던 것 같으나 어느 시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원래 남대문의 지붕은 팔작지붕이었다. 팔작지붕은 지붕 좌우 마구리에, 버개에 버개도를 부치듯이 합각이라고 하는 三角狀을 구성시키는 지붕이며, 보통 중심이 되는 건물의 지붕은 팔작이어서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 등이 모두 이 유형의 지붕이다. 그렇던 것이 지금의 남대문 지붕처럼 우진각지붕이 되었다. 팔작지붕의 三角狀 합각이 없어지면서 용마루가 추녀마루로 계속되는 형태의 지붕이다. 마치 초가지붕 모습에 방불하다.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사되었다. 팔작지붕으로 구성하였던 원래의 구조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채 후대에 우진각지붕으로 변조하였음이 뚜렷이 드러나 보인다.

언제인가, 창덕궁의 敦化門, 창경궁의 弘化門, 덕수궁의 大漢門처럼 궁

성의 중요 大門들이 우진각지붕으로 통일 될 때 이 崇禮門 지붕도 우진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 같다.

남대문의 構造상의 특징은 2層을 구성하기 위하여 귀고주(隅高柱)를 둔 점이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볼 수 있는 법식이다. 양식상으로 남대문은 多包系の 공포양식을 지녔다고 말한다. 다포계는 柱心包系の 공포양식과 兩大別되는 양식인데 柱心包系가 朝鮮朝前期以前에 主流를 이루던 양식이라고 한다면 多包系는 高麗末로 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 역대에 걸쳐 조영되었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심포계의 공포는 기둥 위에만 구성되는데 비하여 다포계의 공포는 기둥 사이의 간격에도 나란히 구조된다. 그래서 包가 많다(多)는 의미에서 多包系란 낱말이 造語되었는데 조선조의 원래의 말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주심포계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게 되므로 기둥 위에 柱頭를 놓아 공포를 받게 되면 그간이나 다포계에서는 柱間에도 공포를 배열시키므로 해서 그것의 荷重을 지탱할 平枋어린 부재를 하나 더 사용한다. 남대문은 다포계의 이런 특징적 구조물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남대문은 上下 2層을 모두 사용하게 구조되어 있다. 경복궁의 근정전 등이 바깥은 이층이면서 안에서 울러다 보면 通層이 되어 천장이 까맣게 울러다 보이는 구조와는 다르다.

아래층엔 중앙간에만 마루를 깔았다. 나머지간은 맨바닥이다. 軍士들이 급히 뛰어다니는 데는 맨바닥이 유리하다. 가운데간에 마루를 깔 것은 守禦將帥가 坐定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조상으로는 흥에 윗부분의 넓게로 마루가 채택되어 무난한 마감을 하였던 것이다.

2層으로 올라가는 사다리(層橋機, 층층다리틀)는 두곳에 설치되었다. 2層의 바닥은 나무판자를 깔 마루인데 집의 大廳에서 처럼 우물마루를 구성

하지 않고 장마루를 깔았다.

2層의 천장은 연동이다. 연등천장은 서까래몸이 드러나 보이도록 꾸민 것인데 서까래 사이 간격에는 판자로 蓋板덮고 하얗게 密陀僧(아연화에 유사한 안료)을 발랐다.

남대문의 처마는 겹처마이다. 서까래만으로 구성되는 처마를 홑처마라 하고 부연을 덧댄 처마를 겹처마라 부르는데 처마의 곡선을 위하여는 서까래 다듬는 일에서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처마곡선은 위로 끌이 들리는 안허리곡선의 두가지가 있어 그것이 복합되어진 線으로 우리들 눈에 뜨이게 마련인데, 이런 선이 이루어 지려면은 여러가지 부재와 치밀한 계산이 있어야 한다. 추녀, 사태, 선자서까래, 갈모산방, 통서까래(이 경우엔 曲椽)와 평고대의 부재가 준비되면 추녀의 曲을 일만큼 잡느냐, 처마의 깊이를 기둥의 높이에 비하여 얼마로 설정하느냐, 추녀앞머리의 각도에 따른 軌跡의 산출 기초수를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등에 따라 치밀한 계산이 이행되고, 그 계산에 부합되도록 治木되고 結構된다. 그 결과가 처마곡선이 되는 것이다.

버선코와 저고리 소매곡선에 흔히 비유한다. 처마곡선이 그런 곡률을 지녔다는 것이나, 어째서 그렇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이는 결맞지 않은 비유이다. 오히려 한옥의 지붕과 처마곡선은 背景이 되는 山의 山勢나 山形과 많이 닮았다.

天然스러움을 으뜸으로 치면 우리네 先人들은 그런 눈을 지니고 살았던 것이다. 山이 내 집과 같고 내 집이 山에 함께 함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다. 지금 南大門은 背景을 四方에서 다 잃고 있어 山勢와의 相似를 볼 수 없게 되었으나 옛날의 사진을 보면 나즈막한 기와지붕 넘어 솟아 있는 南山·仁旺山·北漢山·北岳山들이 남대문과 닮은 山形을 돌보이며 우물거리고 있었다. 한가닥 맑은 구름이 흐르는 한적한 山이었다. (\* )

## 우리의 建築藝術로 獨立紀念館을 建立하자

# 제 1 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건축 토론회도 가져

해마다 국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열렸던 건축작품전이 올해부터 “대한민국건축대전”으로 모습을 바꿔 그 첫번째의 잔치가 건축인들의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지난달 열렸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2일간 문예진흥원 전시실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이번 건축대전은 신·기성인을 막론하고 건축인이라면 누구나 싶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무제있는 작품전이었고, 특히 이번부터 정부가 주관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건축인들의 손에 의해 열린 것이라는 점에서 더 뜻깊은 행사였다.

한국 건축가 협회(회장 李承雨)가 주최하고 문예진흥원·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한 이번 건축대전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작품작과 높은 수준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게 관계인사들의 말이다.

과거 국전의 경우 건축부문의 평균 출품수는 20여점을 밀돌았으나 이번의 경우는 무려 2배가 넘는 45점이 출품돼 양적으로 풍작을 보였고, 질적인 면에서도 출판만큼 향상된 양상을 보였다는 증언이다.

따라서 이번 건축대전의 입선작도

많아 모두 26작품—, 이중 대상 1점, 우수상 3점, 나머지 22점이 뽑힌 작품들이다.

대체적인 심사평은 앞서와 같이 질·양면에서 예년의 경우를 앞섰으나 전체적인 출품경향은 과거 국전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또 작품내용에 비해 과잉·과다표기 제작하는 경향과 주제선정에 있어서도 작가능력과 수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규모와 균형이 맞는 진지한 자세가 바람직하고 제시되기도 했다.

따라서 과거 국전입상작의 표기 수법을 모방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각자 주장에 알맞게 표기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의 대전에서도 이번 대상의 수법을 모방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좋은 점은 시사성 일반도에 치우치지 않고 건축·도시·조경 분야와 주거·기념관·스포츠레저시설 등 광범위하고 고르게 관심의 폭이 넓어진 점을 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초대작가작품과 일반 공모작품 등 약 1백여 작품이 일반에 공개 전시되었다. 심사결과 대상

을 받은 작품에 대한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 ☒ 대상 / “박물관(museum)”

□ 심사평 / 다른 작품과 돋보이게 다른 점은 대부분의 경우 조형구상을 평범하고 피상적인 동기에서 조형언어를 인용구사 하는 경향에 비해 이 작품은 사연환경과 조형물이 서로 만나고 구성지어지는 요소마다 공간의 생명력을 음미하면서 작품내용 구석마다 심취하며 쫓겨 흔적이 우수했다.

계획발전단계과정과 창의적인 새로운 기법에 찬사를 느끼는 한편 post modern의 흐름에 안이한 편승으로 오해되는 비판도 함께 엿갈렸다.

유도미학적 상상의 세계가 소극적이긴 하나 정적이고 자연과 순화하면서 조형공간의 음율과 진폭도 강하고 높게 구성되었다. 공간을 심도높은 차원까지 파헤친 밀도높은 작품이다.

한편 주최측인 한국건축가협회는 전시 기간 중인 지난 10월 23일 82년도 건축토론회를 열고 도시계획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또 이날 오후에는 이번 전시회 입선작가에 대한 시상식과 리셉션을 가졌다.

### ☒ 건축대전 입상자

□ 대상 / 양남천·최윤경·이현수 (작품: 박물관)

□ 우수상 / 김문덕·김성기·김성택 (작품: 민족수난·극복의지·승화)

□ 우수상 / 노광현·최성태 (작품: 고전과 현대의 만남)

□ 우수상 / 홍사염·김주연·공순구 (작품: 맑은볼·푸른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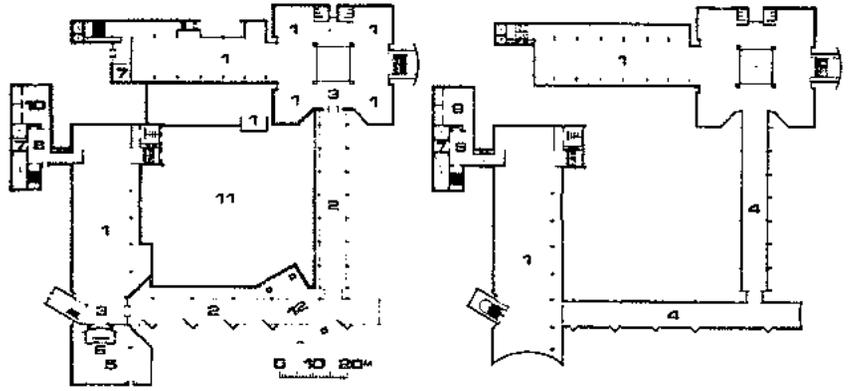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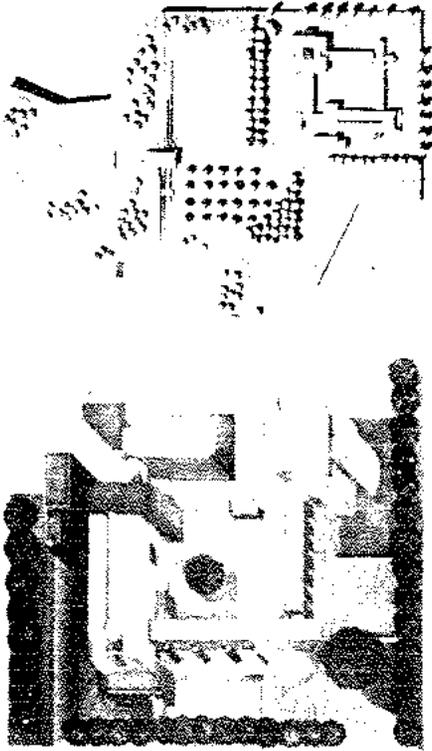


■ 건축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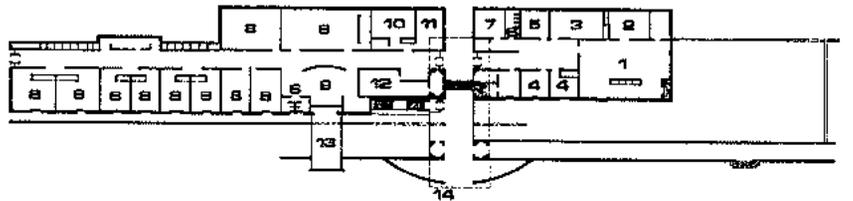
■ 건축대전 시상식

■ 대상 / 파울란



전시동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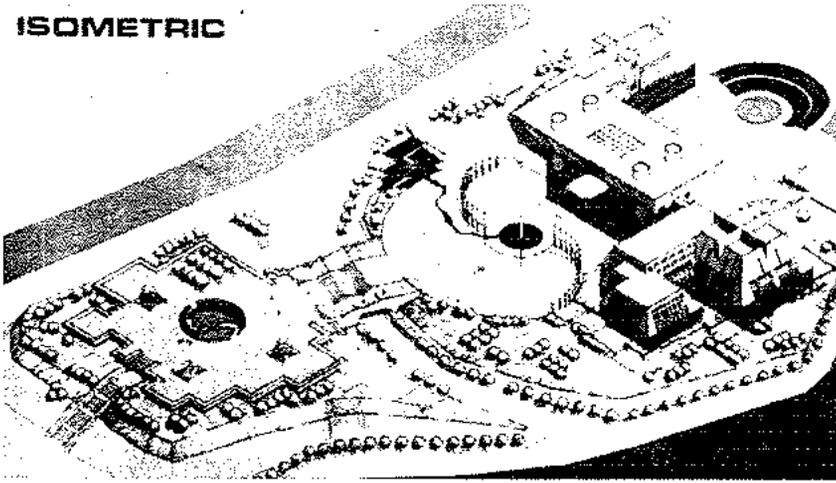
전시동 2층평면도



연구·교육동 1층평면도

■ 우수상 / 민족수난·극복의지·승화

IS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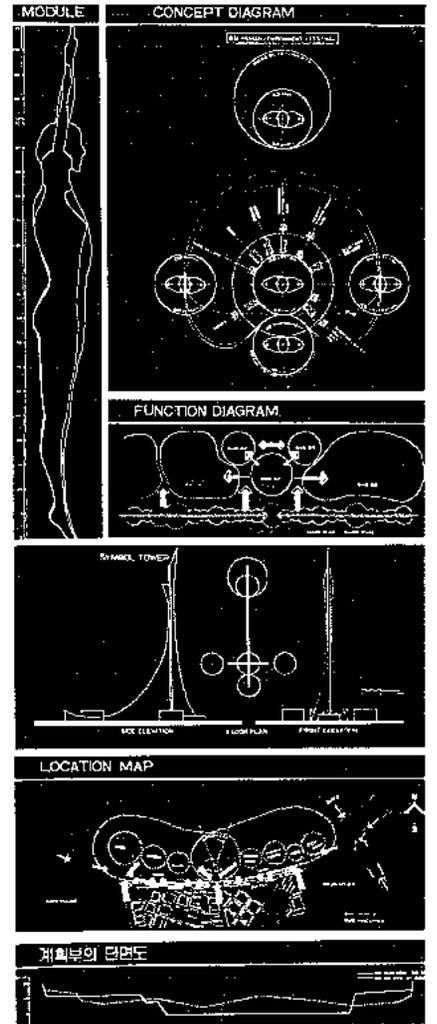


■ 우수상 / 고전과 현대의 만남



개 01  
 의 11: 서울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면적: 60920 M<sup>2</sup>  
 부 01: 미숙관  
 영 01: 11731 M<sup>2</sup> 19277 M<sup>2</sup>  
 02: 3층 (1차) 2층 (1차) 2층 (1차)  
 03: 2층 (1차) 2층 (1차) 2층 (1차)

■ 우수상 / 맑은물·푸른서울



# 건축계 뉴스 / 정보

## 建築学会 학술발표회 충북대서 특별강연회도

대한건축학회의 82년도 추계학술발표회가 지난달 30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발표회는 특별강연회와 일반 학술 논문발표로 나누어 진행된데 이어 충북대학교 총장이 베푸는 환영리셉션도 있었다.

특별강연회에는 3개분과(건축계획·환경, 도시계획·건축구조)로 나누어 제1분과에는 朴暎緒(아주대),李文輔(동국대), 洪大炯(서울시립대), 崔孝界(청주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제2분과에는 오정무(한국 동력자원 연구소), R. E. HULBERT, 박상동, 서항석(한국 동력자원 연구소), 유응교(전북대) 교수, 제3분과는 鄭口榮(서울대), 夫拓鼎(전남대) 교수 등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그밖에 일반 학술 논문 발표에는 모두 28명이 주제발표에 참가했다.

## 都心건축규제 완화키로

### 층수上向 건폐율 50%로

서울시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물층수규제를 완화하고 건폐율을 높이는 한편 옥외주차장 의무설치면적을 낮추는 등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재개발사업이 까다로운 건축규제조항 때문에 부진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건축규제 완화에서 ▲전체건축면적에 대한 바닥 비율을 45%에서 50%로 ▲건축면적에 대한 전체건적의 비율(용적률)을 670%에서 1천%로 높이며 ▲건축면적에 대

한 옥외주차시설 면적을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건물의 층수도 지역여건과 건물의 용도 등에 따라 개발적인 심의를 거쳐 20%범위내에서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같은 조치와 관련, 시는 이미 설정한 스카이라인 기준은 가능한 한 지키되 융통성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재개발사업 희망자의 토지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게 해있는 재개발법을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게 개정할 것을 서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도심건축물은 건축법상 건폐율 50%, 용적율 1천%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도시미관조성을 위해 서울시건축소례로 건폐율 45%, 용적율 670%로 제한해 왔다.

또 건물층수도 스카이라인조성방침에 맞춰 지역별로 제한, ▲역수강, 풍묘 등 고궁주변은 5층이하 ▲중앙청전내편과 退溪路남쪽은 10층이하 ▲武橋洞, 鍾路 1, 3街는 15층이하 ▲3·1빌딩, 남대문주변은 20층이하 ▲乙支路입구와 보터리주변은 25층이하로 묶어왔다.

## 新築에 단열재 사용 의무화

### 소형住宅도 적용대상

정부는 새로짓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새로짓는 건물과 공동주택 및 85㎡(25.7坪) 이상과 단독주택에 한해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85㎡이하의 단독주택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法制處심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연탄을 때는 85㎡ 미만의 소형단독주택도 모두 50mm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집을 지어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됐다.

그러나 정부는 기온이 따뜻한 濟州, 慶南, 全南 등 남부지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 住居地에 관광시설 가능

### 日照權 확보조건許容

주거지역이라도 주택들이 밀집하지 않고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넓은 공지에서는 호텔·모텔·유도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됐다. 건설부는 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에 대비한 관광호텔 등의 신속축전을 위해 건축법시행령일부(제66조 제2항제1호 및 별표 제5항)를 고쳐 주거지역안에서도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이 기준에서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의 陸地를 서울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백m 이내에 기준주택이 3백가구미만, 이밖의 도시에서는 2백가구미만이 있는 곳으로 대지 일부가 폭 12m 이상의 도로에 12m 이상 접한 곳에서는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을 허용케 했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 자동차여행자호텔(모텔), 청소년호텔(유도호텔), 해상관광호텔 등을 뜻하는데 지금까지는 주거지역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입지 기준이 없어 신속축전이 저해됐고 또 사업을 희망한다해도 교통부와 건설부가 협의해서 사업승인여부를 결정짓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주거지역내의 관광숙박시설기준은 건폐율을 10분의 4 이내(일반건축물 10분의 6)로 제한하고 건축물 높이는 건물경계선에서부터 확보된 대지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기존 주택들이 일조권을 침해받지 않게 했다.

또 무도장 등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 주변의 환경이 저해받지 않게하고 대지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20% 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큰 나무를 심어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토록 했다.

## 가건물 설치허용 범위넓혀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가설건축물의 설치허용범위를 확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가설홍행장 및 가설전람회장 등에 대해서는 1년을 기한으로 허용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공포된 건축법시행규칙개정령에 의하면 이밖에도 ▲시장, 안수가 도도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한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가설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 안전·방수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이하인 것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개정령은 또 토지의 굴착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그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위급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깊이 1.5m 이상 굴착할 때에는 그 경사도가 토질에 따라 위생방지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양(土川)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흩박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 美觀향상 地区 10곳 선정

서울市 外廓지대 포함

서울시는 수도서울의 상징 가로 건설을 위한 장기종합 건축계획 수립의 방안으로 도입한 도시설계 기본법에 따라 내년 중 6개지역을 더선정, 모두 10개지역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내년 중 추가될 곳은 테헤란로 등 永東일대의 신흥개발지를 비롯, 空橋路주변 등으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대상지역을 확정짓기로 했다.

한편 이미 선정된 世宗路, 鍾路, 乙支路지역 7.41km 29만 3천명은 도시설계작업이 이미 90%선을 넘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달 중 지정할 蠶室종합운동장~ 국립경기장 8.5km 48만 3천명도 용역을 맡겨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도시설계적용 가로를 10개구역 25km 85만 2천1백명으로 잡았으나 규모있고 정돈된 가로를 육성하기 위해 더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학생 졸업작품전 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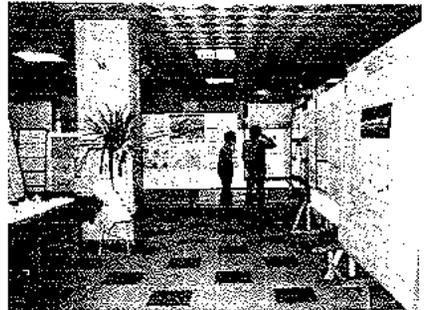
한양대·시립대서 열어

졸업을 앞둔 건축학도들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는 졸업작품전이 가을을 맞아 학교별로 알차게 열리고 있다.

지난 9월 하순에 있었던 서울대 공대 건축과 학생들의 졸업작품전에 이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는 한양대 건축과 졸업작품전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또 거의 같은 기간인 28일부터 31일까지는 서울시립대학 건축공학과 학생들의 작품전이 있었다.

한양대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와 건축학과 졸업생 2백13명이 난독 또는 공동으로 제작한 1백1개의 작품이 출품된 "82졸업 작품전"은 26일 오전 10시 학생회관에서 동문을 비롯한 내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장식을 가졌다.

동교는 졸업작품전 기간동안 초청 강연회를 비롯해서 상량제, 품평회 등



□ 한양대 졸업작품전

을 갖고 전시회의 뜻을 새롭게 했다.

한편 제5회 건축전을 가진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학생들은 모두 44개 작품을 선보여 그간의 학업을 실제 작품으로 나타내 보였다.

인간·자연·공간, 젊음의 붐우리, 사랑의 보금자리 등 젊은 건축학도다운 푸른 기상이 역력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으며 규모면에서도 소규모 내지 단위시설물이 아닌 대규모 또는 대단위 공동 시설물 따위를 그룹으로 제작 표현해서 건축학도로서의 꿈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 共同住宅관리 규약 制定

입주자 권리 의무 한계 정해

건설부는 연내에 아파트관리비징수 방법·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시설 유지한계 등을 정한 共同주택표준관리 규약 準則을 제정, 보급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는 공동주택에서 징수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住宅銀行에 예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아파트 등 共同주택의 관리비 및 시설유지 등을 둘러싼 관리자와 입주자간의 분쟁과 부조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미 전국 13개시·도와 住宅公·住宅事業協會 등에서 제출한 관리규약案을 토대로 구체적인 표준관리규약 準則을 마련 중에 있다.

이 규약에서는 회계 및 관리비징수방법·체납시 연체료 적용방법·시설유지의 한계·적정한 난방가동시기·관리자의 보수기준과 책임한계·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명시케 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공동주택관리령

을 개정, 아파트 등에서 징수하는 특별수선 충당금을 내년 3월부터 住宅銀行에 예치케하여 수선시기를 맞은 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인출해서 사용케 하고 특별수선시 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은행이 일반대출금리로 부족금을 대출해 주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일부관리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멋대로 인출, 유용할 수 있는 요인이 배제된다.

건설부는 또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市長·郡守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연 1회(5, 6월 중) 회계감사를 하도록하고 매년 10월에 공동주택관리실태를 조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케하며 형사문제가 적발될 때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3백가구이상 또는 승강기 및 중앙집중난방시설이 설치된 5백 2개단지외 29만 1천 3백 55가구이다.

## 특정 건축물정리 法令개정

구제대상 폭 넓혀

정부는 특정건축물정리대상에서 제외했던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군기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군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구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과태료산정기준도 하향조정, 최고 40% 이상까지 인상키로 했다.

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가 의결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의하면 이제까지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 해공군기지의 건축물 증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군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구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산정기준 중 구조별 가중치를 하향조정함으로써 과태료를 20%에서 최고 40% 이상까지 인하하였고 이 가운데 국가시책에 의한 건축물 과태료는 일반건축물 과태료의 12%로 크게 인하였다.

또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과태료와 새로운 기준에 의한 과태료간의 차액은 환불키로 했다.

## 연립주택 특별관리키로

不實施工맨 직접 조사

지난 78년부터 서울시내에 지어진 연립주택 9만여 가구분의 대부분이 부실공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서울시가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건축분야 감사결과 연립주택의 승인 시공준공능 건축과정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자 이에 관한 특별관리를 각 구청에 지시하는 한편 정도가 심한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결과 드러난 부조리 유형은 ▲부실시공 ▲지하층면적 불법증축 및 무단용도변경(주거용)분양 ▲허가조건에 명시된 주민협의 시설을 갖추지 않

는 사례 ▲실현성이 희박한 조건이나 과중한 부담을 조건으로해 사업승인을 받아 생긴 말썽 등이다.

## 일반 住宅 용자 늘려

來년에 금액도 인상

주택은행은 내년도 서민주택자금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1천 5백 82억원 늘려 모두 1조 1백 8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주택은행에 따르면 83년에는 국민주택자금 명목으로 4천 9백 30억원, 민영주택자금 명목으로 5천 2백 50억원을 공급, 주택금융수혜가구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 戶當 용자한도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 중업원 주택자금의 지원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은행은 부동산 정보 및 매매중개업무를 세로 개발하고, 새로운 「내집 마련 저축제도」를 마련해 市販할 예정이다.

## 無許 건물 3区分 정리키로

양성화 · 재개발 · 철거로 나뉘

서울시는 현재 가장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무허가 건물 15만 2천여채 중 올림픽 개최때까지 우선 8만 9천여채를 양성화, 재개발, 철거 등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88년 이후 정리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현재의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두려는 대규모국제행사인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시가 추진 중인 무허가 건물 정리계획을 보면 전체 15만 2천 2백 57채 가운데 7만 5백 35채는 양성화, 5만 6천 1백 10채를 개발재, 2만 5천 6백 12채는 철거키로 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양성화 대상건물은 오는 84년까지 모두 양성화조치를 끝내기로 했으며 재개발은 전체대상 5만 6천 1백 10채 중 8천 5백 8채의 재

개발을 끝내고 나머지 4만 7천 6백 2채는 올림픽 개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철거대상도 전체 2만 5천 6백 12채 중 1만채는 87년까지 철거하고 나머지 1만 5천 6백 12채는 올림픽 이후로 미루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 1차연도인 올해 안에 무허가건물 1만 5천 8백채를 양성화 하기로 하고 신고를 받고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부대조건이 까다로와 거의 신고가 안들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개발은 현재 선제목표 1천 4백 8채 중 송암동의 숙청 가마니촌 8백 68채와 서대문구 1백 11채 등 모두 9백 79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철거도 전체목표 1천 5백채 중 9월말 현재 9백 45채를 철거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中之島에 유람선 터미널

서울市, 84년말까지 완공키로

한강의 요충 中之島에 유람선터미널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제 1한강교 중앙의 中之島를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키로 하고 그동안 소유주인 進興觀光과 中之島개발사업협회를 협의한 끝에 지난달 29일 최종안을 확정짓게 된 것이다. 中之島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제 1한강교를 중심으로 하류쪽인 현 한강테니스장 6천 4백 80명에는 육외수영장 1개와 투수실내수영장 2개를 설치하고 상류쪽인 현재의 자이안트테니스장 6천 8백 85명에는 유람선터미널과 민속공연장, 식당, 토산품 판매점, 주차장 등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進興觀光은 당초 자금사정을 이유로 中之島에 대·소규모의 수영장만 설치키로 했었으나 서울시와의 中之島개발계획을 협의, 확정에 따라 곧 세부설계에 착수,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나서 오는 84년말까지는 완공 할 예정이다.

中之島의 전체면적은 1만 3천 3백 65평이다.

#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Ⅲ)

## 情報收集과 選擇

참고: (I) 經營의 基本問題 (82年 9月号 게재)  
(II) 組織의 役割 (82年 10月号 게재)

자료: 田中 清著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에서

設計事務所의 經營活動 — 營業·組織運營·人事·專門業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活動에 依르기 源이 되는 것은 情報이다.

情報의 原點은 人間과 人間의 연결에 있다. 人脈이 重要시되어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派閥이 생기는 것도 근본 이유를 따지고 보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情報의 本質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岩崎隆治氏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1. 情報란 생각하기 위한 소재이다.
  2. 情報란 行動하기 위한 知識이다.
  3. 情報란 成長하기 위한 糧食이다
- 라고 表明되고 있다. 즉 思考·行動만이 아니고 經驗과 감각분야까지 넓은 思想방법이다.

현대는 情報化社會라고 보통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封建社會에 있어서 地位,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돈과 같이 現代社會에 있어서 情報가 하나의 커다란 價値로서 公認되어 졌음이다.

人間이 어떤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理解에 따라 행동하여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패턴, 혹은 思想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려는 同時進行型의 패턴, 여하튼 그 에너지源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情報에 의한 것이다.

비즈니스로서 활용되는 情報의 종류로서 다음과 같은 분류가 생각되어 진다.

1. 經營·營業에 관한 情報
2. 組織·인사에 관한 情報
3. 專門業務에 관한 情報
4. 資金·資材에 관한 情報

5. 個人的 情報  
또 情報傳達의 루트로서는  
1. 언어에 의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轉해지는 情報

2. 視覺·活字에 의한 매스컴 情報(TV·신문·잡지 등)

3. 專門書·報告書·談書·通達 등 의 事務的인 情報

4. 交際·편지·명함 등 의 교환되는 個人情報

라는 經路에 의한다. 다시 말해서 이상의 전반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外部로부터 받는 情報과 스스로 만들어 내는 情報가 있어서 그 交流에 의하여 自身도 事業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情報의 收集에 있어서 중요한 點은 무엇 때문에 情報를 모으나 라는 목적과 이유를 확실히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方法과 範圍를 한정하고, 동시에 언제까지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時限設定해야 한다. 情報量의 범람이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으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情報는 의외로 적은 것이다. 오히려 自身에게 無意味한 情報라든가 해로운 情報가 全體量에서 比較도 안될 정도로 많다는 현실이다. 거기서 情報의 選擇·整理·活用 의 技術이 요구되는 것이다.

막말로 처세에 요령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이미지를 느끼게 하지만 人生의 逆觀者라면 自己自身도 조금은 탐고 싶다고 생각되어 짐은 묘한 것이다. 요컨대 그와 같은 사람은 情報의 수집이나 활용이 좋은 사람으로서, 社會와의 調和에 뛰어난 才能의 소지자인 것이다. 그러나 前者와 後者와의 뒤안쓰의 차이는 본인의 德性評價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 情報收集과 選擇의 技術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의 目的·範圍·時間의 문제에는 限定條件이 있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方法과 技術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 有用한 새로운 情報를 항시 얻기 위한 마음가짐이 그 前提로서 重要하다.

### 情報收集의 前提條件

1. 항상 問題意識을 가지고 있을 것.
2. 自己가 무엇을 알아야만 할까 하는 自覺을 가질 것.
3. 無關心·無氣力·無感動한 精神狀態가 最大의 阻害條件이 됨을 自覺할 것.

### 정보의 選擇

1. 가치있는 情報選擇의 밀도는 본인의 予備知識과 專門能力의 정도에 정비례한다.
2. 먼저 生情報自體의 價値判斷이 重要하나, 價値가 높은 情報일수록 二次加工(企劃)을 거쳐서 활용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 프로세스의 連想能力이 重要하다.
3. 情報人手源과 情報의 성격에 따라 選擇의 기준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 정보收集과 選擇技術

#### 1. 收集技術

가. 人間關係를 활용 — 거래처·친구·知人·선배후배·業者·메이커 등, 이들 중 가장 人脈이 강한 것은 친우이다. 친우들 중에서도 더욱 강한 연관관계는 학교동창·事業上의 친우·戰友·취미회 모임會員의 순서이다 (岩崎隆治氏). 좋은 학교를 지향함은 옛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은 좋은 스승과 친구를 생애를 통해 교제

할 수 있는 점에 커다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나. 매스컴(情報機關)·業界新聞·會社情報·專門誌·專門書籍 등의 활용

다. 金融機關·政府機關·審査機關·業界團體·講習會·研究會 등의 情報活用.

## 2. 듣는 技術

가. 相對選擇의 着眼點이 중요

누구에게 무엇을 들을 것인가의 목표를 自己自身으로부터 먼저 파악하여 둘 것.

나. 듣는 초점에 따라서 情報의 질이나 精度에 큰 차이가 있다. 그분위거나 시간의 배려도 필요하다. 기대하는 情報의 질에 따라 會社·自宅·料亭 등 장소의 선택에 신경을 배려하는 것은 그같은 意味가 있기 때문이다.

다.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場所의 設定이 적절하더라도 듣는방법의 좋고 그름에 따라 얻어지는 성과에 커다란 차이를 생기게 한다. 말하는 기술·要點을 포착하는 방법 등에는 많은 연구와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점이 현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심어주는 교육에 습관이 되어 생각하는 교육으로부터 멀어진 감이 있다. 그러므로 받아 들이는 입장으로 듣는 것은 잘해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들어서 알아내는 것에는 미숙한 것 같다. 또 정확한 어휘를 알지 못하여 회화용어와 문장용어의 구별을 못함이 심하게 눈에 띈다.

## 3. 읽는 技術

가. 문자에 친숙해 지는 것에서 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學生時代를 통하여 결핍기식의 공부만 하게 되면 社會에 나와서 그 습관을 고치기란 대단히 어렵다. 文字의 내용에 자신의 마음을 투입하는 습관이 몸에 젖게 되면 이해력도 높아지고 長文의 책을 읽는 것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된다.

나. 단어가 가지고 있는 意味를 정확하게 알 것. 될 수 있으면 그 語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 文字에 적극적인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常用漢字는 읽기 편하고 쓰기 편하도록 지나치게 重要性을 두었기 때문에, 개선된 부분과 개조된 부분으로 인하여 語源에서부터 완전히 이탈한 별개의

독립 文字로서 사용되는 심도 있기는 하다.

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意味와 동시에 한결의 文章 그리고 전체의 내용을 재빨리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신중히 읽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목적에 맞추어서 亂讀, 대각선 읽기, 배고 읽기의 기술은 때에 따라선 有用性을 가질 때가 많다. 新聞用語의 경우도 한정된 지면에서 정확하게 情報를 전달하고자 하는 重點 때문에 일종의 생략이나 함축된 짧은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意味로부터 文章으로서의 長短點을 함께 하게 되겠으나 배울 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라. 쓰는 방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으나 신문기사나 보고서의 내용, 그 표현방법으로 4W 5H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듣는 방법·읽는 방법의 기술로서도 이 습관을 익혀 두면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意味로서는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라는 내용, 사실을 전달하는 요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마. 情報를 팔기 위해서는 資本을 투자할 필요를 自覺해 둘 것. 범람하는 많은 情報 중에서 가치있는 많지 않은 情報를 찾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 情報整理와 活用

自己의 목표와 판단에 의해 수집하고 선택한 情報를 먼저 資料의 형태로서 보존해 둘 것. 그리하여 필요에 따라 발췌하고 새로운 情報로서 다시 만들어 가는 것이다. 收集한 情報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加工하여 준비해 둔 것을 情報整理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活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作業段階이다. 항상 보다 새로운 정보와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치가 절감된 지난 情報라든가 쓸모가 없게된 情報를 제거해 가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찾고자 하는 신선하고 바른 價値의 情報라든가 非載的인 效用을 기대할 수 없다.

요즘과 같은 社會의 推移, 技術革新의 주가(사이클)가 짧은 상황에서는 하나의 情報價値도 역시 짧은 수명으로 그 역할을 끝내는 경향이 현저하

다. 情報中에는 소중하게 保存해야 하는 것도 있으나 비즈니스情報의 경우에는 대개 그같은 것은 별로 없고 스피드와 정확도를 중요시하는 것이 많다.

이상의 前提를 근거로 하여 情報의 整理와 活用 방법과 문제점에 언급하고자 한다.

1. 選擇段階에서 관심을 갖는 중요성과 높은 感受性 등, 다시 말해서 좋은 안테나를 가져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했으나, 整理段階에서는 分類方法과 加工方法이 중요하다.

분류방법의 原則은 될 수 있는 한 번거롭지 않은 단순명쾌한 방법에 의한 것이 이상적이다. 싹싹하고 스피드하게 그리하여 필요에 따라 즉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加工方法에서는 分類·整理하기 위한 一次加工과 최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二次加工으로 나누어 진다. 11의에 따라 一次加工만으로 活用될 수 있는 情報도 있으나, 經營情報나 營業情報에는 二次加工을 필요로 하는 情報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二次加工을 일반적으로 企劃이라 부른다.

2. 情報整理에 대한 시간적인 체크의 타이밍은 經營的 분석보다도 한 발, 한 싸이클 빨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반달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짧은 分點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社會的 싸이클의 스피드의 문제와 情報의 入手·활용에도, 또한 사람끼리, 비즈니스 중에서도 경쟁이 존재하는 사실이 하나의 이유이다.

두번째의 이유로는 情報의 新鮮도와 陳腐化에의 대응, 세번째 이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버리기 위함이다.

3. 항상 問題意識을 가짐으로써, 이야기나 文章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확 와 닿을 때, 강하게 의문을 느낄 때, 무엇인가 생각해 하여지는 것이 있을 때, 자기로서는 가치있는 情報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情報의 正確도를 확인키 위해서 이중 체크가 바람직하다.

確率論에 의하면 單純情報와 이중 체크에 의한 情報의 正確도는 50배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新聞 情報의 경우, 2-3의 他新聞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다. 論亂의 경우에는 다른 關係者에게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

4. 資料에는 꼭 人手한 經路와 날 짜를 記入해 둘 것. 情報의 新鮮度를 수시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해 둘 것과 그 情報의 내용을 더욱 깊이 追求할 필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준비를 해 둘 것. 더구나 필요에 의해서는 印象·意見을 첨가해 두는 加工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된다.

5. 情報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는 항상 가깝게 휴대하여 둘 것. 일반적으로 최소한이란 샤프·연필·볼펜·메모지 또는 수첩·명함類이다.

建築家로서는 그외에 자라든가 축척자(Scale, 20cm 정도 길이의 매나무로 된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편리함), 샤프·연필에는 지우개가 부착된 것이 편리하고 나아가선 휴대용 소형계산기 정도를 常備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6. 資料는 잘 써두는 것보다도 알 아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별한 목적 외에는 깨끗이 써둘 필요는 없다. 그대로가 가치있는 情報를 초 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용이하게 活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資料들의 整理方法에 집중 연구하는 편이 意味가 있다. 整理方法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할 필요는 없다. 要는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끄집어 낼 수 있고 자유롭게 取捨選擇(追加·교환·폐지 등)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7. 情報의 分類·整理方法에 있어서도 단순한 經營資料로서의 整理方法이 아니고 社會情報·經濟情報·經營情報·組織情報·人事情報·金融情報·稅務情報와 같은 細目別分類가 생각되어 진다. 이 분류방법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또는 情報量에 따라서 풀어내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각 時點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다. 요컨대, 빈약한 情報는 실제로 이용되지 않고, 情報가 너무 많아 산만한 정보는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目標로 압축하여 特定意味를 갖는 情報가 되지 않으면 目的에 적합치 않는 것이 情報의 특성이다.

8. 專門인 정보에 대해서도 그냥 設計資料라는 整理方法에 의해 내용이 충실하게 됨으로 인해 오히려 수습이 어려워 지게 된다. 또 活用段階에서도 찾아내기가 곤란해 진다. 따라서 정리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함이 현명하다.

#### 가. 專門別分類에 의한 方法

意匠·構造·設備·材料·經濟(코스트)·法令·業界事情 등의 分類方法 더욱 細分하면 디자인·외장·내장·外構·造園·都市計劃·環境計劃으로 나누워지고, 構造에 의한 分類法으로는 木造·鉄骨造·鉄筋콘크리트造·鉄骨鉄筋콘크리트造, 工場生産方式(프리패브구조)·超高層構造(柔構造), 基礎構法 등으로 나누어 진다.

#### 나. 用途別分類에 의한 方法

住宅·펜션·事務所·商店·大規模商業建築·銀行·工場·倉庫·交通建築의 用途別 資料化

다. 材料別·部門別 分類에 의한 方法. 鋼材·콘크리트 製品·木材·알루미늄製品·金屬製品·化學製品·廚房機器·空調機器·輸送機器·衛生機器·電氣製品·外裝材·內裝材·베네펀·看板·造園材料 등으로 細分化된다.

#### 情報創造와 提供

情報로서의 設計監理業務는 어떻게 評價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커다란 특징은 創造性과 綜合性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을 담당하는 建築家의 創造能力과 綜合能力에 의해서 당연히 情報로서의 質도 左右되어 진다.

建築家の 업무로서 요구되어 지는 內在的 條件에는 技術的 條件, 藝術的 條件, 法律的 條件, 社會的 條件, 經濟的 條件 등이 있고 그것들을 종합함으로써 성과는 効用性·機能性·耐久性·安全性·快適性들의 要充足이 기대된다.

建築家は 프로페션으로서의 입장에서 이들 諸條件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이 專門家의 책임으로써 요구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建築家の 社會的 評價가 확실히 못하고, 設計監理業務의 質的 評價, 質的 比較 基準도 아직 社會의 일반적 知識에서 요원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西歐諸國에서는 商店主나 運轉手와 같이 一般市民 레벨의 사람들까지도 건축에 대한 자기의 판단기준을 가지고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세워진 수준급 이하 建物の 設計者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들은 일이 있으나, 그것은 일반시민의 文化·藝術創造에 대한 關心度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기가 사는 환경 및 생활의 充實度로 연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基本意識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文化를 市民生活 속에 융화시키려는 혼련이나 습관이 빈약했었다는 점과 사실상의 市民社會가 얼마 전까지도 존재치 않았다는 것이 文化가 社會的 普遍性을 가질 수 없었다는 최대의 원인이 아닐런지.

情報로서의 質的 評價能力이나 比較能力에 뒤떨어지는 建築主는 당연히 그것을 經濟的으로 올바르게 評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建築設計라는 創造行爲는 一品生産的이며 또 注文生産的 업무이기 때문에 그 經濟的 評價도 역시 建築主라는 特定對象에 한하게 된다. 같은 技術的 所産에 의한 機械나 電氣 製品類와는 달리, 같은 設計로부터 大量生産方式으로 불가능한 宿命性과 동시에 轉売行爲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적인 經濟的 弱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建築의 創造行爲와 가까운 분야이면서도 繪畫나 彫刻·家具作品은 특정한 고객에 속박받는 일 없이 商品으로서 市場性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建築의 設計圖書는 그와 같은 普遍的 商品性을 가질 수 없는 성격인 것이다.

따라서 設計監理業務의 經濟的 評價는 社會的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제대로 못받고 있으며 여하튼 建築主의 主導로 經濟的인 평가에 치우치기 쉽다. 즉 어떠한 가치있는 情報나 商品이라도 경쟁해서 그것을 매입하려는 손님이 存在하지 않는 한 그 經濟的 평가를 결정하는 主導權은 매입자의 손에 있음은 經濟的 원칙이다.

建築家業務의 本來的 가치는 그 發想에서 부터 業務의 프로세스, 건축으로서의 成果에 이르기까지 全段階에 存在하나 그 中間過程에 投入되는 專門家의 에너지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짐

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設計圖書라는 成果物 이전에 建築主에겐 보이지 않는 숨은 情報資料가 많이 존재하며 그들의 시행착오와 체크에 의한 取舍選擇의 결과로서 하나의 設計가 완성되는 사실이 無視 또는 經視되고 있음이 커다란 하나의 원인이다.

또 建築이 建築主에 의해 제대로 評價되는 시기는 建築을 計劃할 때가 아니고 完成하는 時点이나 나아가선 3년·10년 사용하고 난 時点에서나, 建築을 構成하는 재료와 그외의 有形物은 그 時点에서 時價를 원칙으로 하여 評價되어 지지만 無形의 情報과 그 무엇을 介在함으로써 표현되는 設計行爲는 적어도 經濟的 評價만으로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다.

앞에서 情報로서의 質的 차이가 建築家の 創造能力과 綜合能力에 있어서 左右됨을 기술한 바와같이, 建築가가 가지고 있는 知識과 能力의 發揮自體도 過去의 情報과 創作時点에 있어서의 顯在的 情報, 潛在的 情報로서 綜合的 활용의 相乘效果가 있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비록 建築主가 結果로서의 評價만의 理解에 지나지 않더라도 建築本質的인 正當한 평가의 意識이 있다면 建築家の 人格·思想·業務프로세스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의 지극히 常識的인 것이지만 建築家를 보는(觀客) 것과 이야기(討論)와 作品에 接近(확인)하는 것이 이해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다.

### 建築家の 側面에서 본 情報

建築家가 專門的인 입장에서 창조하여 제공한 情報은 극히 다양한 동시에 高度의 質이 요구되며 또한, 그것에도 불구하고 일반 建築主에게서 正當한 經濟的 評價를 얻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1977년 7월 建設部長官은 建築士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한 建築士事務所의 開設者가 그 업무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는 報酬의 기준을 정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原價主義의 思想에 입각한 報償加算費 방식이고, 그 構成은 ㉔ 直接人件費 + ㉕ 直接經費 및 間接經費 + ㉖ 技術料 등 經費의 합계를 標準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創造行爲에 대한 평가에

相當되는 部分은 ㉖의 技術料 등 經費의 項目이지만, 長官의 告示에 있어서는 이 數値的 評價는 빠져 있다. 그러나 이 告示에 첨가된 解説書, 또는 1977년 3월에 의한 建設部 業務報酬調査委員會 報告書에 의하면 ㉖의 直接人件費의 50%를 標準으로 하고 있다. 長官 告示에 있어서는 이 數値를 明記하지 않은 眞實된 이유는 建築士는 自己業務의 創造的·技術的 가치를 注文者(建築主)와의 협의에 起因된 理解와 合意에 따라 獲得하는 것을 前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지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또한 日本的 현실인 文化的·創造的 行爲에 대한 理解는 되지만, 評價는 낮다 라는 文句에서 보아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서는 前述의 퍼센티지를 나누지 않는 한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낮은 評價라고 斷言할 수 없는 判斷이 선다. 要是 建築家 측의 技量과 業務의 正當한 實踐에 의해 획득하여야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당연한 것이고 특별히 불만을 말하게 되는 이유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長官 告示에 의한 原價主義는 本質的으로 經濟的 評가를 基盤으로 해서 약간의 技術과 創造에 대한 評가를 加味하는 것을 示唆한 것이다. 日本建築家協會는 이것에 대해서 行政權力이 리더십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經濟論理의 內에서는 가능한 許容範圍에 있을 것이다 라는 現時點에 의한 評價를 하면서도 過去의 料率方式인 原價를 基盤으로 한 効用主義이고 社會的으로도 긴 歷史의 뒷받침을 가지고 容認되어 진 것에 대한 經濟論理에만 치우친 측면에서 게다가, 政治歪曲의 延長線上에 있어서 壓力을 가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建設部도 이 점을 솔직히, 이것은 하나의 基準을 明示한 것이고 이것을 社會的으로 정착시켜 가는 것은 建築士의 實踐에 의한 노력의 뒷받침을 바라는 것으로서, 이 基準을 結論으로서가 아니라 出發線으로서 생각하기 바란다 라고 表明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今日的 상황을 前提로 해서, 建築家の 업무가 建築主와 一般社會에서 正當한 評價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理念과 方法이 필요할까.

以下는 建築家가 創造한 情報를 어떠한 形態로 社會에 供給하고 公現할 것인가 하는 觀點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1. 企業情報과 프로페션으로서의 情報의 本質的인 차이를 自覺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建築主의 직접적인 要求를 만족하는 것에만 限局되어서 社會의 長期的 展望을 해결하는 使命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2. 단순한 知識에 의한 情報의 部分販賣가 아니고 信念에 의거한 實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물론 專門的 情報는 創造性과 綜合性을 충족시키고 特定の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適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3. 프로페션이라는 것은 社會的 中立의 立場에 있어서 公共의 利益과 人間의 존엄을 지키는 職業人인 것이다(日本建築家協會).

따라서, 建築家는 資本主義社會의 管理體制·經濟優先의 論理에 기울어지는 일이 없이 自由職業人으로서 어느 정도의 獨立性을 확보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일을 통해서 資本主義社會의 結核을 수정하는 立場을 버려서는 안된다. 建築家는 자기의 主張을 實証的으로 蓄積해 가야 된다.

4. 專門情報로서는 어떤 特定の 목적에 대해서 특별한 答을 가지고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프트한(Soft) 創造思想과 하드(Hard)한 技術의 풍부한 蓄積과 多面性이 요구되는 성격에 가져야 한다.

또한, 요구의 最少範圍內에서 答할 것만이 아니라 보다 高度하게, 보다 넓은 視野에 입각한 指導性과 個性이 필요하다.

5. 建築主의 要求內容이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調整造作한 뒤에 專門家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검토한 결과와 또한 建築主側의 素案이나 構想을 다시 검토하여 이해를 구할 것.

理解됨에 따라서 專門的 情報의 價値, 또는 單價에 대한 正當한 評價가 기대된다.

또한 專門家로서 그 業務에 대한 責任界限나 守備範圍에서도 認識을 明確化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인테리어 디자인의 概要

朴 弘 — 건축가 · 中央大교수

人間生活의 쾌적성을 추구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科學이 발달하고 高度産業社會化된 現代에 와서 더욱 뚜렷한 專門分野로 각광을 받게 되었음은 前回拙稿(10月號 참조)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 語義와 定義를 논하기 전에 과중한 業務와 급면해 가는 社會에 적용해야 하는 人間이 에너지의 축적과 業務能率을 높일 수 있는 참다운 의미의 生活空間을 希求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재음미 할 필요가 있다.

### ● 定 義

인테리어 디자인은 住居建築(residential), 商業建築(commercial), 또는 公共建築(institutional architecture)의 室內環境을 창조해 내는 實行이요 過程이며 所産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哲 學

인간의 역사는 유구하며 그것은 건축의 역사이기도 했다. 인간이 살아온 環境을 하나의 世界로 본다면 人間은 世界 속에 또 하나의 세계인 그 자신의 室內環境(interior environment)을 창조해 왔다. 이렇게 생겨난 室內環境이란 人間생활에 관한 問題點들에 대한 論理的이고 感性的이며 實在的인 解決의 遂行에서 오는 것이거나 우연하게 생겨나는 事件들의 結果일 수도 있다.

### ● 教 育

뉴스미디어가 보여 주는 質的, 量的인 익스포저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그 要素들에 있어서 『오늘』(today)을 인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취재기사는 大衆을 위해 귀중한 教育的 道具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住居環境이나 소규모의 商業空間, 또는 公共建築의 실내 環境을 自作으로 꾸며 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극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專門적으로 室內環境을 취급하는 領域의 사람들에게도 고무적 역할을 하게 된다.

機能적이고 審美的인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複合性 때문에 室內環境을 改善하려는 일이 증가되고 있다.

專門職으로 종사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특수한 室內空間과 空間의 所有者(owner)와 使用者(user)側の 機能적이고 審美的인 요구를 充足시켜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專門적으로 하는 디자이너 가운데는 다양한 教育經歷을 찾아 볼 수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教育하는 大學過程은 梨花女大 裝飾美術科가 유일한 곳이나 그 教育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專門職으로서의 女性에게 대한 기회확대가 부족한 탓이다. 그외에는 대다수가 大學에서 建築을 전공한 사람으로 造形센스가 뛰어난 엘리트들이다. 또한 美術大學에서 應用美術을 전공하고 建築에 대한 소양이나 별도의 實務訓練을 거친 人們들로 구성되어 있다.

### ● 實 務

職業的인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教育經歷이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僱傭(employment)의 기회나 디자인을 의뢰하는 象도 다양하다고 하겠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크고 작은 인테리어 業이나 建築設計研究所의 인테리어 担当 스태프로 일하며 建設會社, 販賣會社(百貨店 등), 製造會社, 個人事務所, 또는 政府機關이나 公共團體 등에서 일하게 된다.

專門적이건 非專門의 水準에서 실행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社會各界各層에 의해서 사치(luxury)라기 보다는 必要不可缺(necessity)한 것으로 受容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이 곧 韓國인테리어 디자이너協會(KOSID: Korean Society of Interior Designers)가 지난 3月 建設部로 부터 社団法人체로 認可를 받게된 背景이 된다. 이와같은 受容은 人間生活의 哲學的, 心理的, 肉體的인 面에서의 質에 대한 環境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社會의 近代性에서 비롯된다.

### ● 製 作

인테리어 디자인의 多樣性이란 室內環境에서의 個性이나 品位를 이루는 題에 까지 미친다.

室內環境은 建築的이거나 非建築的일 수 있고, 現代의이거나 傳統的일 수 있으며, 裝飾的이거나 꾸밈없는 實體 혹은 幻想(fantasy), 主題的이거나 非主題的, 대담(bold)하거나 感感(subtle)한 것, 부드러운(soft) 것이거나 거친(harsh) 것, 溫和(warm)하거나 시원스런(cool) 것일 수 있다.

### ● 範 疇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의해서 창조된 室內環境은 우리가 想像할 수 있는 모든 空間, 即 :

- ① 獨立住宅, 아파트, 聯立住宅, 別莊
- ② 사무소, 銀行, 우체국, 刑務機關
- ③ 호텔, 모텔, 클럽하우스,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 ④ 學校, 圖書館, 博物館(美術館), 研究室, 教會, 극장, 映畫館
- ⑤ 레스토랑, 茶房, 나이트클럽, 볼링場, 理·美容室, 사우나·터키탕, 헬스클럽
- ⑥ 점포, 商店, 쇼핑센터, 百貨店, 쇼-룸, 박람회장, 各種터미널
- ⑦ 병원, 健康管理研究所, 助産院
- ⑧ 氣車, 船舶(요트·旅客船), 비행기, 宇宙船(space ship), 우주정거장

등 人間이 居處하게 되는 모든 空間을 그 對象範疇로 볼 수 있다.

### ● 構成要素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機能적이고 審美的이며 客觀的인 동시에 主觀的이며 有形無形의 디자인 要素들을 用함으로써 室內環境을 창조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란 능숙하고 창의적으로 用됨으로써 요구되는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道具와 媒介體들인 것이다.

室內建築, 諸工學的의시스템, 마감재료, 家具, 裝飾品과 액세서리, 平面計

평과 2·3次空間, 스케일, 프러포오션, 形態, 볼-륨, 平面, 線, 紋樣, 텍스추어, 色彩, 對照, 統一, 強調, 리듬과 발란스 등은 인테리어 디자인의 계획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도구요 매개체인 것이다. 人間の 경험과 인테리어 디자인 要素에 대한 知識과 概念의 확립이 室內環境 창조를 성공적으로 유도하는 根幹이 됨을 당연한 귀결이라 볼 때, 室內構成의 디자인 要素를 다음과 같이 定義해 보는 것도 有益하리라 본다.

1) 室內建築 (interior architecture) 이란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다.

- ㉠ 구조적 要素를 모두 노출한 방
- ㉡ 建築의 한 부분하면서도 시각적으로는 그 實體를 표현해 주는 固定家具 (built-in seating)
- ㉢ 建築의 인 벽구조로 숨겨진 창고

2) 技術的인 解決은 :

- ㉠ 電氣裝置와 照明
- ㉡ 給排水, 에어컨디셔닝, 난방 및 排氣
- ㉢ 방음 (acoustics)

3) 마감재료 (finish materials) :

- ㉠ 油性에인트질, 벽지 붙이기와 화장승板 붙이기
- ㉡ 羊毛로 잔 웅단, 아스팔트·타일과 베라조板 (terrazzo)
- ㉢ 防音用 플라스틱, 아크릴板과 銅製그릴

4) 家具, 裝飾品과 액세서리 :

- ㉠ 초현대적인 형태의 소파 (sofa) 骨董品 탁자와 과도기적 형태의 장농
- ㉡ 깔개, 덮개나 침대커버
- ㉢ 그림 (繪畵 또는 寫眞), 花草나 재털이

5) 平面 (plan) :

- ㉠ 室內空間의 物理的인 레이아웃
- ㉡ 室內建築 要素의 로케이션 (location)
- ㉢ 이동식家具, 장식품이나 액세서리의 로케이션

b) 2, 3次空間 :

- ㉠ 그림 (繪畵)이 갖는 視覺效果
- ㉡ 짙은色天井이 빛어 내는 心理的 效果
- ㉢ 한 방 (室)의 전체 內面積

7) 스케일 (scale) :

- ㉠ 窓과 벽면크기 비교의 상호관

계

㉠ 室內空間과 居住人間の 크기 比較의 상호관계

㉡ 室內에 있는 소파와 家具의 균형과의 비례관계

8) 比例 (proportion) :

㉠ 窓門의 幅과 高의 視覺的 상호관계

㉡ 짙은色이 강조된 壁과 실내의 전체적인 色의 균형과의 시각적 상호관계

㉢ 새家具와 부서진 결상다리의 시각적 상호관계

9) 形態 (form) :

- ㉠ 노출된 天井보의 프로필
- ㉡ 浮彫된 타일壁의 프로필
- ㉢ 라운지체어 (lounge chair)의 프로필

10) 볼륨 (volume) :

- ㉠ 바닥에서 천정, 벽과 벽간의 전체 室內空間
- ㉡ 거울벽 (mirror wall)에 얼비친 室의 反射效果
- ㉢ 멋대로 세워는 一團의 룸 디바이더 (room divider)

11) 面 (plane) :

- ㉠ 달아 매어 멋대로 매달린 天井
- ㉡ 강렬하게 塗色된 벽
- ㉢ 커다란 대리석테이블의 天板

12) 線 (line)

- ㉠ 제단실의 난간
- ㉡ 비닐무늬 판자벽의 모울딩 (moulding)
- ㉢ 테이블의 가장자리

13) 紋樣 (pattern)

- ㉠ 천 (織物) 위에 印畵된 것.
- ㉡ 화사하게 핀 花草가 떨어뜨린 벽위의 그림자
- ㉢ 세라믹·타일壁의 變調 (modulation)

14) 表面質感 (texture) :

- ㉠ 노출시킨 콘크리트 블럭壁의 表面
- ㉡ 느슨하게 짜여진 毛織布
- ㉢ 유리 칸 테이블의 触感

15) 色彩 (color) :

- ㉠ 赤色, 오린지色, 黃色, 綠色, 靑色, 보라색, 白色, 黑色 : 單色을 쓰거나 혼합해서 쓴다 : 순수한 형식이거나 濃淡, 色調 혹은 中和된 색으로 쓴다.
- ㉡ 다양한 綠色톤의 單色計劃 : 赤

色과 靑色의 補色計劃 : 오린지色, 綠色, 자색의 三色配列 : 赤色, 오린지色, 黃色의 類似色計劃 등

㉢ 연한 베이지色的 사용은 보수적이고 : 자주색과 검정색의 사용은 드라마틱하며 : 赤色과 오린지色的 사용은 온화함을 주며 : 靑色과 綠色의 사용은 차차움을 느끼게 하고 : 黑色과 白色은 대담하고 뚜렷함을 주는 반면 白色調의 사용은 온화함을 느끼게 한다.

16) 對比 (contrast) :

- ㉠ 거친 콘크리트壁에 말끔하게 닦여진 유리窓門
- ㉡ 짙은色의 「로즈우드」 (rosewood) 마루에 깔린 自然纖維로 잔 밝은색 웅단
- ㉢ 鐵骨과 유리로 지어진 초현대식 건물내부의 骨董家具

17) 統一 (unity) :

- ㉠ 건물전체의 窓門이 同一形으로 된 것.
- ㉡ 건물의 外壁材料가 室內에서도 반복된 것.
- ㉢ 모든 家具가 固定된 室內環境

18) 變化 (variety) :

- ㉠ 한 室內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개의 相異한 天井高
- ㉡ 同一環境 속에서 자기 다른 樣式家具와 傳統家具가 혼재하는 상태
- ㉢ 한 집에서 各房마다 다른 色이 칠해진 상태

19) 強調 (emphasis) :

- ㉠ 室中心이 되는 座席에 낮게 늘어 뜨린 天井
- ㉡ 명량한 실내공간에 있는 음침한 色의 창고壁
- ㉢ 玄關홀 壁에 달린 액센트 라이트

20) 리듬 (rhythm) :

- ㉠ 室內環境을 구성하는 유사한 建築詳細의 반복
- ㉡ 強調色 (accent color)의 配分計劃
- ㉢ 金屬이나 유리로 된 「커튼월」 (curtain wall)에서 멀리온 (mullion)이 주는 視覺效果

21) 均齊 (balance) :

- ㉠ 室의 각 끝부분에 선 板壁
- ㉡ 壁爐 (fire place) 앞에 놓인 한개의 소파와 두개의 椅子
- ㉢ 벽 兩端에 있는 동일한 窓門

## 會員設計作品

### 부산시민도서관

崔行雄 - 공간건축연구소

### PUSAN CITIZENS LIBRARY

Choi, Haeng Woong-Gong Gan Architects & Engineers

### 제일은행 청주지점

金基雄 · 朴英建 - 건축설계연구소 삼성

### THE CHEONG JU BRANCH OF KOREA FIRST BANK

Kim, Kee Woung · Park, Yeong Keon -  
Sam Jung Architects & Engineers

### 성암야영장

洪鍾植 - 미진 · 신진건축설계사무소

### SUNG AM CAMP

Hong, Jong Sik · Mi Jin · Shin Jin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ion

### 한일은행 본점

尹承重 · 卞 鎔 - 원도시건축연구소

### HEAD OFFICE OF THE HANIL BANK

Yoon, Seung Joong · Byeon, Yong-Archiban Group

###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吳雄錫 - 신조건축연구소

### EMBASSY OF MALAYSIA BUILDING COMPLEX IN SEOUL KOREA

Oh, Woong Suck-Shin Jo Architects & Engineers

### 동광빌딩

朴智遠 · 李外龍 - 유니온건축연구소

### DONG KWANG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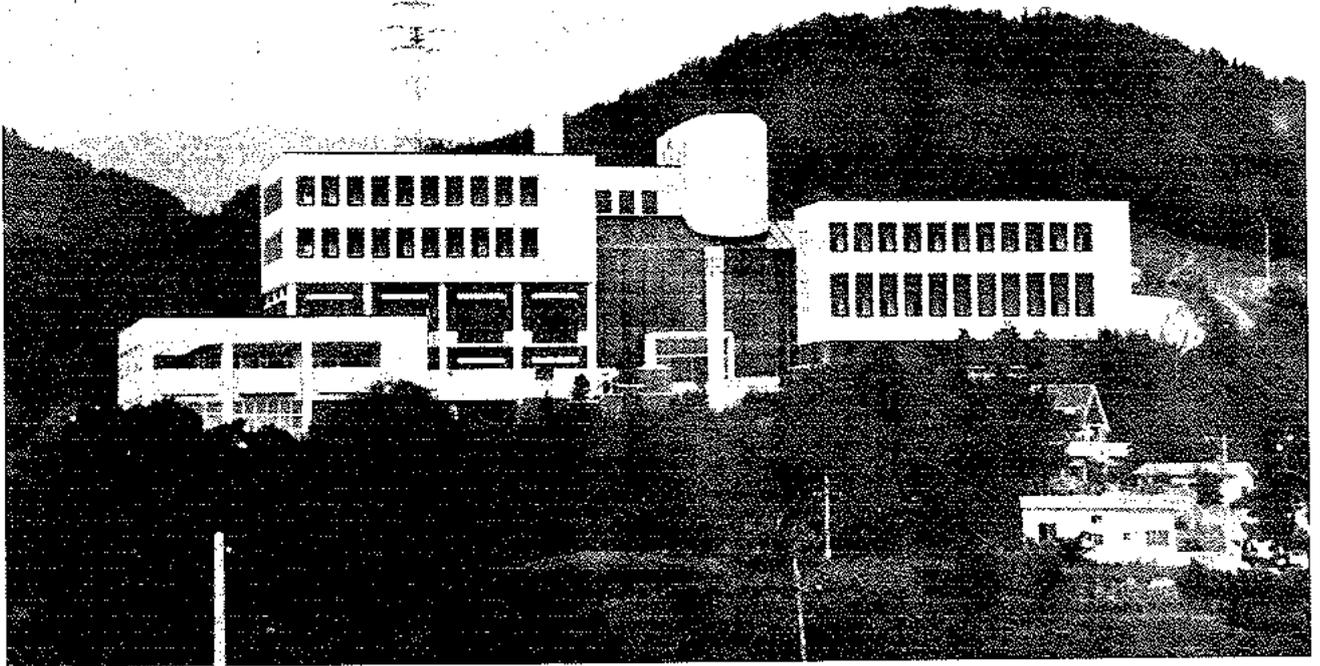
Park, Joe Won · Lee, Wae Ryong-Union Architects & Engineers

# 부산 시민도서관

崔 行 雄 — 공간건축연구소 / 건축사

## PUSAN CITIZENS LIBRARY

Choi, Haeng Woong — Gong Gan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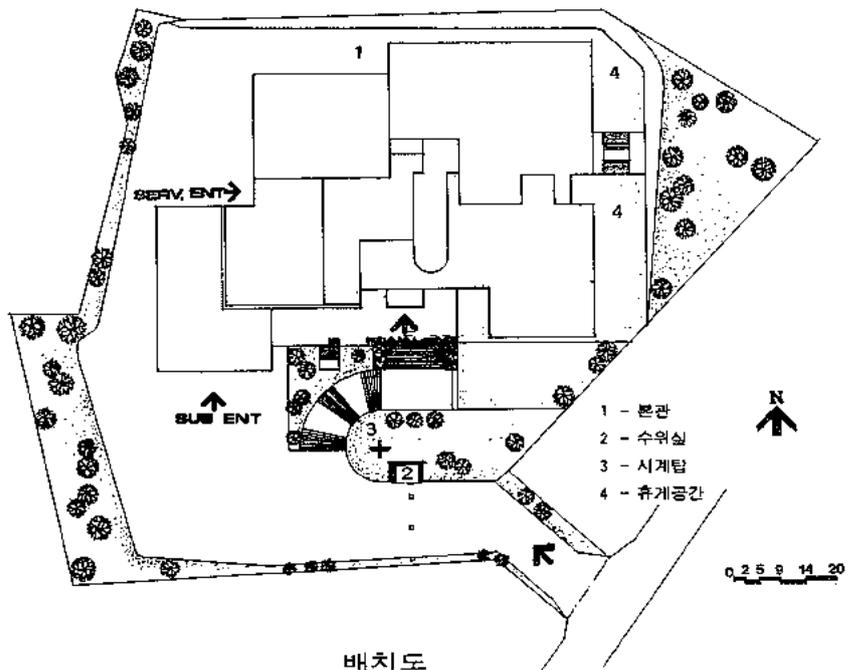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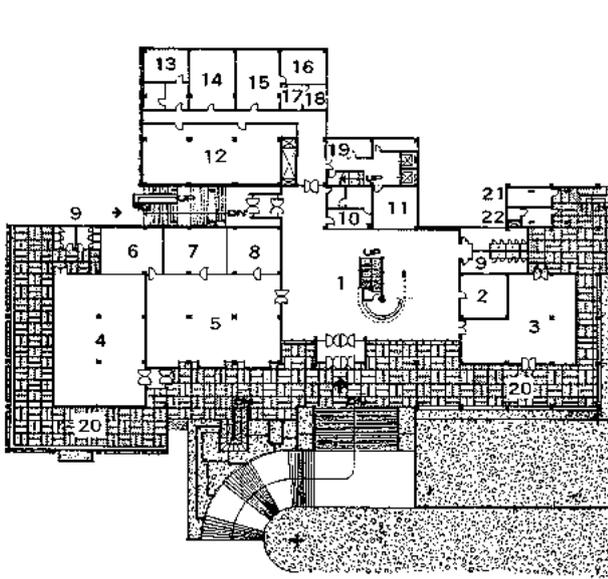
### ◆ 設計概要

본 건물은 부산시내의 도서관 이용 인구에 비해 절대 부족한 도서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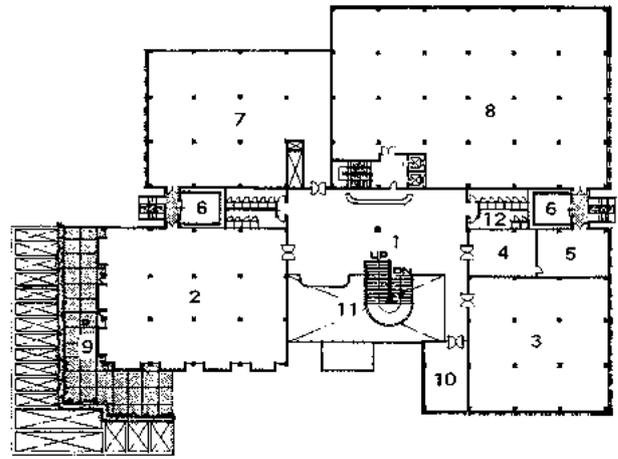
계획의 주안점은 도서관의 기본기능인 수입·정리·열람·대출·참고부분을 블록별로 구분하여 코어 시스템으로 정리하였고 구조계획은 모듈과 플랜닝으로 처리하여 공간이용에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대지는 성지공공원의 울창한 숲이 연해 있는 산 언저리에 위치하여 있어 주위환경과 건축공간과의 융화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주계단이 있는 현관홀의 일부를 3층까지 오픈시키고, 이 부분의 전면 및 지붕을 울그라스로 처리함으로써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입을 통한 자연과의 친화를 표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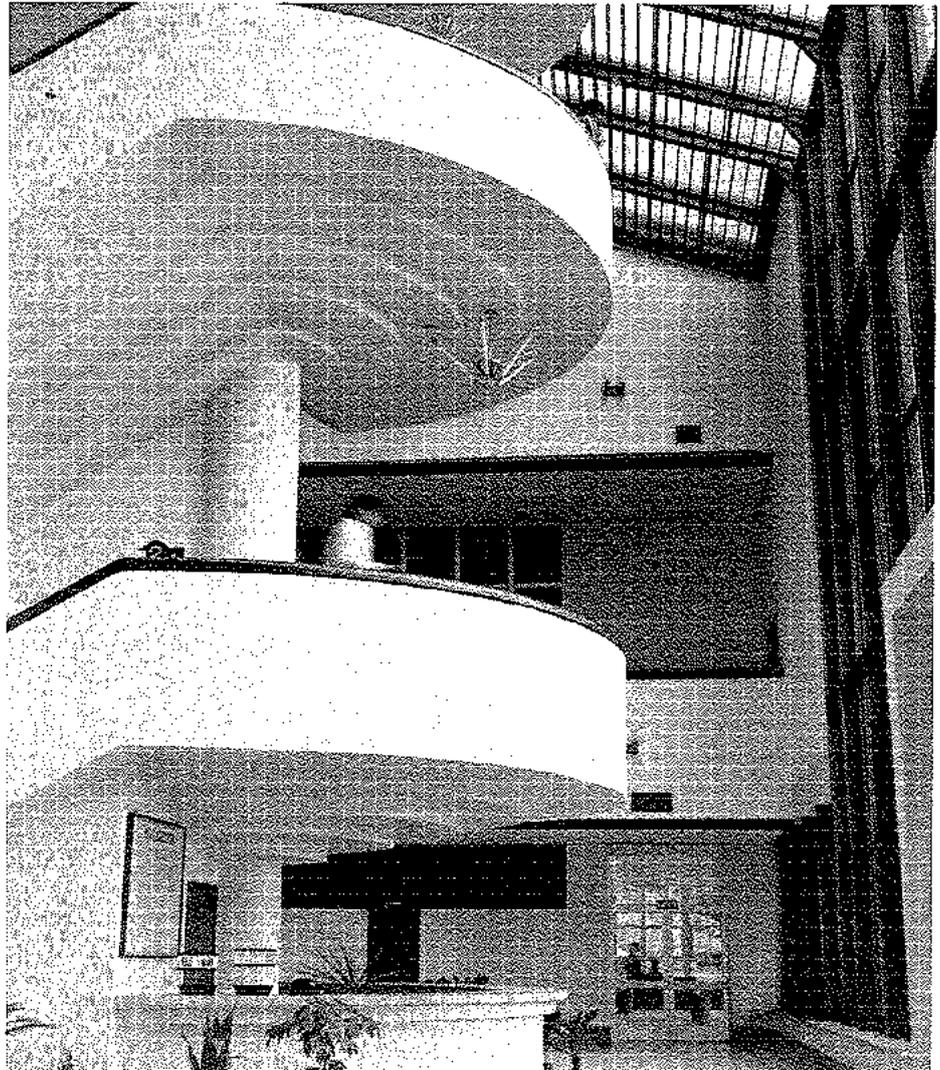


1층평면도



2, 3층평면도

소재지 : 부산직할시 초읍동 산51  
 대지면적 : 12, 621㎡  
 건축면적 : 3, 929㎡  
 연면적 : 12, 535㎡  
 규모 : 지하 1층 ·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1층평면도

- |               |            |
|---------------|------------|
| 1 - 현관홀       | 12 - 사서과   |
| 2 - 울퉁보관소     | 13 - 관장실   |
| 3 - 휴식실       | 14 - 회의실   |
| 4 - 문자열람실     | 15 - 사무과   |
| 5 - 정간열람실     | 16 - 창고    |
| 6 - 향토자료실     | 17 - 복사실   |
| 7 - 정기간행물자료실  | 18 - 촬영실   |
| 8 - 정기간행물자료실  | 19 - 사위실   |
| 9 - 화장실       | 20 - 휴게데크  |
| 10 - 교활실      | 21 - 창고    |
| 11 - 목공제품및인쇄실 | 22 - 진개처리장 |

• 2, 3층평면도

- |                        |
|------------------------|
| 1 - 홀                  |
| 2 - 여중열람실 (3층 : 남중열람실) |
| 3 - 창고열람실 (성인남자열람실)    |
| 4 - 아동문고               |
| 5 - 고서실                |
| 6 - 기계실                |
| 7 - 여고열람실              |
| 8 - 서고                 |
| 9 - 옥상휴게데크             |
| 10 - 열람과               |
| 11 - 현관출상부             |
| 12 - 화장실               |

# 제일은행 청주지점

金基雄 · 朴英建 - 건축설계연구소 삼정 / 건축사

THE CHEONG JU BRANCH OF KOREA FIRST BANK

Kim, Kee Woung · Park, Yeong Keon

Sam Jung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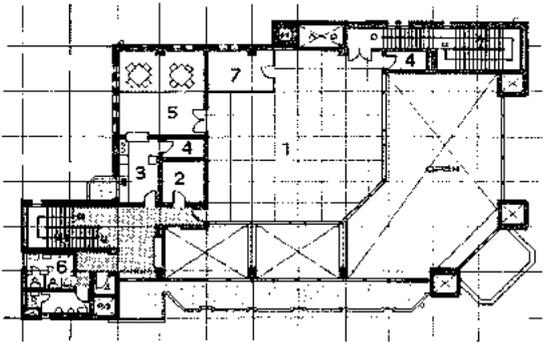
소재지 : 충북 청주시 북문로 1가  
 대지면적 : 1,145.44㎡  
 건축면적 : 570.87㎡  
 연면적 : 1,876.66㎡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재료 : 외장타일

Commercial Bank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많이 달라지고 있다. 銀行傳來의 보수성과 고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상업성이 서로 상충되면서도 점차 상업성 쪽으로 기울어 좀더 밝고 경쾌한 느낌, 그리고 소박함을 주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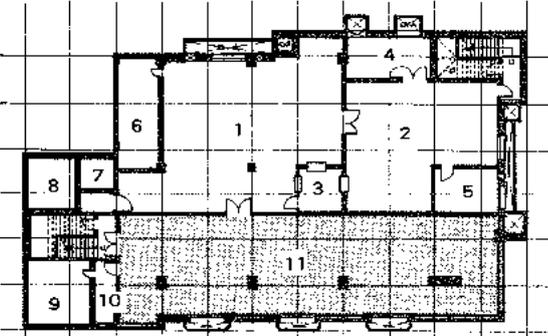
이 점포는 이러한 추세에 복합되는 건물은 아니다. 우리의 의도는 건물의 품위를 살려주는 동시에, 건물로

진입할 때 심리적 위압감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내부에서도 영업장의 분위기가 좀더 Personality를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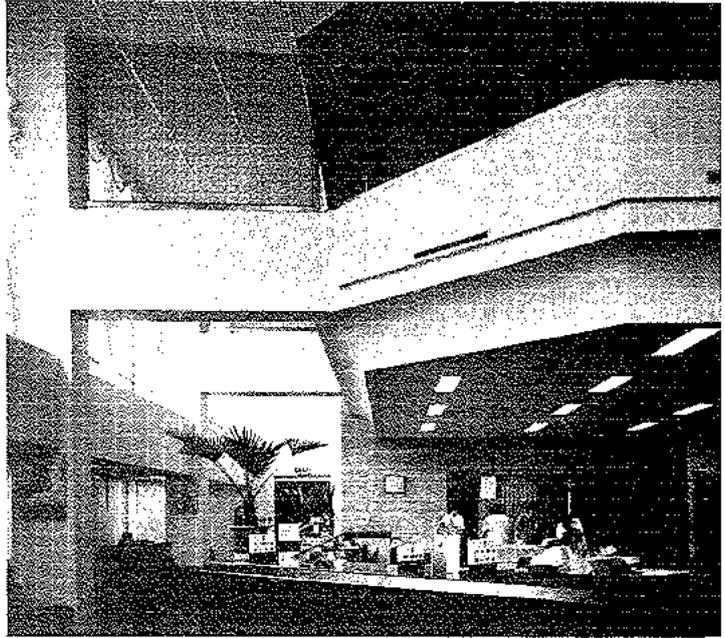
그래서 건물 전면에 낮은 담장이 둘러쳐진 자그마한 정원을 두어 본체를 살며시 가리려 하였고, 건물의 좌측 창면은 유리로서 변화있는 Mass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去頭截尾가 된 입장에서 이 건물은 강한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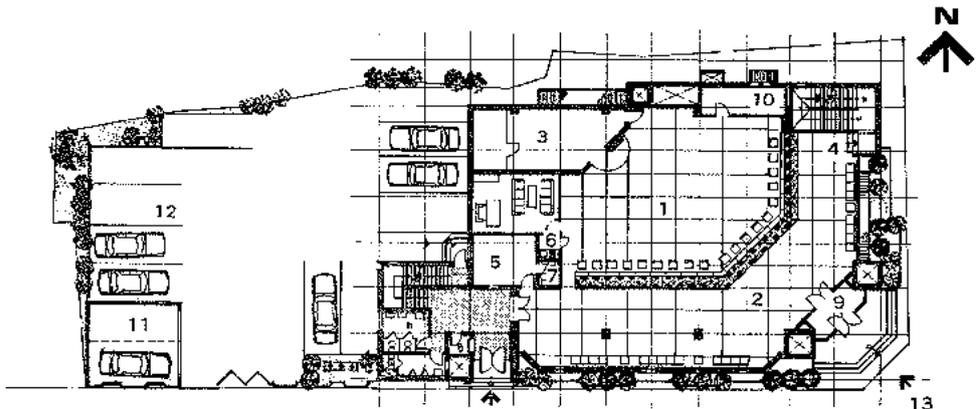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 배치도 및 1층평면도

- 1 - 영업장
- 2 - 객장
- 3 - 금고
- 4 - 지점장실
- 5 - 숙직실
- 6 - 탕비실
- 7 - 화장실
- 8 - 수위실
- 9 - 방충실
- 10 - 온라인실
- 11 - 차고
- 12 - 주차장
- 13 - 주출입구
- 14 - 시간의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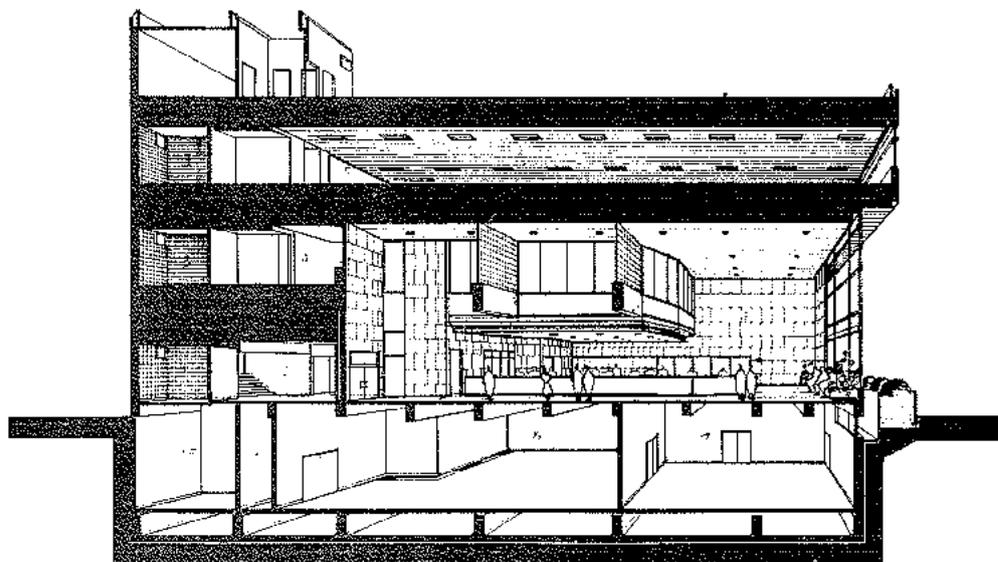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 2층평면도

- 1 - 디홀도심
- 2 - 강의실
- 3 - 주방
- 4 - 창고
- 5 - 식당
- 6 - 화장실
- 7 - 교환실

· 지하층평면도

- 1 - 기계실
- 2 - 전기실
- 3 - 중앙감시실
- 4 - 발전기실
- 5 - 뱃데리실
- 6 - 물탱크
- 7, 8 - 기동탱크
- 9 - 피트
- 10 - 창고
- 11 - 대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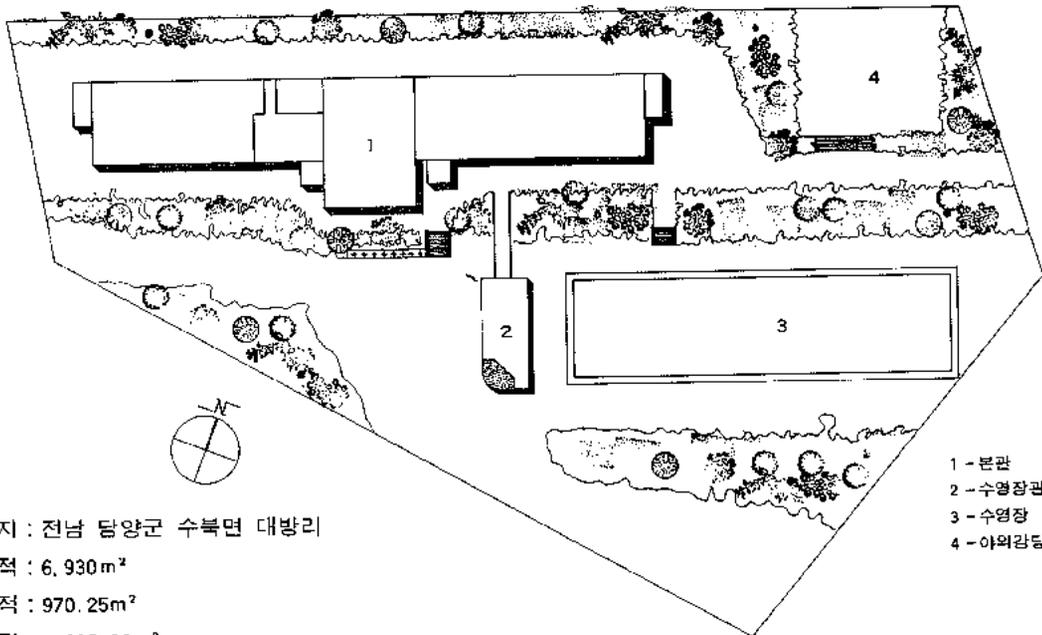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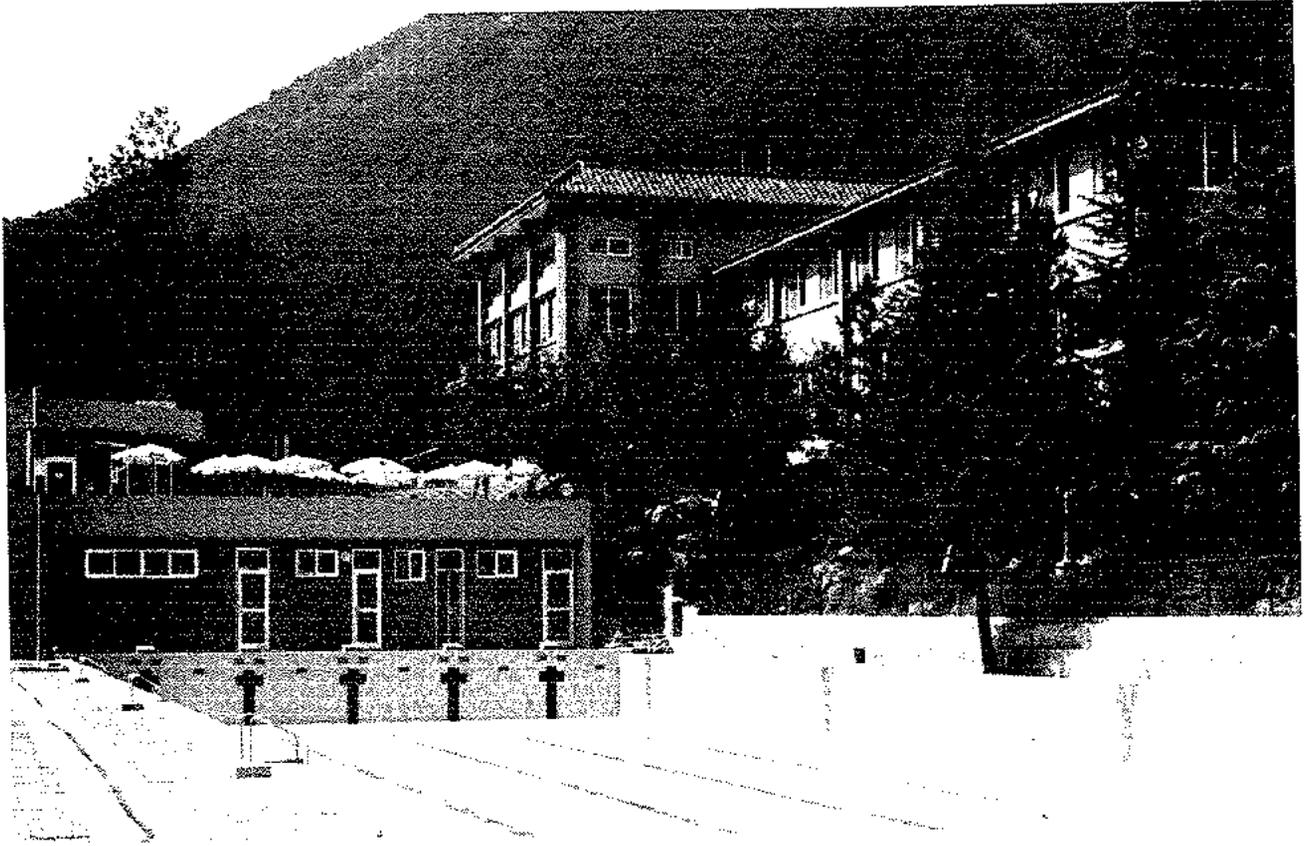


# 성암 야영장

洪 鍾 植 - 미진·신진건축설계사무소 / 건축사

## SUNG AM CAMP

Hong, Jong Sik - Mi Jin·Shin Jin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ion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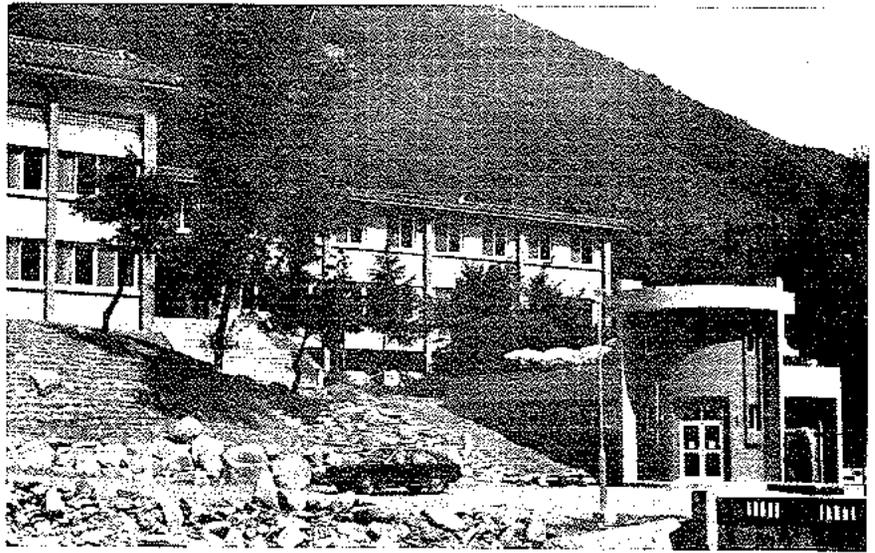
소재지 : 전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대지면적 : 6,930m<sup>2</sup>  
 건축면적 : 970.25m<sup>2</sup>  
 연면적 : 1,905.80m<sup>2</sup>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1 - 본관
- 2 - 수영장관리실
- 3 - 수영장
- 4 - 야외강당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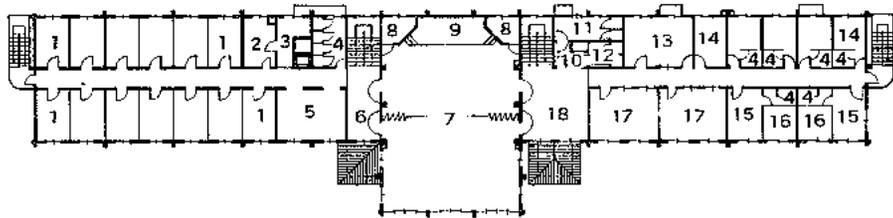
◆ 設計概要

인격형성기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창의적 자기개발의 다양한 생활경험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아영상의 기본목표이다. 따라서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대방리 병풍산 주위 500정도의 넓은 분지에 본 성암 아영장을 건립하였다. 또한 담양의 죽물박물관, 광주의 국립박물관을 포함한 모든 문화재가 단일 동산코스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구상하여 보았다.



●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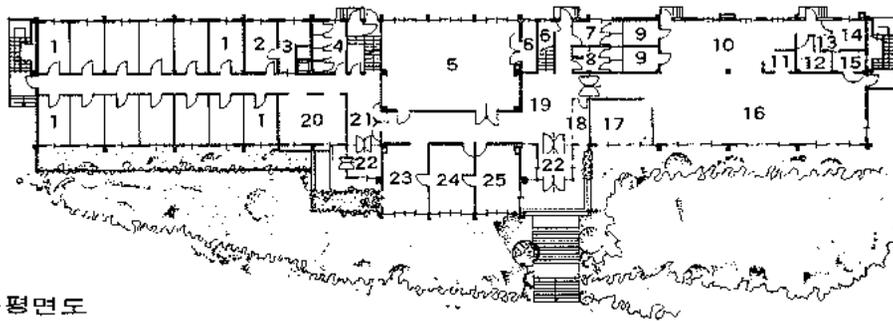
- 1 - 합숙실
- 2 - 세면실
- 3 - 샤워실
- 4 - 화장실
- 5 - 소강당
- 6 - 창고
- 7, 8 - 화장실
- 9 - 냉동실
- 10 - 요리실
- 11 - 식기창고
- 12 - 식품창고
- 13 - 화장실
- 14 - 관리인방
- 15 - 창고
- 16 - 식당
- 17 - 응접실
- 18 - 매점
- 19 - 로비
- 20 - 도서 및 자료실
- 21 - 홀
- 22 - 현관
- 23 - 방송실
- 24 - 사무실
- 25 - 원장사무실



2층평면도

● 2층평면도

- 1 - 합숙실
- 2 - 세면실
- 3 - 샤워실
- 4 - 연소
- 5 - 도서 및 자료실
- 6 - 로비
- 7 - 대강당
- 8 - 창고
- 9 - 연단
- 10 - 전실
- 11, 12 - 화장실
- 13 - 소회의실
- 14 - 교환숙소
- 15 - 응접실
- 16 - 침실
- 17 - 소회의실
- 18 - 2층출



1층평면도



정면도

# 한일은행본점

尹 承 重 · 卞 鎔 — 원도시건축연구소 / 건축사

## HEAD OFFICE OF THE HANIL BANK

Yoon, Seung Joong · Byeon, Yong - Archiban Group / Architect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대지면적 : 4,351㎡ (본점)

건축면적 : 2,420㎡

연면적 : 43,183㎡

규모 : 지하 3층 · 지상 2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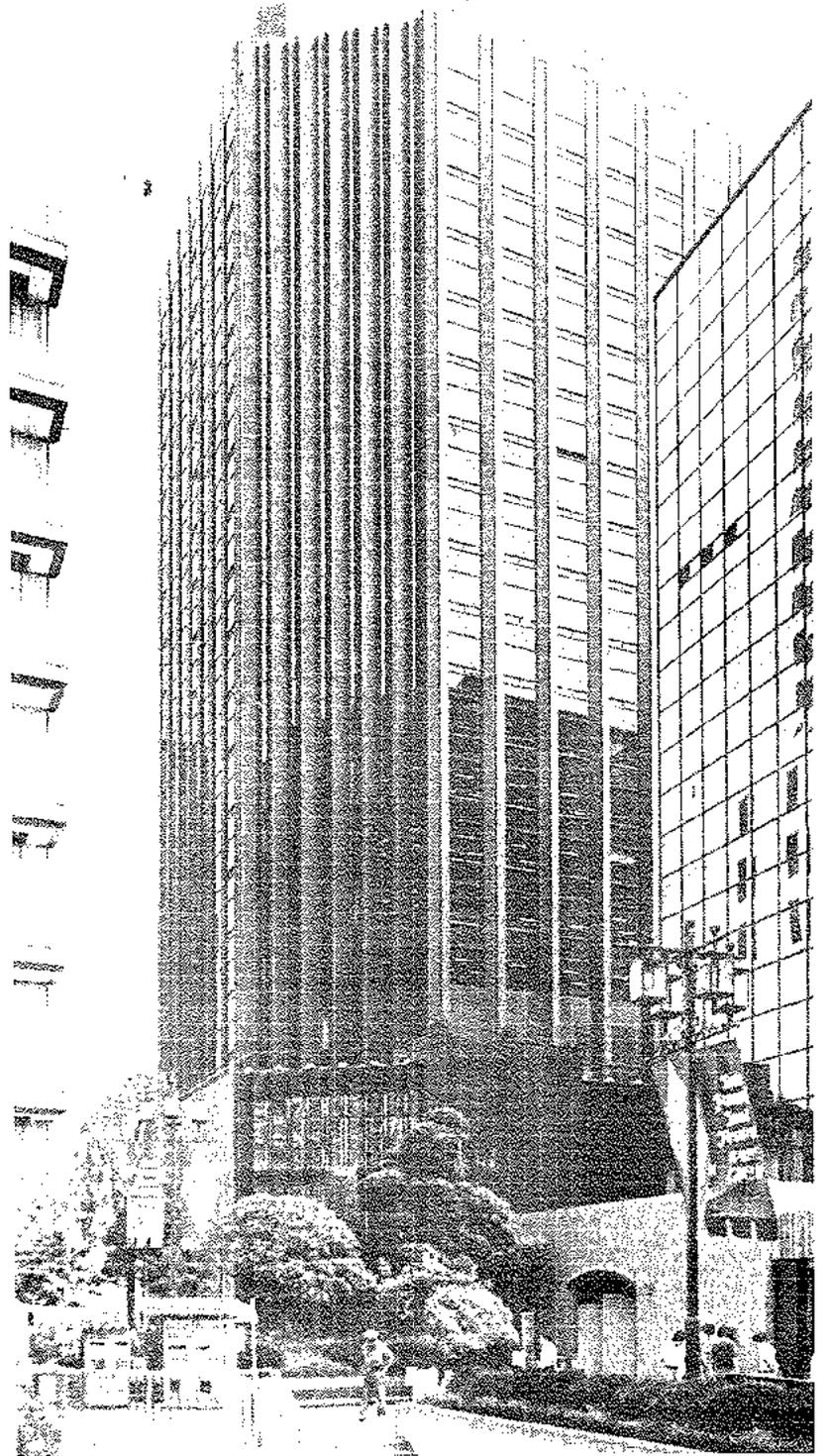
구조 :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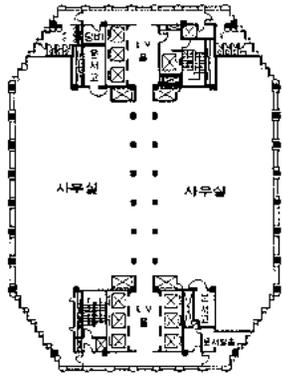
### ◆ 設計概要

서울 심장부의 한 부분을 새로 채워 넣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풍경을 연출해 내야 하는 책임감이 요구되는 장소였다. 단순하게 시중은행의 본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명동 입구에서 있어 시민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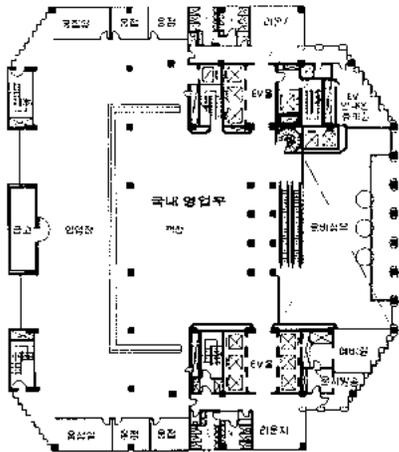
은행이 필요로 하는 볼륨에 비해서 훨씬 못미치는 토지의 크기를 더 확보하려는 은행측의 노력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집의 크기에 상응하는 오픈 스페이스와 유통 스페이스는 만족할 만큼 갖추지 못한 채 거의 보수풀이와 같은 노력만 강요된 셈이다.

일반용과 직원전용의 두개의 수직 코어를 갖는 평면형식과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요구되는 1층 전면의 영업장을 에스컬레이터에 의해서 2·3·4층으로 끌어 올린 것, 그리고 설비 시스템을 구조체와 중복시키지 않음으로써 층고를 3.6미터로 해결한 것 등이 계획의 요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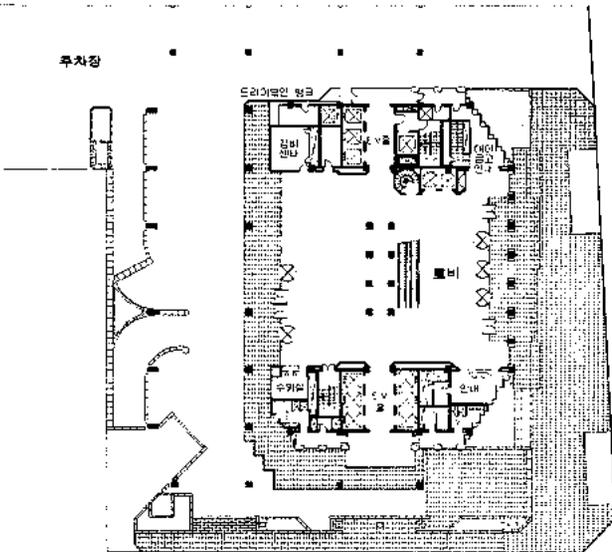




기층층평면도



2층층평면도



배치도 및 1층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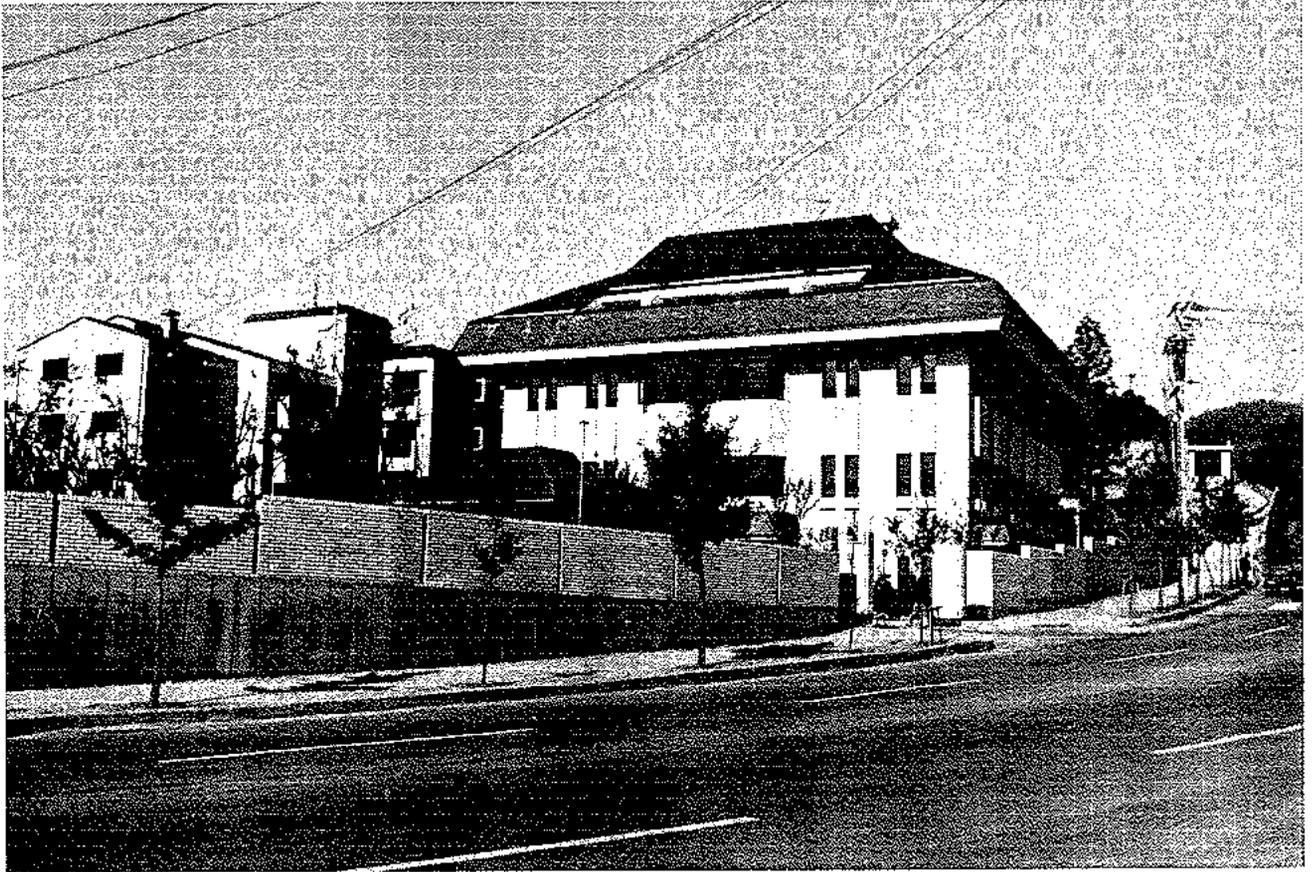
#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吳雄錫 - 신조건축연구소 / 건축사



## EMBASSY OF MALAYSIA BUILDING COMPLEX IN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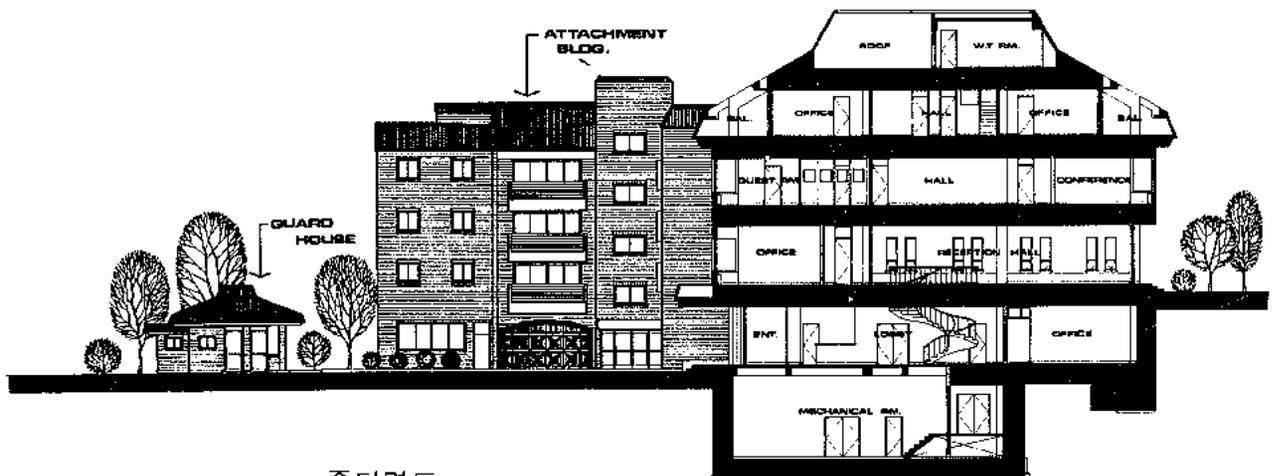
Oh, Woong Suck - Shin Jo Architects & Engineers/Architect



소재지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지면적 : 3,014.21㎡  
 건축면적 : 902.75㎡  
 연면적 : 3,504.62㎡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 設計概要

말레이시아의 傳統建築樣式을 살려 주위환경에 조화시키고 대사관으로서 위엄있는 형태가 되도록 설계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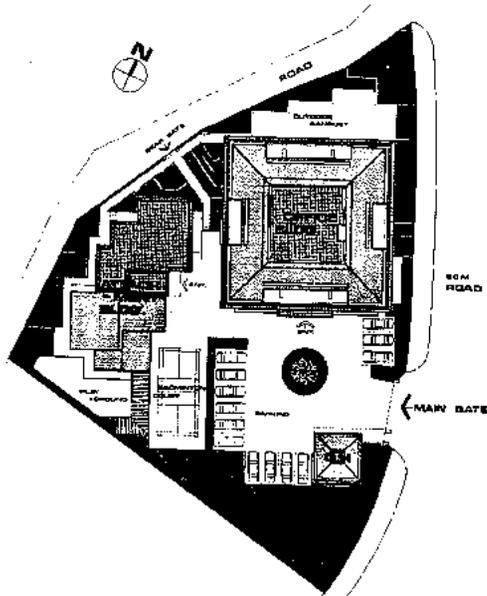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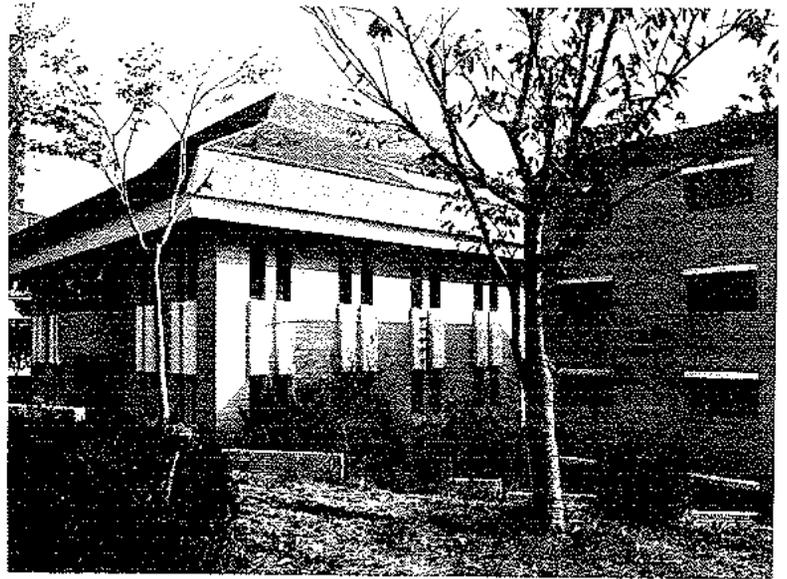
주 단면도

●부속건물

- 1-현관
- 2-거실
- 3-식당
- 4-대사청실
- 5-침실
- 6-주방
- 7-Utility
- 8-화장실
- 9-창고
- 10-휴게실
- 11-Garden Lounge
- 12-차고
- 13-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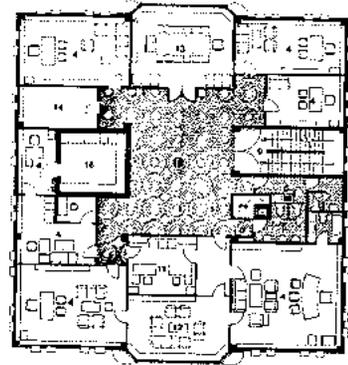
●사무실건물

- 1-현관
- 2-로비
- 3-대기실
- 4-사무실
- 5-화장실
- 6-Reception Hall
- 7-Pantry
- 8-도서실
- 9-계단실
- 10-홀
- 11-Personal Assistant
- 12-내빈실
- 13-회의실
- 14-기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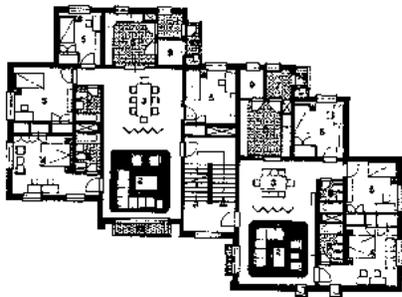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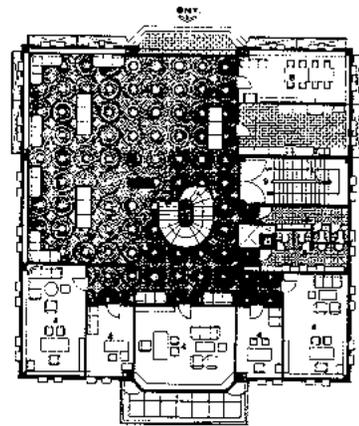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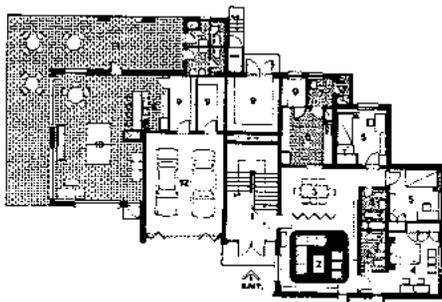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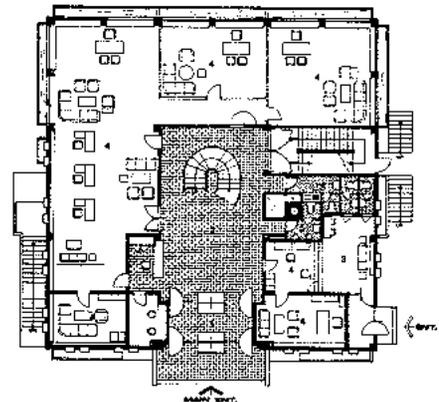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1층평면도



# 동 광 빌딩

朴 智 遠 · 李 外 龍 — 유니온건축연구소 / 건축사

## DONG KWANG BUILDING

Park, Jee Won · Lee, Wae Ryong  
Union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소재지 : 부산직할시 남구 대연동  
대지면적 : 334.95㎡  
건축면적 : 245.09㎡  
연면적 : 994㎡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設計概要

부산을 찾은 사람들이 해운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서있는 도로변을 지나야 한다. 따라서 건물 전면에 공간을 확보하여 건물이 주는 답답함을 피해 보았다.

내부공간은 상업용의 합리적인 용도가 가능하도록 기둥을 두지 않았으며 외장은 스테인리스 새시와 밝은색의 외장 자기질 타일로 마감하여 단순하면서도 변화있는 전면을 만들어 보았다.



#### •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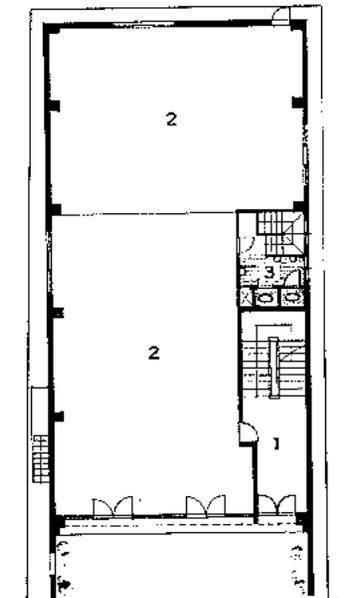
- 1 - 홀
- 2 - 음식점
- 3 - 화장실

#### •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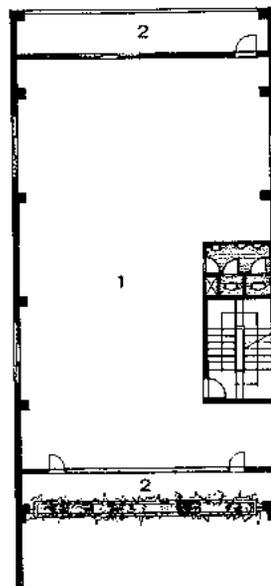
- 1 - 랑스크림
- 2 - 발코니

#### •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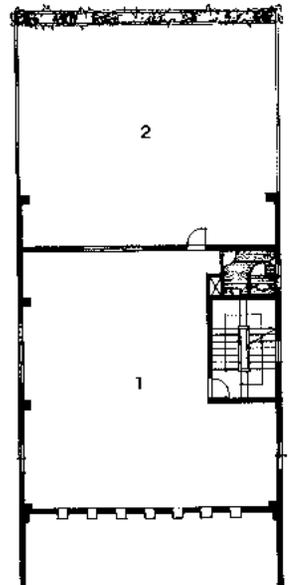
- 1 - 사무실
- 2 - 베란다



배치도 및 1층평면도



3층평면도



4층평면도

# 에너지節約的 建築設計를 위한 考察

朴 相 東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본회 에너지분과 위원)

## STUDY ON BUILDING DESIGN FOR ENERGY CONSERVATION

Park, Sang Dong - Korea Institute of Energy & Resources

建築은 建築家의 사상이나 정신의 표현으로 建築計劃은 여러가지로 接近(APPROACH) 할 수 있다. 즉

- (1) 理念의 定立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 (2) 外觀形態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 (3) 施工性이나 生産性を 중요시하여 이의 分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 (4) 實用性이나 利用效率을 높이는 데 그 價値判斷의 기준을 두는 것 등이다.

이러한 建築은 원래 自然과 人間要素에 기인한 綜合技術을 가지고 만들어진 藝術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環境危機가 論議되어 옴에 따라 建築은 生態系(ECO-LOGY)에 따라서 계획·설계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마디로 建築計劃은 自然을 遮斷하고, 自然을 이용하고 自然과 조화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建築이야말로 현대 建築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節約에도 무리가 없는 建築이 될 것이다.

石油危機 이후 에너지節約이라는 말이 생겨나서 건축분야에서도 意圖的인 에너지節約型 建물이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 9월 5일자로 시행된 建築法施行規則 제25조에서 “建築物의 熱損失防止를 위한 措置”로서 一定두께 이상의 斷熱材 사용을 規定한 것을 비롯하여 1980년 12월 22일에는 建築法施行規則 中 改正令을 建設部令 제279호로 발표하고 1981년 1월

1일부터 建物新築時 시행토록 하였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空氣調和·冷凍工學 第11권 제1호 PP25~41”에 筆者가 소개한 “에너지節約을 위한 建築計劃”을 根幹으로 하여 建築關聯人들의 에너지節約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國內 斷熱材에 관한 몇가지 정보를 게재하였다.

### 1. 에너지節約의 考察

에너지節約(Energy Conservation, 省エネルギー)을 考慮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어떠한 形態의 에너지를 어떻게 利用하는가.
- (2) 類似條件에 의해 對象建物の 消費實態를 把握, 豫測하는 것.
- (3) 에너지節約 대책에 의한 節約量과 初期投資額의 비교
- (4) 設備器機 또는 건물 등의 耐用年數, Cost, 즉 Life-Cycle Cost 등 전체적으로 벨런스가 취해진 건물일 것.

일반적으로 건물의 에너지節約을 계획한다는 것은 그 對象建物の 空間을 設定條件에 합치시킨 環境狀態를 갖기 위한 所要에너지 量을 費用效果의 점에서 最適인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 러기 위하여서는 그 곳에 가해진 熱負荷를 輕減하고 최소의 運轉에너지로 目的空間을 요구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화하는 방법에는 人別해서 건축적인 방법에 의한 에너지節約化와 설비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있다. 건축적인 에너지節約化는 주로 다음 要素에 영향을 받는다.

- ① 建物形狀
- ② 表面性狀(體積과 表面積의 比率 등)
- ③ 建物の 方位
- ④ 開口率(窓, 門 등)
- ⑤ 日射
- ⑥ 斷熱

또한 설비적인 요소로서는 주로 下記에 의한 것이 있다.

- ① 設備의 시스템 效率
- ② 器機效率
- ③ 制御
- ④ 自然 및 排에너지 利用
- ⑤ 設定條件의 適否

실제로 에너지節約化를 進行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對象建物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며 또한 에너지節約이라는 것은 前記한 많은 各要素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細分化해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所要에너지 量을 推測하고 효과적인 에너지節約 方案을 이 細目表인 체크리스트(Check List)에 의해서 抽出하여 검토하고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에너지節約을 위한 各要素, 要點의 細目表(Check List)를 表 1에 게재한다. 이것은 前記한 건축적인 것과 설비적인 것으로 大分類하고 이것을 다시 中項目, 小項目으로 분류하고 있다.

表-1 에너지節約 체크리스트

에너지節約項目			計劃	設計	施工	保守管理	備考
分類	項目	要素					
建	地形(自然)의特徵이나周圍의構造物的條件	• 建物周圍의 熱環境條件 - 日影, 日射, 風, 日射反射物등을 충분히 把握하고 計劃에 反映시킨다.	○	○			
	屋外環境의 熱的計劃	• 植栽의 效果的 利用 - 樹木에 의해 日影을 만든다. - 樹木에 의해 바람을 防止(특히 겨울防風壁) • 池, 噴水등에 의해 周圍의 溫度를 내린다. • 反射率이 큰 鋪裝道路를 줄이고 흙, 잔디, 樹木 등으로 한다.	○	○			
	建物形狀	• 延床面積과 外表面積 - 要求에 대한  최소의 容積으로 한다. • 平面形狀 - 어스펙트比 - 容積에 대해  최소의 表面積으로 한다. • 층수·높이 - 층고, 천장고	○	○			
	外壁方位	• 熱的으로 有利한 方位 • 方位에 適合한 計劃 - 같은 平面形狀이면 東西軸이 有利 - 主開口壁面을 南으로 한다.	○	○			
	平面, 斷面計劃에 있어서 空間의 熱的 zoning	• 空調·非空調間의 區別과 配置 - 非空調空間, 非居住空間을 外壁側に 配置한다. (double side core) - 最上層에 機械室등을 配置한다. • 要求性能(業·聯種)에 의한 空間의 適正配置 - 使用時間帶 - 人員 및 荷物の 수송 -  휴여실의 設置 - 殘業室의 設置 - 內部發熱이 큰 空間의 集기化 및 外壁側 配置에를 들면 高照明密度空間, 高人員密度空間, 高機器發熱空間 • 서비스 에어리어의 熱緩衝帶 利用 • 開口部의 風下側配置	○	○	○	○	

에너지節約項目			計劃	設計	施工	保守管理	備考
分類	項目	要素					
建	지붕의 斷熱性和 蓄熱性	• 斷熱材 - 斷熱材를 넣는다. - 斷熱두께를 두껍게 한다 - 斷熱性 保持를 위해 防濕, 防水를 한다. • 지붕構造 - 二重슬라브 - heat bridge를 만들지 않는다. • 屋上處理 - 흙, 植栽를 행한다. - 물을 뿌린다. (散水) • 日射차폐를 한다. (flying root) • color control • 蓄熱性 - 重構造化 - 外斷熱	○	○			
	外壁의 斷熱性和 蓄熱性	• 斷熱材 - 斷熱材를 넣는다. - 斷熱두께를 두껍게 한다. 北窗, 窓面積比가 작은 壁面에 특히 有效 - 斷熱性保持를 위해 防濕 防水를 한다. • 壁의 構造 - 空氣層의 利用(密閉層) - 通氣層의 設置 - 斷熱材位置 - heat bridge를 만들지 않는다. • 日射차폐 - 루버등 日射차폐裝置 • 복사열의 低減 - 樹木의 利用 - color control 및 素材 - 通氣層을 設置 - 흙으로 덮는다. • 蓄熱性 - 重構造化 - 外斷熱	○	○			
	窓·出入口의 斷熱性, 氣密性, 通風性, 採光性	• 斷熱性 - 유리의 種類와 構成 - 케 어글라스, 차폐필름, 多重글라스등은, 斷熱문, 커튼, 블라인드 斷熱간막이, 글라스블록, 보통글라스, 複合多重글라스, 熱線吸收글라스, 熱線反射글라스 - 窓面積比를 작게 한다.	○	○			

에너지節約項目			計劃	設計	施工	保守管理	備考
分類	項目	要素					
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日射遮蔽</li> <li>室外-樹木利用, 遮陽, 遮陽壁, 外블라인드, 루버, 발코니</li> <li>室內-블라인드, 커튼</li> <li>-方位</li> <li>主開口壁面을 南으로 한다. 不利한 方位의 글라스面의 角度를 바꾼다.</li> <li>•氣密性</li> <li>-새시等性能(氣密새시)</li> <li>-出入口의 形態</li> <li>防風室, 自動도어, 三重도어, 回轉도어, 도어체크, 에어커튼</li> <li>•通氣性</li> <li>-開放 가능한 窓</li> <li>-通風抵抗이 작은 窓 配置</li> <li>•採光性</li> <li>-反射루버</li> <li>-天窗</li> <li>-천장 가까이 글라스面을 配置한다.</li> <li>-透過率이 높은 글라스를 利用한다.</li> <li>-같은 窓面積이던 窓窓이 有利</li> </ul>	○	○	○	○	居住者에 의한 窓의 開閉
	外壁·內壁의 color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日射의 吸收, 日光, 照明의 反射를 고려한 color로 한다.</li> </ul>	○	○			
	全體計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適切한 zoning에 의한 loss의 防止.</li> <li>-空調, 非空調의 zoning</li> <li>-換氣의 有無, 量등에 의한 zoning</li> <li>-空調時間에 의한 zoning</li> <li>•시스템機器의 高效率運轉指向</li> <li>•室內條件의 程度에 의한 zoning</li> <li>溫濕度, 照明密度, 空氣淨化程度, 人員密度, 使用機器</li> <li>•負荷特性에 의한 zoning</li> <li>-피크時刻, 負荷예覽등의 把握</li> <li>•建物の 壓力Balance</li> <li>-正·負壓의 把握</li> <li>•에너지源</li> <li>-地域性, 負荷特性에서 使用 에너지를 檢討한다. (夏期都市가스等)</li> </ul>	○	○		○	

에너지節約項目			計劃	設計	施工	保守管理	備考
分類	項目	要素					
空	室內環境計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設定溫度, 設定週度</li> <li>-條件의 緩和</li> <li>-溫感指標(ex, ET)의 導入</li> <li>-始業, 終業時 夜間의 條件 緩和</li> <li>-外氣條件에 따른 設定</li> <li>-許容變動幅의 設定</li> <li>•外氣導入量</li> <li>-必要最小量의 導入</li> <li>-外氣冷房의 可能性</li> <li>•照明密度</li> <li>-要求照度의 把握</li> <li>•冷暖房期間, 空調時間</li> <li>-必要性의 再檢計</li> <li>•氣流(溫度)分布</li> <li>-吹出方法, 位置, 디텐位置</li> </ul>	○	○		○	過冷, 過熱의 防止
	시스템, 機器計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混合loss(에너지 loss)가 없는 計劃</li> <li>-perimeter, interior zone의 設定</li> <li>-輻射方式(冷却, 加熱)</li> <li>-吹出形式</li> <li>•負荷特性에 合致한 計劃</li> <li>-冷房 또는 暖房의 정지</li> <li>-熱回收方式</li> <li>•리미트디자인 指向</li> <li>-氣象條件(負荷計算用), 機器, 시스템의 安全率</li> <li>-同時使用率</li> </ul>	○	○		○	
	熱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熱源機器의 高效率運轉</li> <li>-部分負荷에의 對應</li> <li>-台數分割</li> <li>-蓄熱槽 利用</li> <li>-보일러停止時의 드레프트防止</li> <li>-冷水溫度, 冷却水溫度의 設定</li> <li>•排熱, 廢熱回收熱源의 利用</li> <li>-熱源의 把握</li> <li>一般排氣, 變壓器, 電動機, 照明, 燃燒가스, 溫排水</li> <li>•히트리커미리시스템</li> <li>•히트펌프이용</li> <li>•全熱(顯熱)交換器</li> <li>•廢熱보일러</li> <li>•自然에너지 熱源利用</li> <li>-外氣冷房, 夜間空氣淨化(Night purge)</li> </ul>	○	○		○	

에너지節約項目			計劃	設計	施工	保守管理	備考	
分類	項目	要素						
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太陽熱利用</li> <li>• 蓄熱方式採用에 의한 피크컷트, 熱回收機器 高効率運轉</li> <li>- 蓄熱利用</li> <li>- 密閉式, 複槽式, 溫度成層式</li> <li>- 시스템, 機器에의 蓄熱</li> </ul>	○	○		○		
	搬送 및 負荷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搬送로스의 방지</li> <li>- 搬送路路의 斷熱</li> <li>- 에어리크防止</li> <li>- 局部抵抗을 줄인다.</li> <li>• 室內負荷의 低減</li> <li>- 트로피카 · 水冷照明器具</li> <li>- 混合로스의 防止</li> <li>- perimeter 負荷를 리턴側에서 回收한다.</li> <li>天障리턴, 窓면두리리턴</li> <li>• 動力의 輕減</li> <li>- 變風量方式 (VAV)</li> <li>- 變流量方式 (VWV)</li> <li>- 利用溫度差의 擴大</li> <li>- 부스터팬, 쿨크의 採用</li> <li>- 低負荷(메이스負荷) 專用팬, 쿨프의 設置</li> <li>- 덕트길이를 짧게 한다. (直線化)</li> <li>- 에너지源搬送(ex, 가스 클린히터)</li> <li>- 水搬送시스템은 原則的으로 密閉回路</li> <li>- 流速(風速) 低減</li> <li>- 파이프, 덕트 保温性向上</li> </ul>	○	○	○	○	○	配管등의 斷熱工事的 完全化
調	換氣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換氣搬送動力의 低減</li> <li>- 過剩換氣의 回避</li> <li>- 不要時의 換氣停止</li> <li>- 低負荷時의 換氣量 制御</li> <li>- 局部給排氣의 採用</li> <li>- 空調에 의한 大量換氣의 代替(發電室 · 機械室)</li> <li>- 自然換氣의 利用</li> <li>- 空氣清淨器의 採用</li> <li>- 大容量팬의 台數分割</li> <li>• 換氣負荷의 低減</li> <li>- 豫冷, 豫熱時의 外氣取入 停止</li> <li>- 外氣量 制御(人員數, Co, 檢知)</li> <li>- 外氣冷房의 採用</li> <li>- night purge의 採用</li> <li>- 全熱交換器의 採用</li> <li>- 排氣의 機械室, 駐車場에의 利用</li> </ul>	○	○	○	○	○	車庫排氣 등

에너지節約項目			計劃	設計	施工	保守管理	備考	
分類	項目	要素						
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排氣의 冷却塔의 冷却用 空氣로셔의 利用</li> <li>- 最大負荷時에 換氣量을 低減한다.</li> </ul>						
	制御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室內環境制御</li> <li>- 溫度 設定制御(外氣條件 對應型)</li> <li>- 外氣量制御</li> <li>- 照明點被制御</li> <li>• 機器運轉制御</li> <li>- 最適起動停止</li> <li>- 台數制御</li> <li>- 流量(風量) 制御</li> <li>- 接觸運轉制御.</li> <li>- 디맨드制御</li> <li>- preventive maintenance</li> <li>- 피크컷트制御</li> </ul>	○	○		○	○	컴퓨터制御의 採用
調	自然에너지의 利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太陽熱의 利用</li> <li>• 地熱의 利用</li> <li>• 바람의 利用</li> <li>• 흙(溫度, 井水)의 利用</li> </ul>	○	○				
	排, 廢에너지의 利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排氣에서의 熱回收</li> <li>• 廢棄物에서의 熱回收</li> <li>• 排水에서의 熱回收</li> </ul>	○	○				
衛	給排水設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給水의 必要性</li> <li>- 給水管所의 選定</li> <li>• 負荷算定과 設備容量</li> <li>- 精確한 負荷의 把握</li> <li>- 適切한 容量(安全率 · 同時使用率)</li> <li>• 揚水動力의 輕減</li> <li>- 開放, 密閉回路</li> <li>- 부스터方式</li> <li>• 適正水壓의 維持</li> <li>• 機器</li> <li>- 節約型(節水型) 機器, 시스템 檢討</li> <li>- 水控型式, 사이즈의 適正化</li> <li>• 再利用시스템</li> <li>- 可能性, 經濟性, 保守性</li> </ul>	○	○				
	給湯設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必要性의 檢討</li> <li>- 給湯管所의 選定</li> <li>• 給湯條件</li> <li>- 給湯量</li> <li>- 給湯溫度</li> <li>• 給湯시스템</li> <li>- 負荷側에 貯湯槽를 設置</li> </ul>	○	○			○	
生								

에너지節約項目			計劃	設備	施工	保守管理	備考
分類	項目	要素					
		한다. - 專用보일러 - 선프릴方式 - 로컬方式 - 斷熱化 - 太陽熱利用  - 配管經路를 짧게 한다. - 局所加熱方式의檢討 - 重方式 循環方式 • 기타 - 排水熱의 回收利用 廚房排水, 목욕물排水					斷熱施工의 完全化 힘을 적게 한다.
電	全體計劃	• 線路損失을 低減한다. - 電壓降下, 配線損失이 작은 電氣方式의 採用 - 되도록이면 高配電電壓을 檢討한다. - 配線거리를 極力 짧게 한다. • 力率의改善 - 進相콘덴서의 設置와 設置位置(人力側, 負荷側) • 容量, 馬力등의 適正化 - 리미트디자인 - 台數制御 • 制御用 電力의 低減 - ex. 瞬間勵磁式 電磁接觸器	○	○	○	○	配線經路의 簡素化 負荷에 따른 콘덴서의 投入
	受變電設備	• 設置位置 - 引込經路와 負荷位置의 밸런스 • 容量 - 平均負荷率과 變壓器 効率과의 관계 - 台數分割 • 變壓器 回路의 計劃 - 經濟性を 考慮하고 系統區分을 결정 - 無負荷時用的 1次側遮斷回路 • 電壓, 電線의 計劃 - 樹枝狀方式의 採用 - 電壓의 格上 • 群管理	○	○			
氣			○	○			群管理

에너지節約項目			計劃	設計	施工	保守管理	備考
分類	項目	要素					
電		- 台數制御 - 피크커트 - 디먼드制御 • 에너지節約型 機器 - 經濟성과 保守性的의 체크	○	○		○	御의採用
	照明設備	• 照度の 設定 - zoning을 하고 各 zone에 맞는 照度로 한다. • 照明시스템 - 全體照明 - 局部照明 - 直接照明 - 間接照明 - 點滅方式 - 點滅回路의 計劃 • 點滅制御 - 自動點滅制 - 窓가點滅制御 - tablet方式 • 에너지節約型機器 - 節約型 照明器具 - 트로피 - 水冷式 照明器具	○	○	○	○	群管理의 適用 管球의 捨 棄등 種은 保守管理
	昇降設備	• 要求에 맞는 方式과 容量 - 動線計劃과의 對應 台數, 대기時間, 速度, 方式 - 集中配置에 의한 台數低減 -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有機的인 配置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停止操作 • 群管理 및 機器 - 더블덱 엘리베이터 - 運行制御 - 防犯制御 - 非使用時의 照明, 關停止	○	○			群管理의 採用
管 理	建物の運轉管理 시스템	• 室內環境管理 • 機器運轉管理 ○ 에너지管理 • 防災管理 • preventive maintenance	○	○		○	群管理의 採用

註) ○表示는 檢討, 對策의 對象을 나타낸다.

2. 에너지節約計劃 플로우(Flow)  
에너지節約計劃의 推進플로우를 그림 1에 표시한다.  
계획에 임할 때는 주어진 조건에서

건물의 概略基本案이 작성된 단계에 이르면 類似建物로부터 에너지消費實態를 파악하고 에너지節約目標의 概略을 정한다.

다음으로 에너지節約 체크리스트에 의해 項目을 검토·선택하고 그들의 結果를 建築基本案에 반영시키고 또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設備시스템을

검토한다. 그것으로부터 熱負荷를 산출하고 各各의 에너지節約 시스템의 코스트, 運轉, 經常費의 豫測, 기타 그 時点에서의 중요한 항목, 예를 들면 社會的, 國家的 動向, 環境問題,

라이프 싸이클 코스트 등을 고려한 평가를 행해서 효과를 判定한 후에 建築, 設備面과 에너지節約시스템의 整合性을 거쳐서 전체를 정리하고 실시로 移行한다.

附言하면 에너지節約시스템은 建築完成 후의 維持, 管理의 適·不適에 의해 효과가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保守·管理가 쉽고 信賴性이 높은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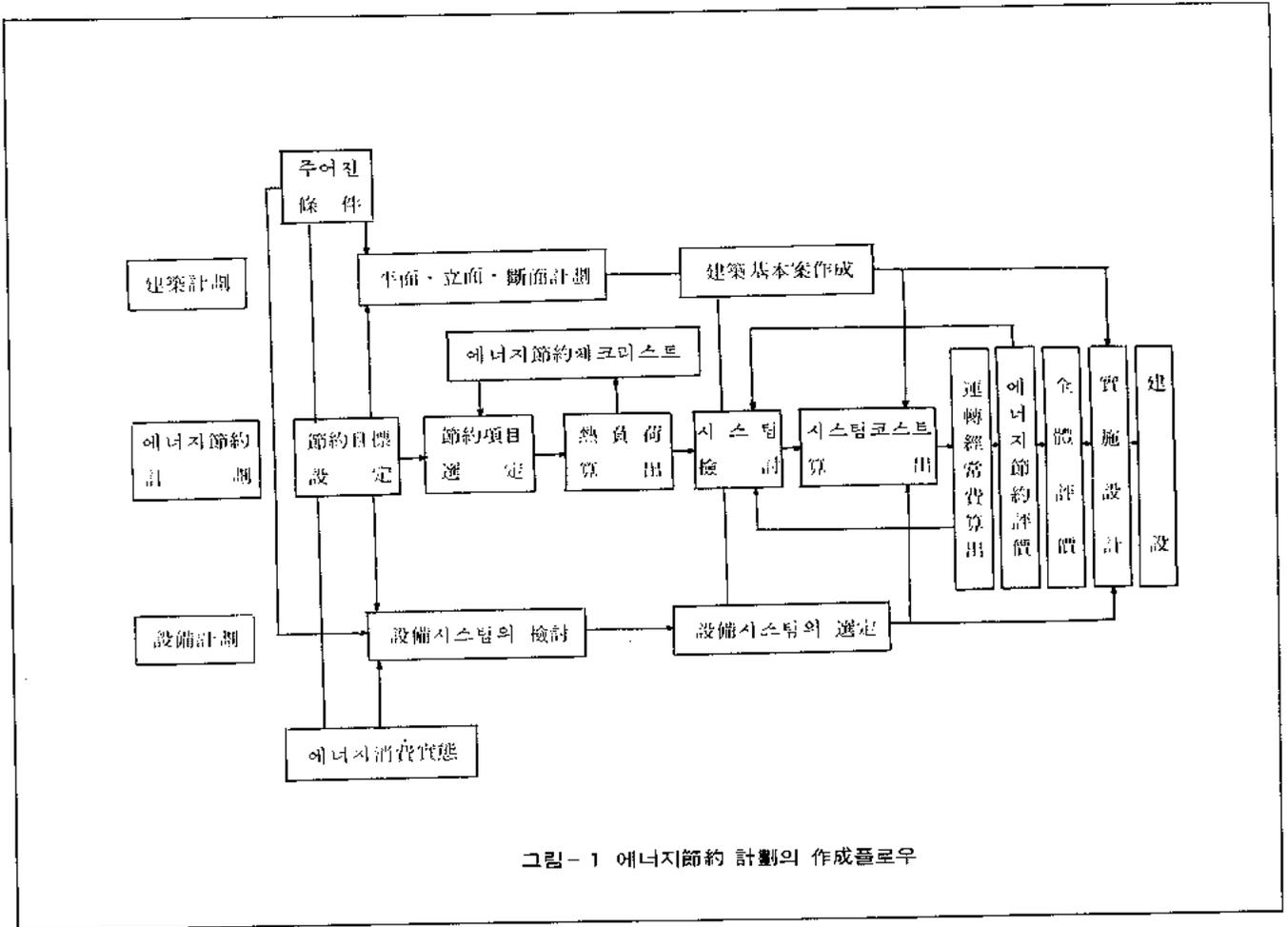


그림 - 1 에너지節約 計劃의 作成플로우

### 3. 空調設備에 있어서의 에너지節約

空調設備에 있어서의 에너지節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래의 各項目에 空調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 (1) 熱負荷의 低減
- (2) 最小運轉, 에너지에 의한 運轉·維持
- (3) 排熱利用
- (4) 自然에너지利用
- (5) 設定條件의 適否

즉, 空調設備시스템의 構成은 그림 2와 같으며 시스템의 各部位에 上記項目을 적용·검토하여 에너지節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된다.

#### (1) 熱負荷의 低減

空調시스템에서의 熱負荷 低減에는 下記事項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 a. 空調方式

예를 들면 二重덕트方式, 터미날 리히트(Terminal Reheat)方式 등, 冷溫熱媒를 혼합해서 소정의 溫濕을 얻도록 한 시스템은 그곳에 混合損失이 생겨서 유리하지 못하다. 즉, 이러한 混合損失이 생기지 않는 시스템으로 해야 할 것이다.

#### b. 搬送系

덕트, 配管 등의 表面으로부터의 損

失熱은 직접 熱負荷가 되므로 이것은 극력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옥외에 의한 P.S., D.S 등의 경우에는 주의해서 熱損失이 생기지 않도록 斷熱해야 할 것이다.

#### c. 搬送動力

搬送動力은 熱負荷가 되기 때문에 熱媒搬送動力은 最小運轉動力으로 하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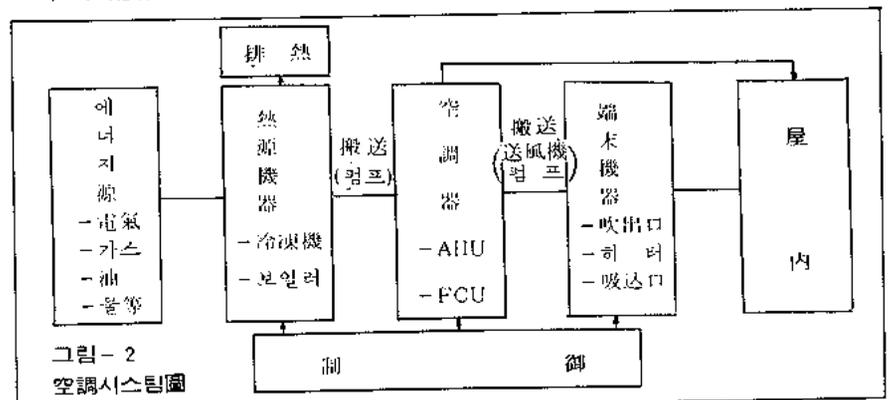


그림 - 2 空調시스템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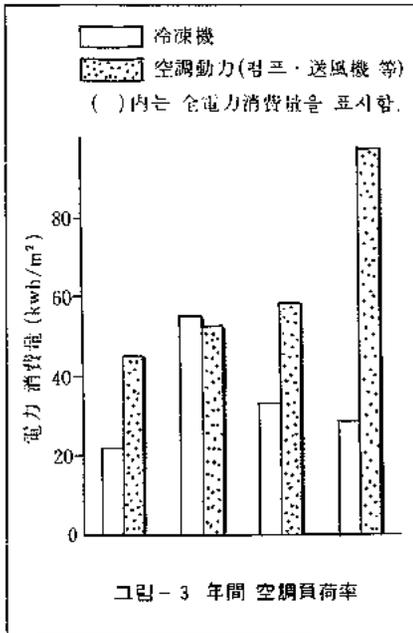
(2) 最小運轉에너지에 의한

運轉·維持

空調시스템은 熱源機器, 搬送用機器, 端末機器 등 때문에 많은 箇所에 動力, 주로 電動機 등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보일러, 吸收式 冷凍機에는 연료가 이용되고 있다. 이들의 에너지 入力を 시스템 全体로서 최소화 하고 또한 각각의 機器運轉動力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以下에 機器, 시스템에 대한 適用項目을 서술한다.

a. 機器

機器에 대해서는 高効率運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할 것. 보통 設備 各機器의 出力은 각각 負荷의 最大値에 대응하고 있지만 期間, 年間の 運轉狀態는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部分負荷로 되어 있다.



따라서 期間中の 대부분을 점유하는 部分負荷時에 가장 효율이 좋은 상태로 運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主對象機器로서는 보일러, 冷凍機, 送排風器, 펌프 등이며 이들 機器의 最大出力을 어떻게 정하며 또 制御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이다.

b. 시스템

各機器가 高効率로 運轉될 수 있다 해도 시스템 全体로서 高効率運轉이 가능하지 않으면 에너지節約은 달성되지 않는다. 즉, 시스템이 전체로서 기본적으로 高効率이고 특히 部分負荷時에도 충분히 효율이 높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현재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空調設備관련 에너지節約의 시스템은 表 2와 같다.

表-2 空調設備의 에너지節約 시스템

項目	에너지節約시스템	機器
에너지節約 시스템	① 可變流量方式 - VAV 방식 - VWV 방식 - 台數分割	- VAV 용너트 - 팬모터回轉數制御 - 펌프모터의 回轉數 制御
	② 高効率制御 시스템	- 컴퓨터ontrol - 패네티팅·쿨링
	③ 放射冷暖房	- 立型蓄熱槽
	④ 蓄熱시스템	- 潛熱蓄熱

表-3 排熱利用시스템

項目	利用 시스템	機器
熱源機器로부터의廢熱	- 보일러, 가타 燃焼機器의 廢가스로부터의 熱回收	- 히트파이프 - 廢가스보일러
空內發生熱의 回收	- 히트펌프 시스템 - 剩餘排氣로부터의 熱회수	- 空氣式히트 펌프 - 水式히트펌프 - 全熱交換器
排水로부터 熱回收	- 溫排水로부터의 熱回收	- 히트파이프 利用

搬送動力의 低減에는 可變流量方式 즉, 空気に 대해서는 VAV 방식, 물에 대해서는 VWV 방식이 있다. 또한 搬送媒體의 單位重量當 保有熱量을 증가할 것. 예를 들면 循環水의 利用溫度差를 크게 하는 등 大溫度差의 채용 등이 필요하다.

c. 컴퓨터 콘트롤

前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設備機器, 搬送系統은 각각 그 시스템의 最大負荷時에 대응할 수 있는 裝置容量으로 되어 있지만 常時 部分負荷가 많다. 또한 負荷는 일정하지 않게 變動하여 이들 機器의 起動停止, 負荷變動에의 追從性 등 에너지節約化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制御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機器, 시스템의 制御를 에너지節約적으로 調節, 制御하는 데는 컴퓨터를 이용한 制御 시스템을 채용하는 것이 있다. 요즘은 마이크로컴퓨터 및 周邊機器 또한 저렴한 것이 있고 이들을 이용한 마이크로컴퓨터에 의한 디지털制御가 에너지節約시스템으로서 이용되기 시작하여 向後 日중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3) 排熱利用

空調設備에서의 排熱利用을 위한 에너지節約시스템으로서 보일러 등 燃焼機器로부터의 廢가스保有熱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기타 가장 일반적인 것은 히트펌프 利用 排熱回收裝置를 이용해서 행하는 熱回收시스템, 건물에서의 排氣의 保有熱을 回收하는 全熱交換機에 의한 熱回收시스템이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表 3과 같다.

(4) 自然에너지의 利用

自然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自然換氣에 의해서 室內溫度上界을 억제하는 소위 Night Purge가 있다. 中 間期 중에 外氣를 적극적으로 空調 시스템에 導入시키는 外氣冷房, 또한 窓面 등으로부터 外氣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冷房하는 自然換氣는 自然通風으로 冷却을 행하는 에너지節約 시스템이다.

기타 太陽熱利用 冷暖房시스템, 더 나아가 太陽電池, 風力發電 등 自然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節約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日 本에 미치지 않고 있다.

이들 각시스템을 요약하면 表 4와 같다.

表-4 自然에너지利用시스템

項目	시스템
自然·通風·外氣의 利用	- 外氣冷房 - 夜間冷房 - 自然通風に 의한 換氣 - 風力發電
太陽熱利用	- 冷暖房시스템 - 太陽電池

表-5 衛生設備에서의 에너지節約시스템

項目	에너지節約시스템	機器
에너지節約 시스템	- 可變流量시스템	- rakkless 시스템
	- 太陽熱利用給湯	- 太陽熱콜렉터
	- 排水排熱回收	- 히트파이프
資源節約 시스템	- 節水 시스템	- 節水器具
	- 메탄가스發生	- 메탄가스發生裝置

表-6 電氣設備에서의 에너지節約시스템

項目	에너지節約시스템	機器
에너지節約 시스템	- 窓가 照明制御 (晝光利用)	- 調光器 - 節約型螢光燈
	- 照度制御	- 配線方式, 트래
	- 高効率機器의 利用	- 스펀덴서
	- 台數制御	- 엘리베이터群 리, 트랜스
	- 高効率制御시스템	- 컴퓨터ontrol

4. 衛生設備에서의 에너지節約

衛生設備에 있어서는 에너지節約과 동시에 資源節約시스템이 이용되고 있

다. 에너지節約으로서는 給水系統의 變流量系統, 給湯設備에서의 太陽熱利用, 또한 排水保有熱로부터의 熱回收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資源節約으로서는 근래 水資源의 고갈에 의한 節水系統, 특히 區域에 따른 法的인 節水系統의 의무적 채용을 생각할 수 있다.

기타 汚水, 주방용 폐수를 貯溜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이것을 燃料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을 종합하여 表 5에 나타내었다.

### 5. 電氣設備에서의 에너지節約

電氣設備에서의 에너지節約은 주로 晝光利用과 照明콘트롤, 節電型 螢光燈 및 高効率電動氣, 트랜스태퍼, 엘비에터의 運轉制御 등이 있다.

晝光利用과 照明콘트롤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조명용 電力消費量이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에너지절약화는 전체로서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적당한 作業照度を 유지하면서 照明電力을 절약하는 데는 照明調光과 窓가의 晝光利用 및 非使用

시의 消燈이 효과적이다. 照明器具에 대해서도 요즈음 節電型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고 이의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表 6과 같다.

### 6. 建築物의 에너지節約을 위한 設計基準 및 評價基準의 確立

인간의 안전·건강에 직접 관계되고 있는 문제는 현재 건축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快適性이라든가 便利性, 에너지의 節減 등의 요구도 또한 간접적으로 인간의 안전·건강에 관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보호는 미약한 실정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建築法 施行規則 제25조에서 건물의 部位別 熱貫流率(K값)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熱的 性能評價, 衛生環境水準定立 및 기초조사는 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에너지資源의 결핍, 소비현상, 그에 따른 환경과피의 심각성을 직시할 때 에너지消費抑制은 진지하게 연구·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또

考的 여지가 없다.

에너지節約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에너지節約을 위한 設計基準과 評價基準을 확립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動力資源研究所 建物研究室에서는 大韓建築學會 및 空氣調和·冷凍工學會와 공동으로 設計基準(案)을 준비 중에 있으며, 評價基準(技法)으로서는 미국에너지省에서 개발·인정된 에너지解析프로그램인 DO-E-2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국적으로 Modifying하여 사용하면서 장차 한국 특유의 技術基準開發, 評價技術의 開發 등에 노력을 倍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제24조 및 同法 施行規則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斷熱材의 型式承認基準을 動力資源部 告示로 발표하고 斷熱材 생산업체는 이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들 각 斷熱材에 대한 型式承認基準의 주요내용을 斷熱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附錄>에 게재한다.

## <부 록>

### I. 유리면 보온재 형식승인 기준(8-1001)

1. 유리면의 열전도율은 아래표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열전도도 (kcal/m. h. °C) (평균온도 70±5°C)	참고열전도도 (kcal/m. h. °C) (평균온도 0°C)	시험할때의 부피 비중 (g/cm <sup>3</sup> )
유리면A 종	0.036 이하	0.027 이하	0.030
유리면B 종	0.036 이하	0.027 이하	0.040
유리면C 종	0.042 이하	0.032 이하	0.070

2. 유리면 보온판은 아래표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호칭두께에 따른 부피비중 (g/cm <sup>3</sup> )	열전도도 (kcal/m. h. °C) (평균온도 70±5°C)	참고 열전도도 (kcal/m. h. °C) (평균온도 0°C)	사용유리면
유리면보온판 1 호	a	0.007 이상	0.054 이하	A 종
	b	0.010 이상	0.048 이하	
	c	0.013 이상	0.045 이하	
	d	0.020 이상	0.040 이하	
유리면보온판 2 호	a	0.010 이상	0.055 이하	B 종
	b	0.013 이상	0.050 이하	
	c	0.020 이상	0.043 이하	
	d	0.027 이상	0.040 이하	
	e	0.040 이상	0.037 이하	
유리면보온판 3 호	0.050 이상	0.040 이하	0.030 이하	C 종

3. 유리면 보온통은 아래표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부피비중 (g/cm <sup>3</sup> )	열전도도 (kcal/m.h.°C) (평균온도 70±5°C)	참고 열전도도 (kcal/m.h.°C) (평균온도 0°C)	사용유리면
유리면보온통 1호	0.040 이상	0.035 이하	0.026 이하	A 종
유리면보온통 2호	0.045 이상	0.037 이하	0.027 이하	B 종

4. 유리면 불판켓은 아래표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호칭 두께에 따른 부피비중	열전도도 (kcal/m.h.°C) (평균온도 70±5°C)	참고 열전도도 (kcal/m.h.°C) (평균온도 0°C)	사용유리면
유리면 불판켓 1호	a 0.018 이상	0.040 이하	0.027 이하	A 종
	b 0.036 이상	0.035 이하	0.026 이하	
유리면 불판켓 2호	a 0.023 이상	0.041 이하	0.029 이하	B 종
	b 0.041 이상	0.037 이하	0.027 이하	

5. 유리면 보온대는 아래표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부피비중	열전도도 (kcal/m.h.°C) (평균온도 70±5°C)	참고 열전도도 (kcal/m.h.°C) (평균온도 0°C)	사용유리면
유리면 보온대	0.025 이상	0.045 이하	0.033 이하	A종 또는 B종

## II. 광석면 보온재 형식승인 기준 (8-1002)

1. 광석면은 아래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g/cm <sup>3</sup> 밀도	섬유의 굵기 (μ)	입자의 함유율 (%)	열전도율 (kcal/m.h.°C (W/m.K) (평균온도 70±5°C)
광석면 1호	0.15 이하	7 이하	4 이하	0.039 이하 (0.045 이하)
광석면 2호	0.18 이하	8 이하	8 이하	0.041 이하 (0.048 이하)
광석면 3호	0.20 이하	8 이하	16 이하	0.044 이하 (0.051 이하)

2. 광석면 보온판은 아래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 류	밀도 g/cm <sup>3</sup>	열전도율 (kcal/m.h.°C) (W/m.K) (평균온도 70±5°C)	휘강도 kg.f/cm <sup>2</sup> (N/cm <sup>2</sup> )
광석면 보온판 1호	0.10 이하	0.039 이하 (0.045 이하)	-
광석면 보온판 2호	0.16 이하	0.039 이하 (0.045 이하)	-
광석면 보온판 3호	0.30 이하	0.042 이하 (0.049 이하)	2.5 이상 (24.5 이상)
광석면 보온판 4호	0.35 이하	0.047 이하 (0.055 이하)	2.5 이상 (24.5 이상)

3. 광석면 벨트는 아래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 류	밀도 (g/cm <sup>3</sup> )	열전도율 kcal/m.h.°C (W/m.k) (평균온도 70±5°C)
광석면 벨트	0.07 이하	0.042 (0.049) 이하

4. 광석면 보온통은 아래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 류	밀도 g/cm <sup>3</sup>	열전도율 (kcal/m.h.°C) (W/m.K) (평균온도 70±5°C)	휘강도 kg.f/cm <sup>2</sup> (N/cm <sup>2</sup> )
광석면 보온통 1호	0.20 이하	0.040 이하 (0.047 이하)	3.0 이상 (29.4 이상)
광석면 보온통 2호	0.38 이하	0.044 이하 (0.051 이하)	
광석면 보온통 3호	0.42 이하	0.052 이하 (0.060 이하)	

5. 광석면 보온대는 아래표에 따른다.

종 류	밀 도 (g/cm <sup>3</sup> )	열전도율 [kcal/m.h.℃ (W/m.K)] 평균온도(70±5℃)
광석면보온대	0.10 이하	0.046 (0.054) 이하
	0.20 이하	0.048 (0.056) 이하

6. 광석면 불란켓은 아래표에 따른다.

종 류	밀 도 (g/cm <sup>3</sup> )	열전도율 kcal/m.h.℃ (W/m.K) 평균온도(70±5℃)
광석면불란켓	0.10 이하	0.039 (0.045) 이하
	0.20 이하	0.043 (0.050) 이하

7. 광석면 매트는 아래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 류	밀 도 (g/cm <sup>3</sup> )	열전도율 kcal/m.h.℃ (W/m.K) 평균온도(70±5℃)
광 석 면 매 트	0.07 이하	0.042 (0.049) 이하

### Ⅲ. 규산칼슘 보온재 형식승인 기준 (8-1003)

1. 규산칼슘보온판 및 보온통은 아래표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부피비중 g/cm <sup>3</sup>	열전도율 (kcal/m.h.℃) (평균온도)	항절강도 (kg/cm <sup>2</sup> )	압축강도 (kg/cm <sup>2</sup> )	선추축용 (%)
보온통 1호	0.22 이하	0.53 이하	3.0 이상	4.5 이상	2.0 이하
보온판 2호 보온통 2호	0.35 이하	0.065 이하	2.0 이상	3.5 이상	2.0 이하

### Ⅳ.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 형식승인 기준 (8-1004)

1. 보온판 및 보온통은 아래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밀 도 g/cm <sup>3</sup>	열 전 도 율 kcal/m.h.℃		굴 고 강 도 kg/cm <sup>2</sup>	내 압 시 험			흡 수 용 적 기준 (%)	연 소 시 험	
		평균온도 30±5℃	참고평균 온도 0℃		압 축 하 중 kg/cm <sup>2</sup>	압 축 량 mm				
						좌의두께 mm				
					25	50	75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판 1호	0.030 이상	0.033 이하	0.029 이하	3.5 이상	28	1 이하	2 이하	3 이하	1 이하	합격
" 2호	0.025 "	0.034 "	0.030 "	3.0 "	20	"	"	"	"	"
" 3호	0.020 "	0.036 "	0.032 "	2.5 "	12	"	"	"	"	"
" 4호	0.016 이상	0.039 "	0.035 "	2.0 "	10	"	"	"	1.5 이하	"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통 1호	0.035 이상	0.033 이하	-	3.0 이상	-	-	-	-	두께30mm미만 2 이하	"
" 2호	0.030 "	0.033 "	-	2.5 "	-	-	-	-	"	"
" 3호	0.025 "	0.031 "	-	2.0 "	-	-	-	-	두께30mm 이상 1 이하	"

표 이외 것의 압축량은 판 두께의 4% 이하로 한다.

### Ⅴ.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형식승인 기준 (8-1005)

1.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는 아래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밀 도 g/cm <sup>3</sup>	흡 수 량 g/100cm <sup>3</sup>	압축강도 kg/cm <sup>2</sup>	휨 강 도 kg/cm <sup>2</sup>	열전도율 kcal/m.h.℃ 평균온도
1 호	0.050이상	3.0 이하	3.0 이상	3.0 이상	0.025 이하
2 호	0.040 이상 0.050 미만	3.0 이하	2.5 이상	2.8 이상	0.024 이하
3 호	0.035 이상 0.040 미만	3.0 이하	2.0 이상	2.5 이상	0.022 이하

종 류	밀 도 g/cm <sup>3</sup>	흡 수 량 g/100cm <sup>3</sup>	압축강도 kg/cm <sup>2</sup>	휨 강 도 kg/cm <sup>2</sup>	열전도율 kcal/m. h. °C 평균온도 20±5°C
4 호	0.030 이상 0.035 미만	3.0 이하	1.5 이상	2.0 이상	0.022 이하
5 호	0.025 이상 0.030 미만	3.0 이하	1.0 이상	1.5 이상	0.024 이하

Ⅵ. 석고 플라스터 또는 석고판 보온재 형식승인 기준 (8-1006)

1. 석고 플라스터는 아래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소석고량 (So <sub>2</sub> 에 서 환산) (%)	응 결 시 간		분 말도 잔 량 (%)		강 도 kg/cm <sup>2</sup>	경 도 수 (mm)	균 시 일 힘	보 수 율 (%)		1 포 대 (kg)	열 전 도 율 kcal/m.h.°C 평균온도 70±5°C
		초 결	중 결	420μ (40#)	149μ (100#)				2분	10분		
정별용 혼합 석고플라스터	25 이상	1시간 이 상	8시간 이 상	1이하	10이하	6 이 상	2.0이상 (하중200g)	합격	80 이 상	75 이 상	25 이 상	0.6 이하
초별용 혼합 석고플라스터	65 이상	"	"	"	"	14 이 상	2.0이상 (하중400g)	합격	"	"	"	
보오드용 석고플라스터	85 이상	"	"	"	"	16 이 상	2.0이상 (하중400g)	합격	"	"	"	

Ⅶ. 석면 보온재 형식승인 기준 (8-1007)

1. 석면보온재는 아래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구분 종류	밀도	밀도별 열전도율 (kcal/m.h.°C)				안전사용온도 °C
		300 (kg/m <sup>3</sup> )	400 (kg/m <sup>3</sup> )	450 (kg/m <sup>3</sup> )	500 (kg/m <sup>3</sup> )	
사방각섬석면 (활 석 면)	0.081 이하	0.110 이하	0.106 이하	0.108 이하	200	

Ⅷ. 질석보온재 형식승인 기준 (8-1008)

1. 질석보온재의 품질은 아래표와 같아야 한다.

구분 종류	입 도 (%)												밀 도 kg/m <sup>3</sup>		열 전 도 율 kcal/m.h.°C				
	No.4 4.76mm		No.8 2.38mm		No.16 1.19mm		No.30 590μm		No.50 297μm		No.100 149μm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18 °C	25 °C	120 °C	260 °C	400 °C
1 종	30	90	65	98	85	100	-	-	-	-	-	-	56	112	0.055	0.062	0.092	-	-
2 종	0	5	20	80	75	99	90	100	97	100	-	-	64	128	0.055	0.062	0.078	-	-
3 종	-	-	0	10	20	70	65	95	75	98	90	100	80	144	0.065	0.062	0.078	-	-
4 종	-	-	-	-	0	5	15	65	60	98	90	100	100	160	0.055	0.062	0.078	0.105	0.136

표에 표시한 수치에 대하여 ±10% 이내이어야만 한다

Ⅸ. 요소발포 보온재 형식승인 기준 (8-1009)

1. 요소발포 보온재는 아래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밀 도 g/cm <sup>3</sup>	흡 수 량 g/100cm <sup>3</sup>	압축강도 kg/cm <sup>2</sup>	휨 강 도 kg/cm <sup>2</sup>	열전도율 kcal/m. h. °C 평균온도 20±5°C
1 호	0.050 이상	16이하	1.0 이상	2.0 이상	0.031 이하
2 호	0.030 이상 0.050 미만	17이하	0.6 이상	1.2 이상	0.031 이하
3 호	0.020 이상 0.030 미만	18이하	0.3 이상	0.6 이상	0.030 이하
4 호	0.015 이상 0.020 미만	19이하	0.2 이상	0.4 이상	0.030 이하
5 호	0.010 이상 0.015 미만	20이하	0.1 이상	0.3 이상	0.030 이하

X. 화산력 보온재 형식승인 기준 (8-1010)

1. 화산력 보온재는 아래표와 같아야 한다.

구분	입 도 누 적 산 류 량 (%)												밀 도 g/cm <sup>3</sup>	열전도율 kcal/m. h. °C, 평균온도 24±5°C
	No. 4 4.76mm		No. 8 2.238mm		No.16 1.19mm		No.30 590 $\mu$ m		No.50 297 $\mu$ m		No.100 149 $\mu$ m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 층	30	90	65	98	85	100							1.0 이하	0.15 이하
2 층	0	5	20	80	75	99	90	100	97	100			"	"
3 층			0	10	20	70	65	95	75	98	90	100	"	"
4 층					0	5	15	65	60	98	90	100	"	"

XI. 페놀발포 보온재 형식승인 기준 (8-1011)

1. 페놀발포 보온재는 아래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밀 도 g/cm <sup>3</sup>	흡 수 율 g/100cm <sup>3</sup>	압축강도 kg/cm <sup>2</sup>	휨 강 도 kg/cm <sup>2</sup>	열 전 도 율 kcal/m. h. °C 평균온도 20±5°C	연 소 시 험
1 호	0.050 이상	4.0 이상	1.5 이상	1.8 이상	0.030 이하	합 격
2 호	0.050 미만	4.0 이상	1.2 이상	1.4 이상	0.030 이하	"
3 호	0.040 이상	4.0 이상	1.0 이상	1.2 이상	0.030 이하	"
4 호	0.030 이상	4.0 이상	1.0 이상	1.0 이상	0.030 이하	"
	0.0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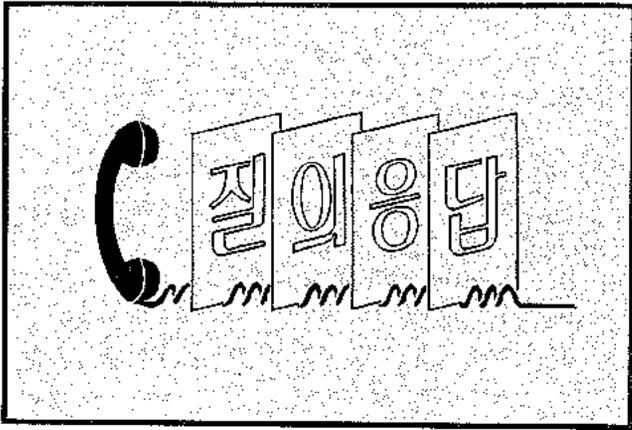
XII. 셀룰로우스 보온재 형식승인 기준 (8-1012)

1. 셀룰로우스 보온재는 아래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밀 도 g/cm <sup>3</sup>	열전도율 kcal/m. h. °C 평균온도 20±5°C	흡 수 율 무게기준 (%)	연 소 시 험
0.03 이상 - 0.05 미만	0.038 이하	15 이하	합 격



□ Design: Malcolm wells



## □ 건축법

- **㉠** 마포구 대흥동에 주거지역내 대지면적 58평인베 건축가능(여관)한지요? (시, 전)  
**답** 주거지역내에서 여관 용도 건축은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을때 가능함.
- **㉡** 주거지역내 주택을 비용실 용도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요? (회, 전)  
**답** 예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 부분 면적이 200㎡ 이상이면 허가를 득해야 하며 그 이하는 신고로서 가능합니다.
- **㉢** 지름 20m인 사이로를 건립시 전폐율, 용적율 등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지요? (시, 전)  
**답** 건축면적에 해당되므로 전폐율 등을 산정해야 됩니다.
- **㉣** 지하실이란 어떤 것입니까? (시, 전)  
**답** 지표이하에 있는 실을 말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반자 높이 3/8 이상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옥탑이 바닥 면적에 산정되는지요? (시, 전)  
**답** 바닥 면적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옥탑 부분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상일 경우 층수 및 건물 높이에 산정됩니다.
- **㉥** 주거지역내 교회를 건축시 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시, 전)  
**답** 제한 없습니다.
- **㉦** 준공업 지역내 연립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요? (시, 내)  
**답** 가능합니다.
- **㉧** 4층 사무실 건축물로서 1층의 바닥 면적이 400㎡ 이면 직통 계단은 몇개 설치해야 하는지요? (시, 전)  
**답**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 전면도로가 건축물의 앞 뒤로 나란히 있는 경우, 2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높이 제한의 완화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시, 전)  
**답** 예 가능합니다.
- **㉩** 준주거지역내 법정 전폐율은 얼마입니까? (시, 전)  
**답** 60%입니다.
- **㉪** 피난 계단으로부터 도로나 건축이 금지되는 공지에 접하는 소요폭이 없는 경우 건축물 일부로 피난통로의 설치가 가능합니까? (시, 전)  
**답**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된 경우 가능합니다.

- **㉫** 주거지역내 소규모 공장 건축이 가능합니까? (시, 전)  
**답** 불가능합니다.
- **㉬** 기존 건축물에 3명정도 증축코자 하는데 이 경우 신고로 할 수 있는때에도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전폐율에 적합하여야 합니까? (시, 전)  
**답** 예. 전폐율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 여관이나 가족방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요 (시, 내)  
**답** 할 수 없습니다.
- **㉮** 구조계산을 작성시 구조 기준은 어디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시, 전)  
**답** 구조계산 기준(건설부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건축선이란 무엇입니까? (시, 전)  
**답** 도로 경계선을 말합니다. 즉 건축물이 제한되는 선이 됩니다.
- **㉺** 용적율 산정시 지하부분이 포함됩니까? (시, 전)  
**답**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 건축물의 담장이 건축법에 위반되게 설치 되었을 시 도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시, 전)  
**답** 예.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 영동의 상임 지역의 전폐율은 얼마입니까? (시, 전)  
**답** 전폐율은 60%까지 가능합니다.
- **㉽** 11층 이상 건물로 특별 피난 계단을 설계시 전실이 외계와 접하면 S, T가 생략이 가능한지요? (시, 전)  
**답** 전실이 외계와 접하여 비상시 환기가 될 수 있으면 SMOKE TOWER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 **㉾** 주거지역으로서 기본합된 21평의 대지가 주변에 집들이 다지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가능여부 (시, 내)  
**답** 건축법 시행령 102조 4항에 의하여 건축가능합니다.
- **㉿** 도시계획(도로)확장으로 인하여 3/8가 철거된 건물에 대하여 잔여지 땅에 증축가능한지 여부 (시, 전)  
**답** 건축법 시행령 102조 5항에 의거 증축가능합니다.
- **㊀** 기존 2층 건물에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데 기존 2층 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증축가능한지 여부 (시, 전)  
**답** 기존 건축물이 제 규정에 적법한 건축물이면 증축가능하나 높이 제한(법 제41조) 및 시행령 90조 등에 적합해야 함.
- **㊁** 주거지역내에서 건축물 높이가 다른 경우 일조권 적용은? (시, 전)  
**답** 건축물의 높이가 8m 이상이면 높이의 1/2, 8m 미만이면 1/3을 띄워야 합니다.
- **㊂** 보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대지경계선까지는 얼마나 띄워야 합니까? (시, 전)  
**답** 지역별 지구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주거지역내에서 정북방향이면 외벽에서 50cm 이상 치마끝에서 20cm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합니다.
- **㊃**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6m인 경우 도로의 폭이 얼마 이상되어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시, 전)  
**답** 6m 이상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로가 2m이라면 도로 중심선에서 귀하의 대지쪽으로 3m를 확보되어야 합니다.

- 저희 매지는 4m 도로가 교차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시에 각각을 하여야 하는지요?  
 각각정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옥외 피난 계단의 부분을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시. 전)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업 지역내에서의 일조권등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시. 전)  
 정북방향에 의한 일조권 규정등은 없으나 높이가 12m를 초과할때는  $\frac{40-20}{H} + 0.5m$ 의 공식에 따라 산정되어지는 수치의 소정거리를 인접매지 경계선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 용산쪽 주거지역의 용적율 및 건폐율은 얼마입니까? (시. 전)  
 건폐율 50% 용적율 250%입니다.
- 주차 진입도로가 4m 인데 건축 불가합니까? (1000m<sup>2</sup> 이상 건물) (회. 전)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주 출입구가 별도 형성되고 건축선으로부터 1m 이상 후퇴시는 가능합니다.
- 차고를 가설건축물로 지을수 있나요? (시. 전)  
 도시계획 사업시행 예정지등에는 전차를 밝아 가설건축물로 지을수 있으나 말씀하시는 차고의 용도등(규모포함)에 따라 재고되어야 합니다.
- 소정의 도로폭을 확보함으로써 매지면적 최소한도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건축허가 할 수 없습니까? (시. 전)  
 건축선 후퇴 부분은 소요 매지 면적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건축 불가합니다.
-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등의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회. 전)  
 인접매지 경계선의 지표면과 평균 수평면에서 산정한 높이에서 규정된 일조권 산정을 합니다.
- 공동주택의 공용의 복도는 연면적에 산정 됩니까? (시. 전)  
 예, 산정됩니다.
- 지통계단의 거리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시. 전)  
 적통계단 상호간 거리는 최단거리가 10m 이상 되어야 합니다.
- 호화주택의 범위? (시. 전)  
 매지면적 250평 건물연면적 150평 이상입니다.
- 10년전에 지은 기존 주택에 수직 증축할시 전북방향에 대한 인접 매지 경계선과 이격거리? (시. 전)  
 2층 증축부분에 한하여 건축법 제 90조에 의한 일정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 □ 건축행정

- 소유자가 다른 두필지상의 각필지에 건축물이 걸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지? (시. 내)  
 합병 선행된후 건축 가능합니다.
- 지적이 도로이고 소유자 개인 명의로 된 사도의 경우 소유자가 임의로 폐지 건축할 수 있는지요?(시. 전)  
 할 수 없습니다.

- 램프의 내부반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 전)  
 반경을 원으로 하였을때 생기는 반경을 말합니다.
- APT와 시장을 복합 용도로 건축할수 있습니까?  
 우선 도시 계획 사업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1평이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것 입니까?(시. 전)  
 사방 6자입니다. 즉 3.3058m<sup>2</sup>를 1평이라고 합니다
- 저희집 앞쪽 건물을 신축하면서 낮은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위험한데 이를 조치할 수 없는지요?(시. 전)  
 서울시 건축조례에 철조망, 유리파편등을 담장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지 지구내 건폐율은 얼마입니까?(회. 전)  
 1층 공지지구인 경우 20% 2층 공지지구인 경우 30% 3층 공지지구인 경우 40% 입니다.
- 막다른 도로의 끝쪽에 위치하는 부지로서 진입도로쪽에 소요폭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저희 매지만 소요폭을 확보하고 건축가능 합니까? (시. 전)  
 확보된후 건축 가능 합니다.
- 기존 건축물에 2층을 증축코자할 때 동일매지내 주차장을 확보가 불가할시 인근 필지를 매입하여 증축가능 합니까?(회. 전)  
 일단의 매지(한필지로된)로 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공지지구내 건축물의 후면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시. 전)  
 건축선의 후면입니다.
- 부재지주 땅에 범인 관결에 의거 세산 관리인이 선정되어 토지를 관리하던중 제산 관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 가능 여부? (시. 전)  
 민법 제25조, 118조에 의거 대리인(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의하여 보존 행위와 개량 행위만이 가능하며 여타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용도가 세분되기전 허가 및 준공을 득한 건물로 용도가 점포와 주거로 표기 되었기 이를 면적당 용도 표시를 하여 세금 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시. 전)  
 용도가 세분전 건물의 면적당 용도 표시를 하는 방법은 구청 세무과에 가서서 세분 요청을 하면 직권 세분조정이 가능합니다.
- 지금 허가를 득한후 내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시. 전)  
 허가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종전에 있던 집을 헐고 다시 지을려고 하는데 이 경우 건축법상의 적용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요?(시. 전)  
 일부 성과 조치 규정에 대한 완화 조항은 있으되 혜택이 따로 부가되는건 아닙니다.
- 공지 저분인 매지에 본인 지분에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 동의서를 나 검부해야 하는지 여부 (시. 전)  
 건설부 유권해석에는 관계 법령등 제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의 판단 결정에 의거 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확실성 있는 구속력과 공징력 및 공권력을 갖는 것이므로 공유지분 매지상의 건축 허가에 관하여는 신청안의 직분에 해당되는 매지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신청 매지의 주변 공유지

- 를 포함하여 전체 관련 토지공유자의 3/5에 해당하는 공유자의 동의서 첨부면 가능합니다.
- **㉠** 주택 건물에서 몇평까지 국민 주택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시. 전)  
**답** 국민주택 규모인 25평(85m<sup>2</sup>)이하는 면제 됩니다.
- **㉡**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형질 변경 등의 절차 없이 건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까? (시. 전)  
**답** 예. 가능한 경우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경우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공동 주택 사업승인을 득하는 경우 토지 형질 변경의 선행 절차없이 건축허가와 동시에 처리 가능함.
- **㉢** 1종 미관 지구내 대지 면적 최소한도는 얼마입니까? (회. 전)  
**답** 660m<sup>2</sup>입니다.

## □ 건축조례

- **㉠** 영동의 3종 미관 지구인데 건폐율 및 용적율은? (시. 전)  
**답** 건폐율 50% 용적율 300%입니다.
- **㉡** 4종 미관 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외장 변경시 건축 심의를 득해야 하는지? (시. 전)  
**답** 건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 2000m<sup>2</sup>인 시장을 건축할때 조경면적은 얼마를 해야 하는지요 (시. 전)  
**답** 조경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풍치 지구내 대지 최소 면적은 얼마입니까 (시. 내)  
**답** 600m<sup>2</sup>이상입니다. 다만 주거지역에 설정된 풍치지구 내는 200m<sup>2</sup>이상입니다.
- **㉤** 건축선 지정으로 인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 건축가능한지? (시. 전)  
**답**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에 3/5이하인 경우이면 건축이 불가합니다.
- **㉥** 2종 미관 지구내 기존 미달대지의 최소한도는 얼마입니까 (시. 전)  
**답** 330m<sup>2</sup>의 농이상 즉 110m<sup>2</sup>이상이어야 합니다.
- **㉦** 4종 미관 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시. 전)  
**답** 미관 심의를 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 **㉧** 1종 미관 지구에 대지 150평인데 건축 가능한지요 (시. 전)  
**답** 대지면적 200평이 (1종 미관지구)가능하지만 다만 동대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인하여 차부리가 된 대지나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대지일때는 가능합니다.
- **㉨** 1종 미관 지구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15층 건축예정) (시. 내)  
**답** 15층을 건축하려면 건축면적이 500m<sup>2</sup>이상이어야 합니다.
- **㉩** 연면적 5,000m<sup>2</sup>이상 건물로 3.0m통로 부분에 조경이 가능한지요? (시. 전)  
**답** 예. 조경은 가능하나 교목은 안되고 관목만이 가능합니다.

- **㉪** 2종 미관 지구에 있는 1층 건축물로서 2층만 증축이 가능한지 (시. 내)  
**답** 미관지구 조례 제16조에 의거 2층만의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 **㉫** 여의도 국회의사당쪽 건폐율 및 용적율은 (시. 전)  
**답** 건폐율 45% 용적율 67%
- **㉬** 풍치 지구내 후면대지 경계선간의 거리는 얼마 이상 떨어져야 합니까? (시. 내)  
**답** 2층인 경우 2.0m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 **㉭** 주차대수 산정시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 전)  
**답**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12조 1항에 의하면 주차대수 1대미만은 버리도록 되어 있음.

## □ 주차장법

- **㉠** 옥내 주차장은 꼭 지하에만 설치 가능한지요 지상 1층이나 2층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가능한지요. (시. 전)  
**답** 가능합니다.
- **㉡** 상업지역내 주차면적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시. 내)  
**답** 일반 건축물은 대부분 연면적 150m<sup>2</sup>마다 1대씩이나 공동주택은 200m<sup>2</sup>주택용도는 250m<sup>2</sup>에 식당 용도는 85m<sup>2</sup>마다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하여야함.
- **㉢** 주차배치를 차를 정면으로 보고 양쪽으로 배치할 경우 통로의 폭은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시. 전)  
**답** 7.6m이상되어야 합니다.
- **㉣** 옥외 주차장은 꼭 설치해야 하는지 옥외에 한다면 옥내 비율은 얼마입니까 (시. 내)  
**답** 옥외에 50%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문 내 간선도로 변으로 건폐율을 40%나 45%로 하는 경우에는 옥외 주차 비율을 25%까지 할수 있음.
- **㉤** car lift 설치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데 가능한지와 이때 유의 사항은 (시. 내)  
**답** 기계식 주차로 주차장 확보도 가능하며 car lift 예시의 회전시 전면 공지 규정등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건설부령)에 따라야 합니다.

## ✦ 建築宣言文 / 建築 중에서

**도** 시계획은 3次元의 과학이지 2次元의 과학이 아니다. 높이라는 요소를 도입하여 만들어진 자유로운 공간의 활용을 통하여 현대의 교통문제, 또 餘暇善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한네·마이어 / Hannes Meyer

CONFERENCE CENTRE,  
PRINCETON, NEW  
JERSEY, USA

ARCHITECTS:  
FRIIS & MOLTKE

CRITICISM BY  
BODIL KJÆR

# PRINCETON SCANTICON

회의 혹은 강좌나 세미나에서 서로 교류하는데 방해가 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Scanticon Denmark는 60년 후반에 회의진행을 돕고 호응하는 성격을 띤 혼련 및 회의실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건물은 기술적 교육학적 원조와 가장 정교한 통신시설, 훌륭한 식사, 레크레이션이나 휴식을 쉽게 취할 수 있는 장소이다.

결의실(Resulting-centre)은 꽤 큰 도시 Aarhus 근처에 위치하고 언덕위의 숲은 Jutland 해안쪽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며 펼쳐져 있다.

건축가 Friis와 Moltke는 Scanticon Aarhus를 의사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장소일 뿐 아니라 최근의 덴마크 건축으로는 가장 훌륭한 작품이 되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조정하는 등 상상

력이 풍부한 설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Scanticon이 New Jersey의 Princeton 근처에 이와 비슷한 시설을 짓기로 결정했을 때 Friis와 Moltke가 (Warner Burns Toan과 Lund에 공동으로) 건축가로 선발되었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Scanticon Princeton은 푸른잔디와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와같이 내밀하고 시적(詩的) 분위기가 감도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들뜬을 거닐거나 숲속에 큰 냇자로 들어가면 그곳에 영위해 머물고 싶은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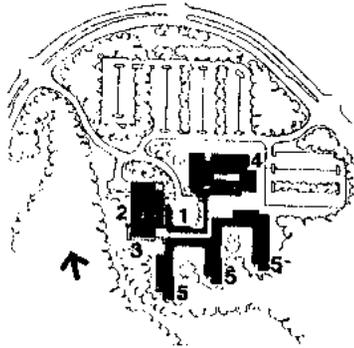
건물로 하여금 사람을 조정하고 압도하고 억누르고 이용하려는 시도는 전혀없다. 대신에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물로서 Erskine나 Aalto의 작품 속에 나타난 그런 균형을 갖고 있다.

구분구별한 길을 따라 가면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거대한 전체로 연관되면서 부잡하게 펼쳐진 개개의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어떤 건물이 나타날까 이야기하며 또 기대하면서 건물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식당의 야외코너를 통해 앞뜰이 얼핏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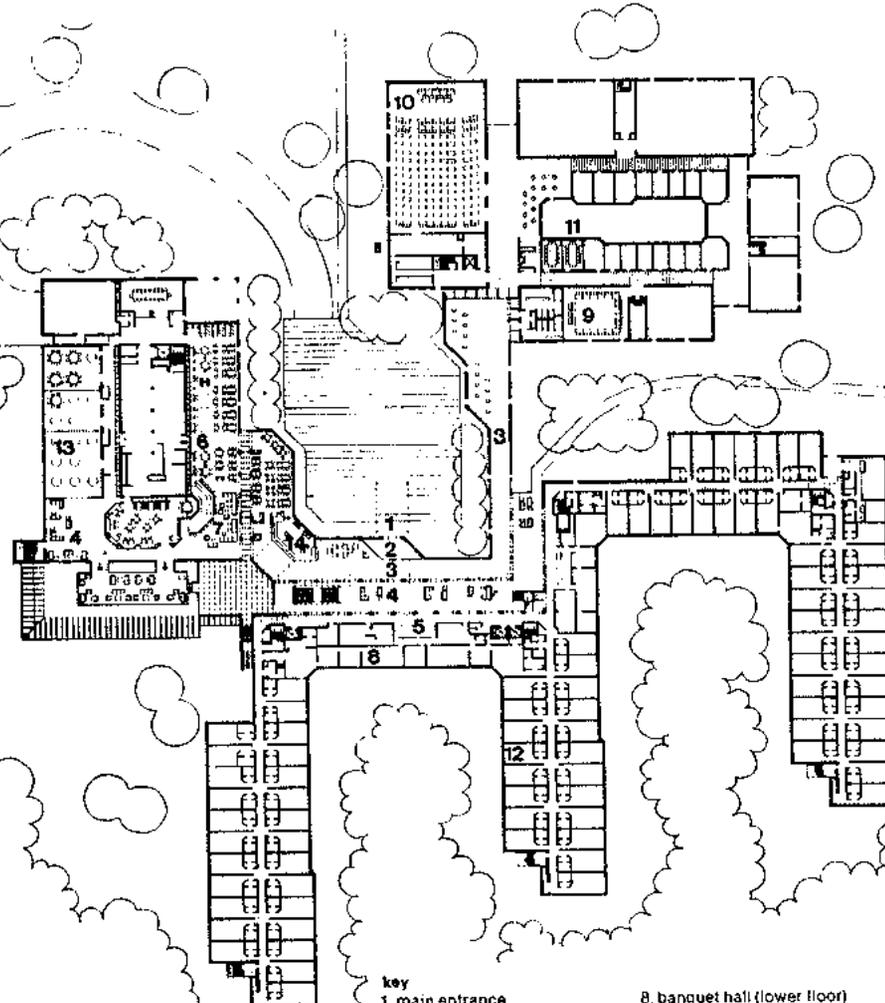
혼련 및 회의실로 둘러싸인 앞뜰은 실내 산책길, 응접실, 식당 등이 있어 방문객을 환영한다. 이와같은 환영은 앞쪽의 낮고 깊은 유리분으로 된 휴게실이 있고 사람을 초대하여 보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리셉션 빌딩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다만 Scanticon이 앞뜰에 환영사의 머릿글자를 "Super-egg"라고 알루미늄으로 설치기로 결정한 것은 슬픈 일이다. 건축가들이 리셉션 빌딩의 중앙 입구에 검은색 강철 차양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도 불행한 일이었다. 두 물체는 부적절하고 배경을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

보도와 차량통행으로 부터 나머지 구역을 구별하기 위해 앞뜰의 주위에 설치한 화강암 계선주(Bollard)는 공간에 놀라운 리듬을 창조해 낸다. 그러나 두어군데의 것들은 너무 높아 불편하다. 그것들은 1피트 정도 짧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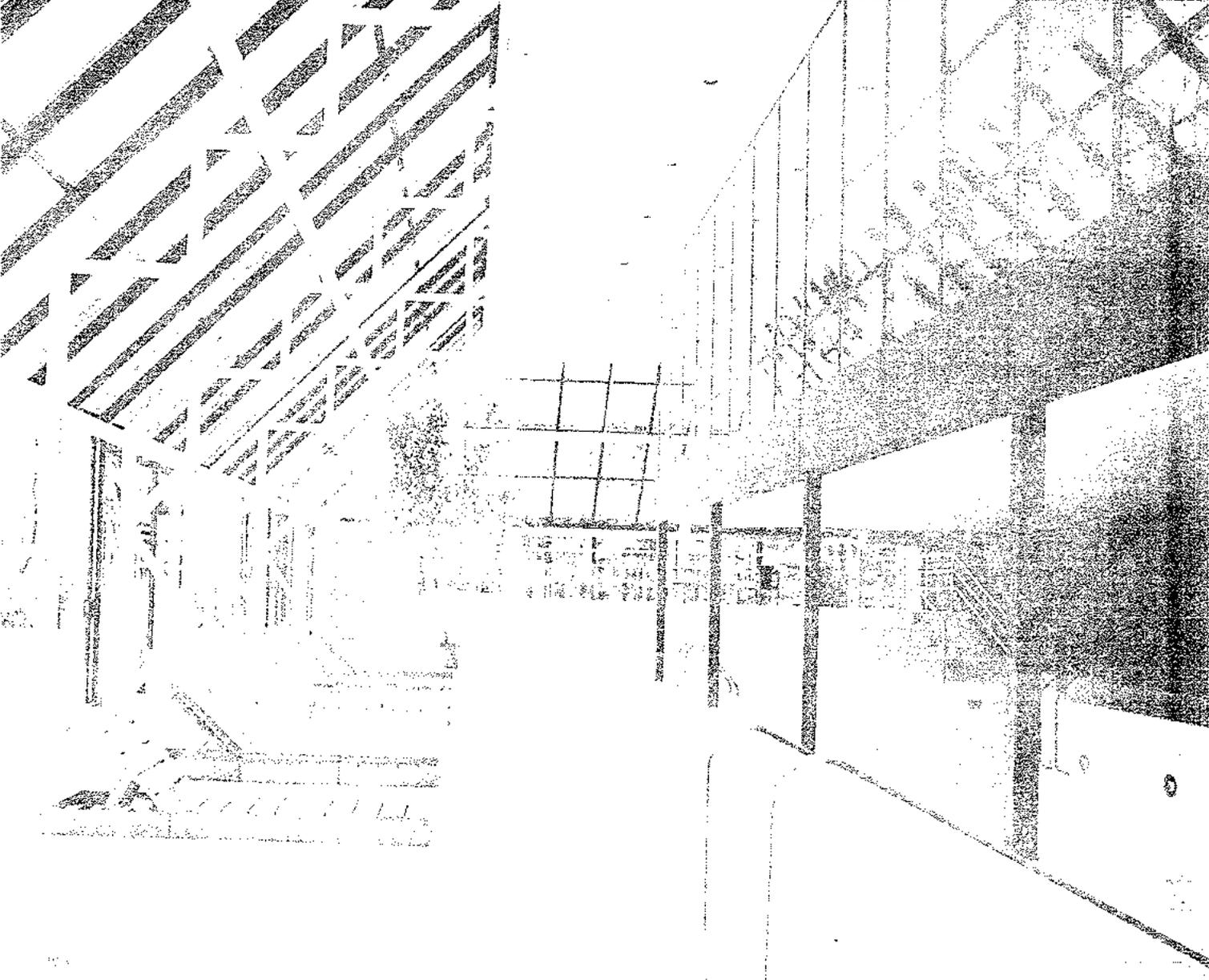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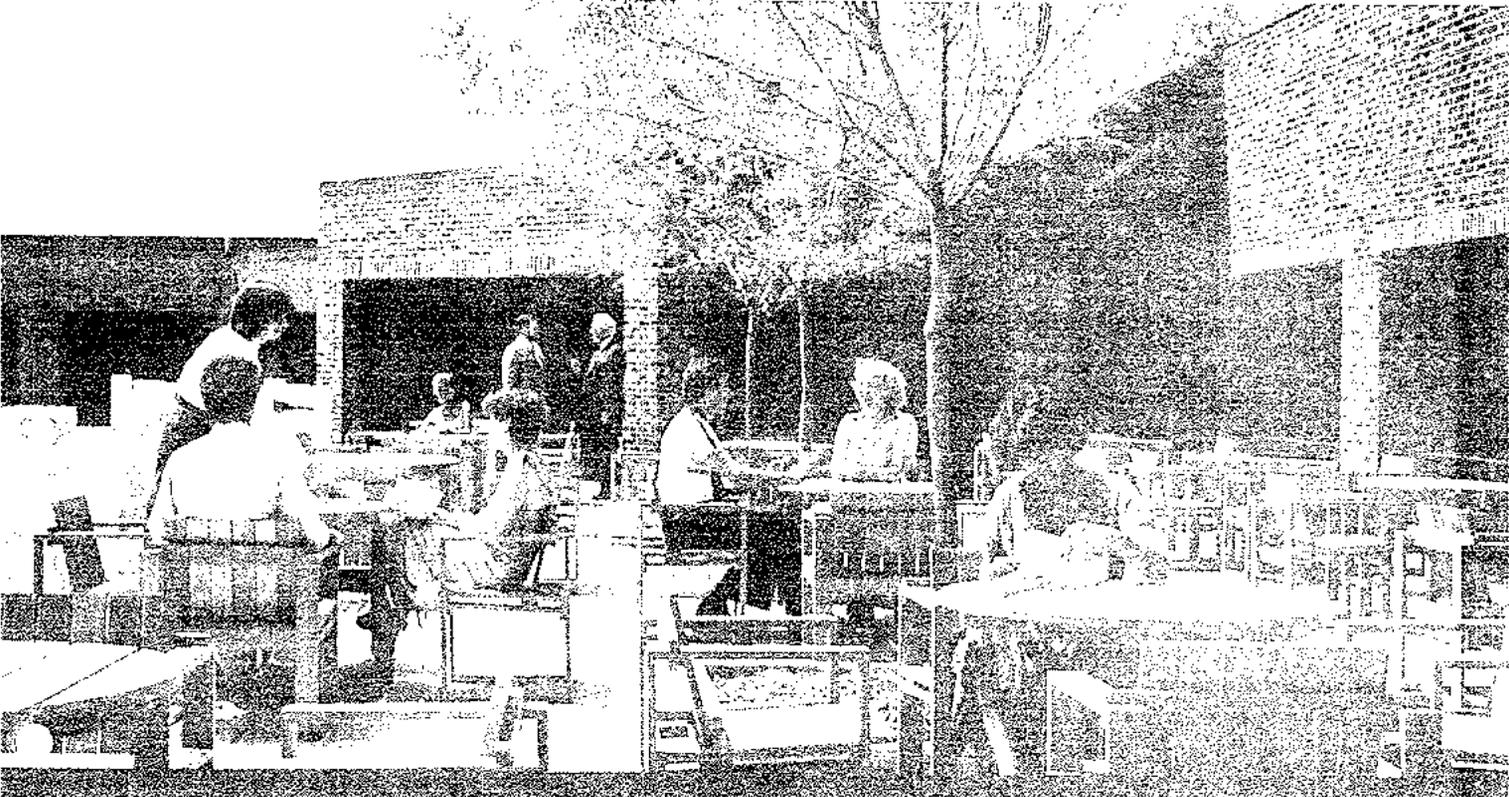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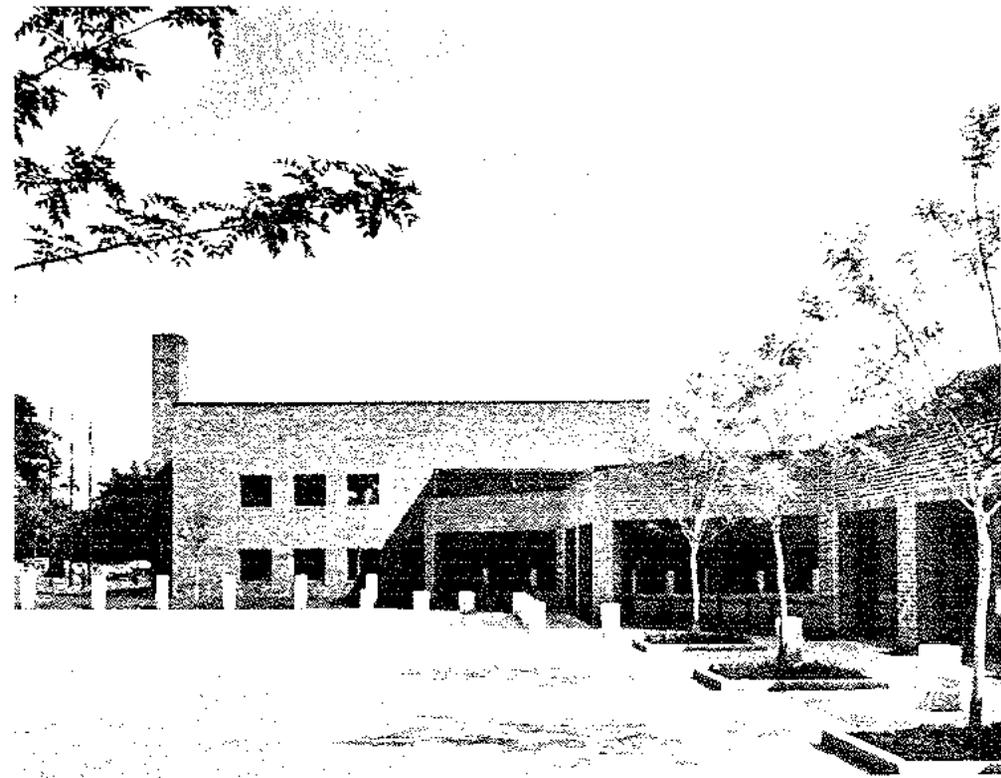
- site plan key
- 1, reception
  - 2, lounges and restaurants
  - 3, recreational
  - 4, training and communications
  - 5, hotel wings



- key
- 1, main entrance
  - 2, entryway
  - 3, lobby and interior promenade
  - 4, reception area
  - 5, reception desk
  - 6, public restaurant
  - 7, bar
  - 8, banquet hall (lower floor)
  - 9, meeting room
  - 10, auditorium
  - 11, interior courtyard
  - 12, hotel room
  - 13, private dining rooms
  - 14, lounge at entrance to restaurant

grou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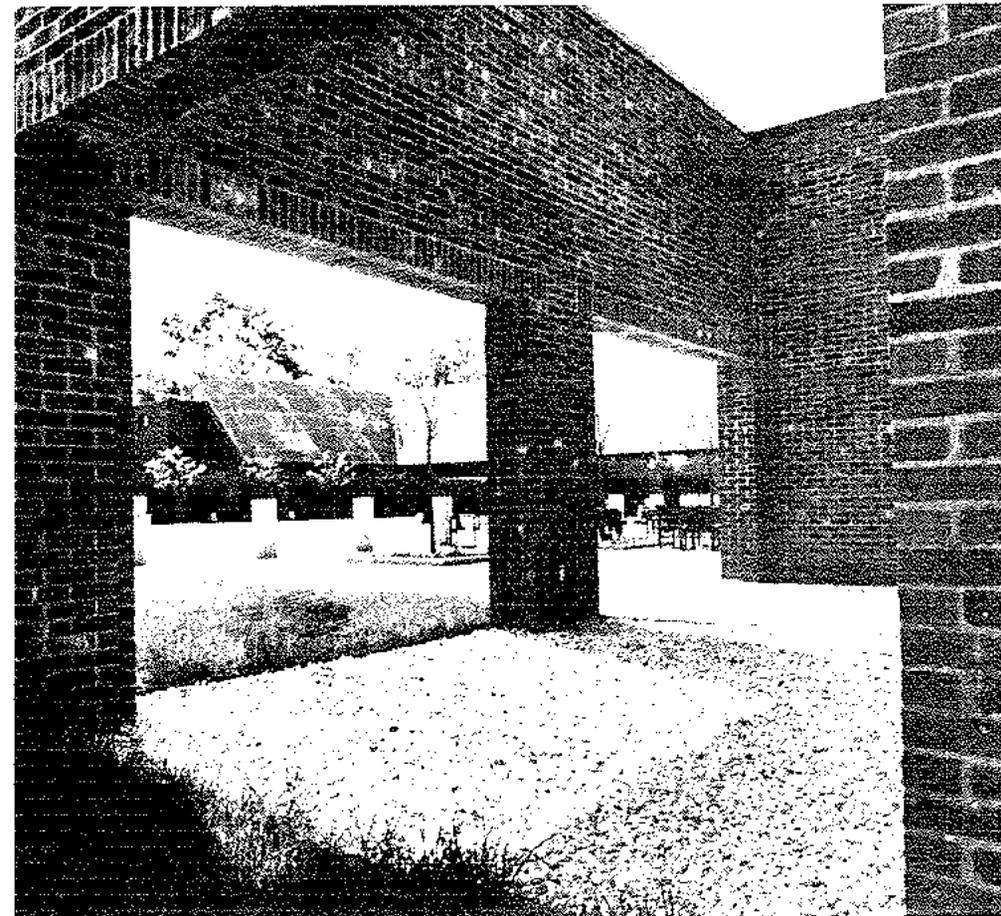


3

서 건물의 다른 것들과 평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앞뜰은 잘 균형잡힌 중앙광장으로 사용되어 휴식하기에 아주 훌륭한 장소이다.

리셉션 빌딩의 로비로 들어가는 낮고 어두어 보이는 듯한 외형은 굉장한 경이로 안겨준다. 숲에 면한 멀고 높

4



은 창문으로 부터 일광이 쏟아져 내리는 고상한 공간에 있게 된 것에 놀라게 된다.

나무 사이로 스며든 빛은 노출된 지붕 서까래를 조형하고 내부 벽돌건물과 관석바닥의 길을 나타내주며 연회장에 도착한 손님들에게 부드럽고 아



5

늑한 빛을 비쳐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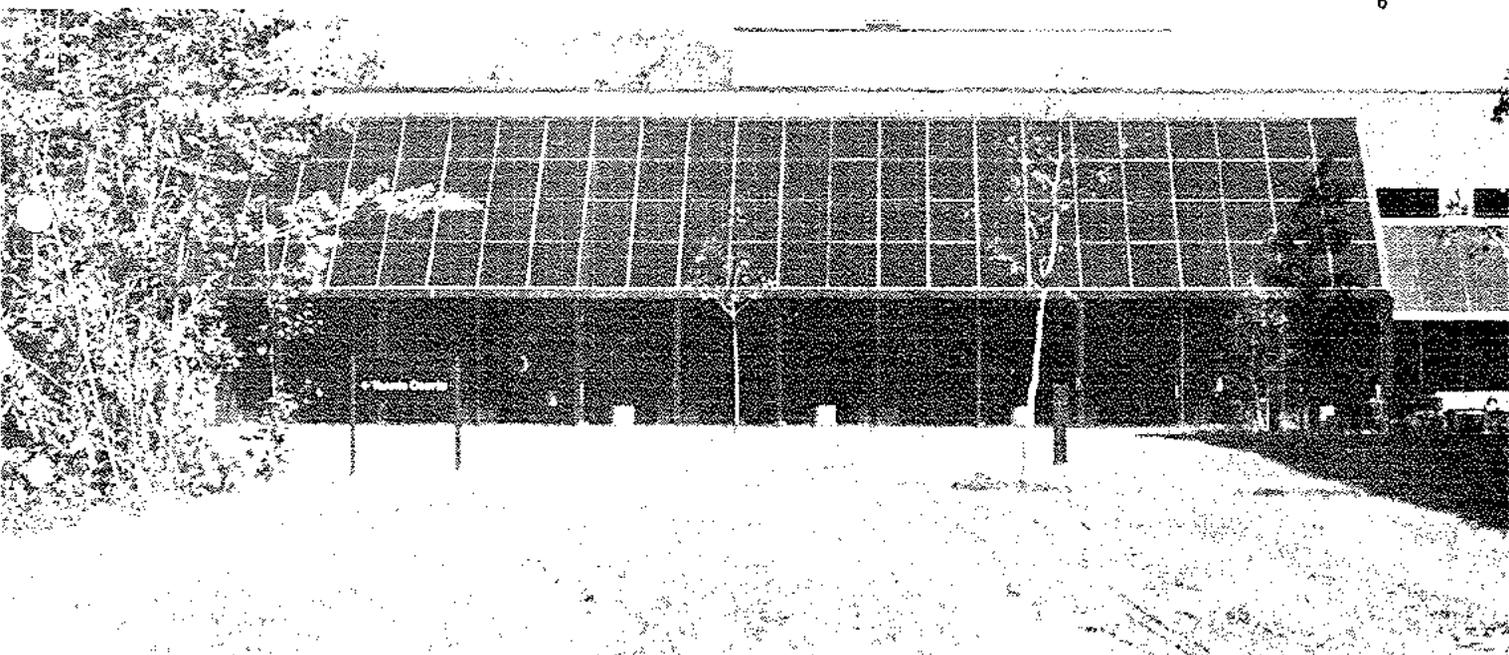
그림자없는 형광등으로 부터 지나치게 밝은 빛도 나지 않고 비닐 바른 벽도 없다. 자물쇠에 열쇠를 쥘 때 전기 충격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치게 조정된 실내기후로 부터 생겨나는 두통이나 점막의 건조도 없다.

대신에 모든 방에 충분한 일광과 아늑하고 유순한 백열등이 설치돼 있다. 빛뿐 아니라 모양이나 재료를 나타내고 공간을 넓히는 작업등(燈)도 있다.

사용된 모든 재료 대부분이 따뜻하고 다공성의 것으로 뚜렷한 표면문양을 가지고 있다. 촉감 또한 좋다. 많은 회의실과 대조를 이루어 손님들이 밀폐된 건물 안에 갇혀 지내고, 혼잡한 승강기에 실려 오르 내리며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Scanticon Princeton 이지만 어디에서나 숲, 잔디밭, 풀이나 베라스에 이르는 직통로(直通路)가 있다.

Friis와 Molke는 대부분의 회의실의 결점, "즉 의사소통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 ① 휴식처와 중앙광장으로 사용되는 앞뜰
- ② 강철 트러스와 석유리로 된 운실같은 건물 안에 있는 수영장
- ③ 리셉션 빌딩에서 보이는 앞뜰
- ④ 식당의 야외코너
- ⑤ 대중식당: 단순한 직선의 구성배치
- ⑥ 수영장과 호텔 익벽의 교차지역, 야외 좌석
- ⑦ 연회장과 인접한 실내 산책로



# 建設業에 있어서의 設計VE [I]

□ 다음에 소개하는 VE資料는 일본VE協會 소속 建設VE研究會 보고서로서 모두 8호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 호에는 1호와 2호를 소개하며 회원의 設計業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

## I 建設業에 있어서의 設計VE의 課題

일본이 VE를 도입한 것은 製造業에 있어서 原價構成比率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部品の 購買에서부터 비롯된다. 購買가 VE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고급 설계 VE와 병행하여 1972년 경부터 製造의 工程·工法·소프트(Soft) 분야에 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부터이다. 다시 말해서 VE活動, 특히 코스트의 목표를 설정하여 原價管理를 실시하였으며 그것이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는 自由裁量으로 받아들여져 현장 假設工事의 構成部材인, 극히 간단한 제품에 적용되었고, 그후 工法·設備 등에 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에는 設計·소프트의 전개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본 建設VE研究會에서도 제 1차부터 제 3차까지는 假設工事의 VE적용 사례연구가 주제가 되었고, 그후 연구회에서는 매뉴얼(Manual)을 작성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事例集의 작성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건설업에 따라서 受注時부터 계획적인 VE適用体系的 연구와 소프트VE의 현장 작업소의 시행이 검토되었으며 그것은 현재 일본 건설업계에 분명한 VE를 정착시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실시되는 목적의 가장 實戰적인 어프로치로서 행해지고 있다.

### 1. 建設業에 있어서의 設計의 特性和 問題點

종래의 建築設計는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 내는 데에 너무 치중하여 경제성·기능성이 무시되는 경향이었다. 건설업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건축주의 要求機能·코스트·意匠 등을 만족시키는 設計施工 시스템이 일관되어 왔으며 그存在

價值 또한 인정되어 왔다. 그 규모가 클수록 조직이 복잡하여 결국은 썩어 넘어짐(Sectionalism)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며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출현이 서서히 일어났다. 따라서 그 시스템이 붕괴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기본 자세로서의 기능성·경제성의 추구에는 변함이 없었다. 현재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① 건축주에 대한 뉴스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아름다움이나 예술성, 사용하기 편리한 것 등, 할 것 없이 計數化되어 제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기능만을 요구하는 건축주로부터 해어나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 건축주와 건설업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밀도있는 확인방법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투입되는 인원·물자·자금의 資源도 판단해야 한다.

② 時間的인 여유가 없다.

일반적으로 설계에 부여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경제성의 검토

마저 불충분한 사례가 많다.

③ 目標코스트가 設計者에게 주어져야 한다.

종래의 코스트 결정방법은 見積金額+利益+經費=請負金額이었다. 즉 積算에 의한 방법으로서 경비와 이익을 가산한 것이 請負金額이었으나 企業間에 코스트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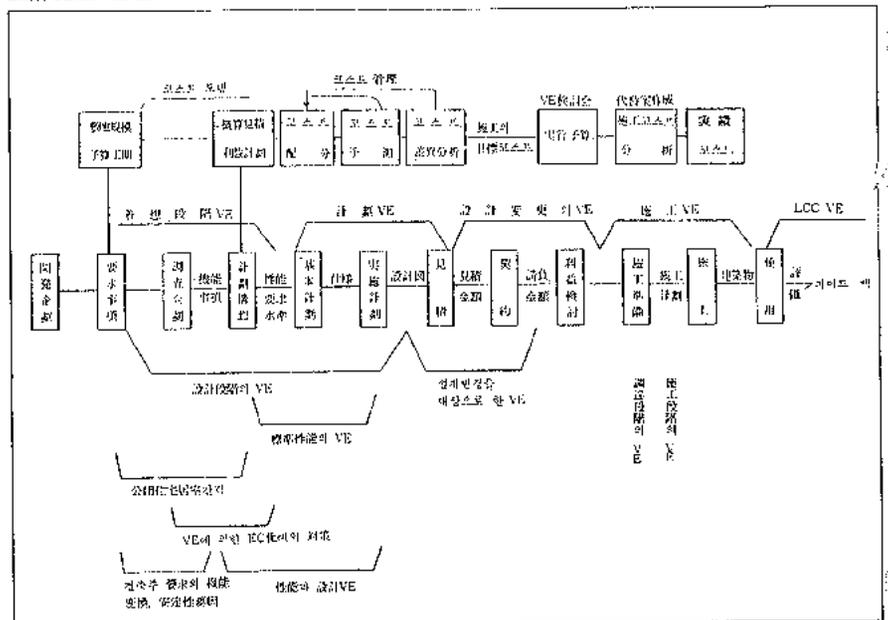
請負金額(건축주의 要求코스트) - (이익+경비) = 목표 코스트(건축주 코스트)

따라서 建設業者는 청부금액(건축주의 要求코스트) 가운데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이익과 경비를 공제한 잔금(목표 코스트)의 범위까지 건축주의 要求機能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안된다.

設計者에게 목표 코스트가 부여되지 않으면 설계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며 또한 설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코스트에 대한 책임도 애매해지게 된다.

④ 完了工事의 리뷰우(Review)와

### 設計施工 일괄방식의 VE適用方針案



## 데이터(Data)의蓄積

個別受注生産에서부터 완료공사의 리뷰이나 데이터의 축척 등이 나타난 것은 現狀肯定에 입각한 고정관념이지 단순한 拒絶反應은 아니다. 個別生産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기능으로서 파악하기 쉬운 것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제단의 기능은 그 건축물이 맨션으로나 오피스 건물로 변하지 않게 한다.

完了工事に 대한 成果會議 등의 기능, 코스트를 검토·정비하여 축적하고 이것을 다음 건축공사의 ① 코스트 ② 설계의 레벨 업 ③ 코스트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에 활용·반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 2. 建設業의 設計特性에 대한 VE 어프로우치

建設業의 특성으로서는 종래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個別受注生産, 즉 一品料理라 할지라도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② 設計者 자신이 現場의 지식·경험에 구뵐해서는 안되며 機能別 코스트의 不備에도 문제가 있다.

③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④ 設計者는 自社の 工事施工能力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동시에 現場의 施工能力에 따른 설계의 목적, 公差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 VE 어프로우치— 문제점으로 지적된 ①~④까지의 공통문제를 의식하여 설계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건축주의 要求事項을 機能으로서 포착하여 설계자에게 목표 코스트를 부여하고 부여된 계약시간 내에 정밀도가 높은 設計企劃 단계를 설정, 건축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複數 設計를 제안한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부여된 목표 코스트로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때에는 기능별 코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트레이드 업(Trade up) 내지 設計VE를 행한다. 하여간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목표 코스트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案, 要求 코스트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案 등 代替 提案를 제시하여 건축주가 취사선택

케 한다.

3. 建設業에 있어서의 設計VE 예 이상적인 모델로서는 미국의 G.S.A가 있고, 또 D.T.C가 있다. 본 연구회에서는 G.S.A의 설계업무부와 시스템에 의해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G.S.A에서는 CMr가 建築主 사이트에 있어서 性能發注·分離發注·코스트관리 등, 계약에서부터 工事完了에 이르기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G.S.A에서는 발주자 측이 機能코스트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VE 要求, 工事컨트롤, 코스트 컨트롤 등, CM의 필요성이 건설업에 있어서도 가까운 장래에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왔다. 따라서 기능과 코스트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특히 이미지 기획의 단계로서 코스트의 80%가 결정되는 것에서부터 코스트 비율이 높은 분야가 그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인식, 그리고 입자도 설계 가운데에 CMr를 육성시켜주지 않으면 안된다.

## 4. VE 어프로우치를 행할 때의 問題點

① 기능별 코스트 데이터의 未整備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스트 데이터의 대부분은 工種別·部位別 등을 정리한 것이며 性能과 코스트와의 상관관계를 묶은 자료는 아니다. 예를 들어 맨션을 건립하는 경우 遮音性を 높이고자 한다면 코스트도 높아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주의 要求機能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별 코스트 데이터의 작성이 급선무이다.

### ② 評價의 困難

소위 아름다운 예술성, 사용하기 쉽고 좋은 기능은 計量的 표현이 곤란하며 그 대상에 의해서만 主觀評價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일 뿐이다. 예술성과 아름다움의 기준은 건축주 개개인의 연령, 성장과정, 그 사람의 배경 등에 의해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 5. 設計VE의 實施

企業의 코스트 경쟁에 대응하고 장래의 CM指向遠成을 위해서도 기술적·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스트가 발생하는 부분을 포함한 팀 디자인이 필요하다.

VE로서의 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性能·納期·信賴性·保守性 등을 확보하고 그 위에 목표 코스트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와같은 설계VE 활동을 위해서는 견고한 조직이 필요하며 각 部門間的 垂直連리즘을 배제하고 자 부문의 기술 데이터, 지식을 때에 맞추어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활발한 설계VE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조직풍토의 양성이 필요하다.

설계담당자에게 설계VE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일도 중요한 요소이다. 테크닉으로서는 건축주에 대한 뉴스 확인, 목표 코스트의 설정에서부터 기획 이미지 단계에의 트레이드 업(Trade up) 등이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설계 시스템을 갖출과 동시에 어떠한 企業體態에도 합당한 실천적인 설계VE를 7어레인지(Arrange)하여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테크닉으로서의 成功 요인이다.

“불확실한 요소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고 총 자원의 有効活用을 도모화 하여 自社の 이익에 공헌하는 것이 설계VE의 사명이다.”

## II 設計VE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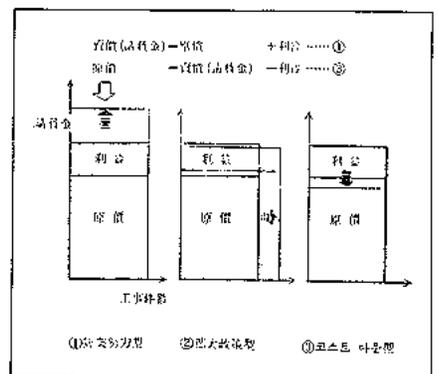
### 1. 設計VE 시스템의 目的

#### ① 目標코스트 달성의 必要性

지금까지의 建設VE는 生産現場에서의 作業所VE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설계시공 일괄수주 방식에의 지향이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着眼이 점차 고급 설계 쪽으로 향하고 있다.

다음은 馬場에 의한 企業의 圖式圖로서(圖 1) 低成長時代에 고려해 볼 만한 포라고 생각한다.

(圖 1) 企業의 圖式圖 (출처: 馬場勇, 建設코스트 다운의 手法)



② 코스트는 設計를 결정한다.

圖 2는 코스트의 결정과 발생을 표시한 것으로서, 建設프로젝트에 있어서 코스트 결정에 대한 設計段階에의 영향이 큼을 일깨워 주고 있다.

③ 高級管理와 VE효과

圖 3은 建設프로젝트에 있어서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과 VE효과를 관계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 도표에 의하여 코스트 低減의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이 예로 보아 設計VE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④ 디자인 투 코스트 (Design To Cost)

처음부터 VE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하는 것이 좋다. 그 예로 제조업의 設計部門에는 디자인 투 코스트(D.T.C: 코스트를 重視한 설계)의 수법이 좋다.

지금까지의 VE활동은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가운데에서 직접적인 VE(2nd Look VE)가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 — 결국 설계단계에 적용시켜 큰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圖 4는 三菱重工業에 있어서 D.T.C의 고찰방법이며, 그 목적은

- ㉠ 코스트와 부합되는 설계를 한다.
- ㉡ 설계단계에서 목표 코스트를 달성한다.

그 이유로는 플랜(목표 코스트의 설정과 분할), DO(설계의 노력VE활동)과 SEE(또는 체크-액션, 코스트의 평가)의 사이클을 목표달성까지 반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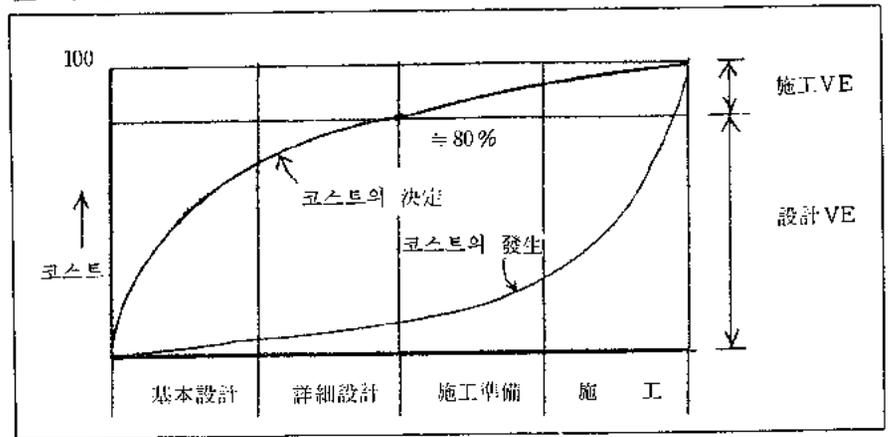
이것은 종래의 설계가 성능이나 모양이 중심으로 된 것에 반하여 D.T.C는 기술(성능)·일정(납기)과 함께 코스트에 동등한 비중을 관련시켜 설계하는 — 되풀이 하면 목표달성을 위해 코스트 가운데에서 설계하는 고찰 방법이다.

⑤ 클라이언트는 설계자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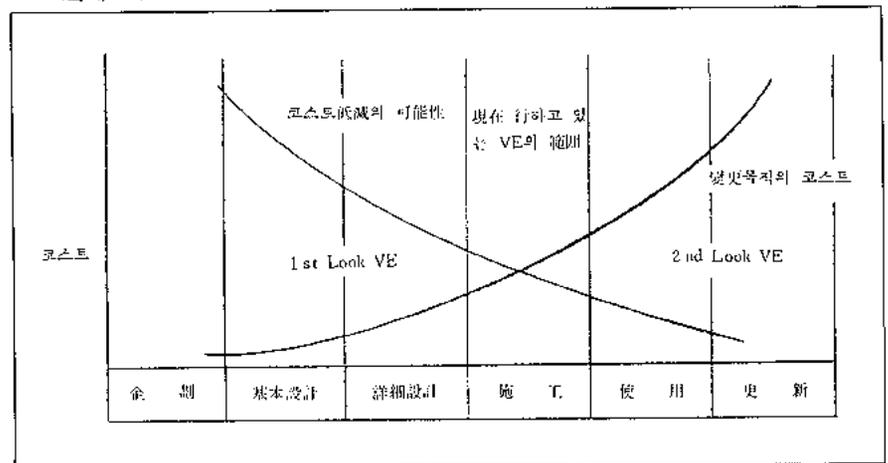
圖 5에 표시된 자료는 본 연구회의 결정단계로서 수집된 자료이며 5가지의 예를 열거하면

- ㉠ 코스트에 대한 인식의 高揚
- ㉡ 건축주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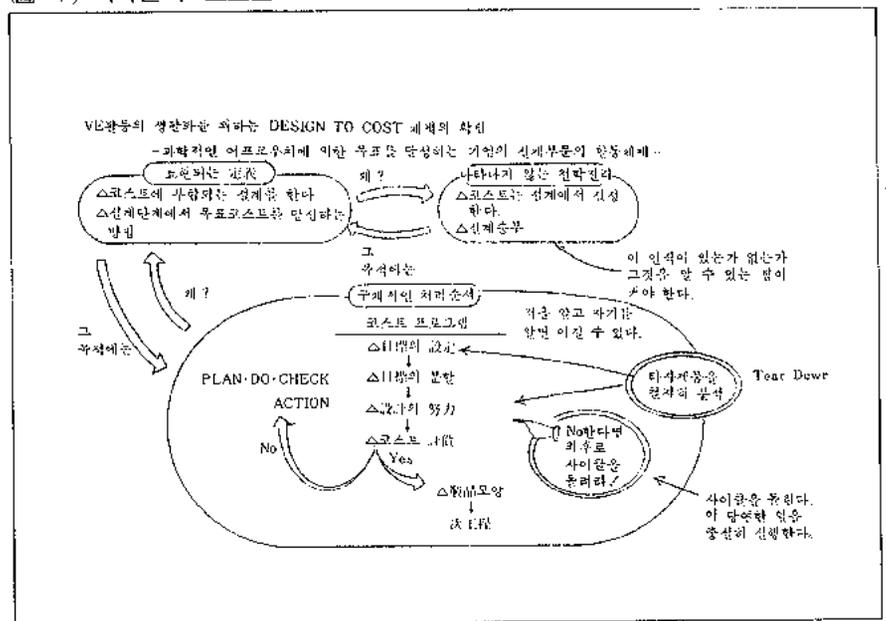
(圖 2) 建設프로젝트에 있어서 코스트의 결정과 발생



(圖 3) 建築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라이프사이클과 VE 효과 (출처: 中神芳夫, 建設에의 VE適用, 生産과 運搬 78, 9)



(圖 4) 디자인 투 코스트



- ㉔ 發注者가 전면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体制整備
- ㉕ 메인テナンス(Maintenance)의 배려 및 뉴스에의 대응
- ㉖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에의 배려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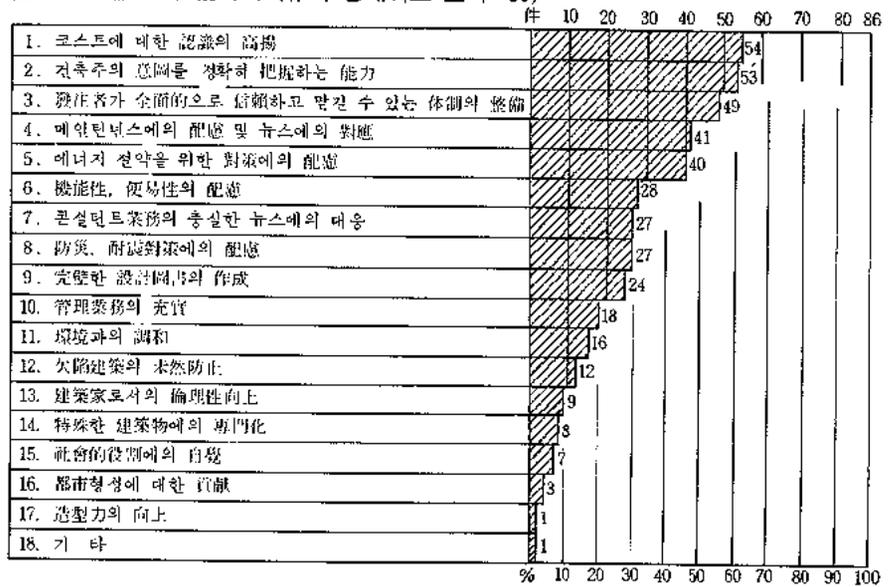
2. 設計VE 시스템의 플로트 차트 (Float Chart)

圖 7은 종래의 시스템과 設計VE 시스템을 비교한 것으로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① 니맨드 시트(Demand Sheet) : 종래에는 어느 쪽이었느냐 하면 使用要求(성능)보다는 오히려 要求事項으로서 파악되어 왔다.

② 워크 시트(Work Sheet) : 워크 시트의 특징은 이미지 스케치의 단계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설계목표 코스트를 설정하는 것이며, 使用要求로부터 抽出된 機能特性和 使用特性的 매트릭스(Matrix)에 의해서 트레이드업(Trade Up), VE 실행의 초점을

(圖 5) (출제: 日經아키텍처어 앙케이트 조사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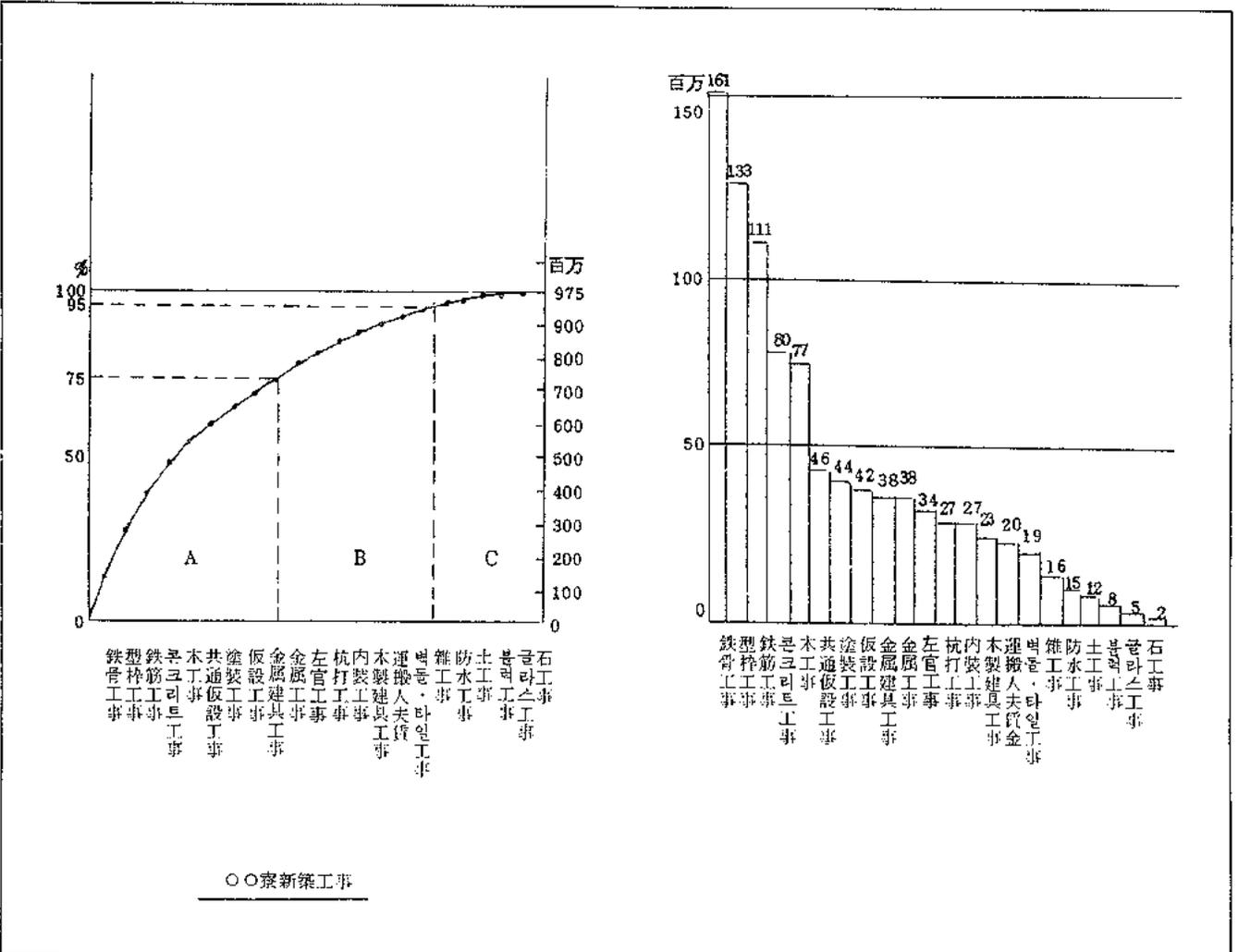
캐택한 것이다. 이것은 제조업에 있어서의 개발·설계 VE의 고찰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③ 코스트 모델과 W.B.S : 설계목표 코스트 설정 이후의 플로트에 있어서는 코스트 모델과 W.B.S (Work Breakdown Structure)에 의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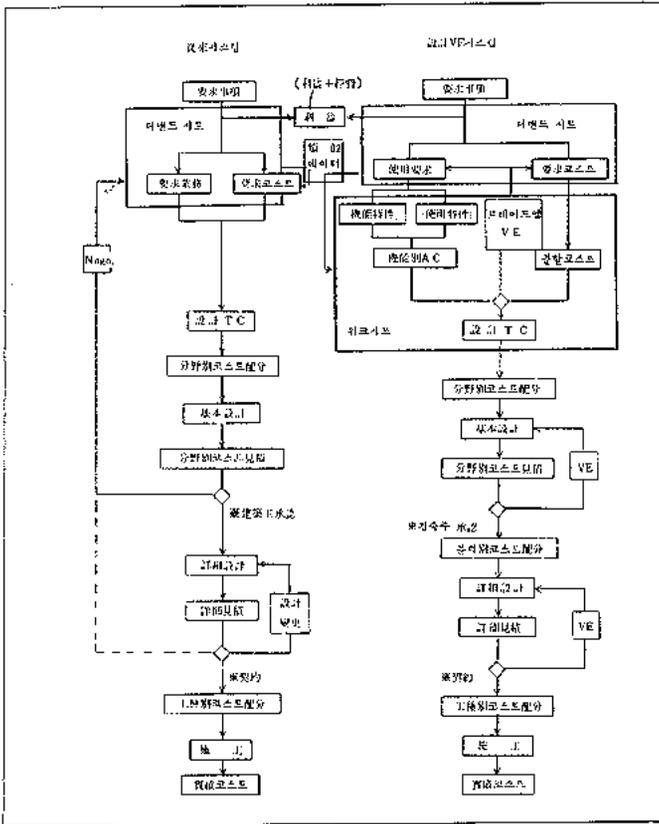
있으며 종래 시스템과도 차이가 있다.

④ 코스트 感度 : 제조업의 경우 프로젝트 매니저는 목표 코스트 配分時에 코스트 리저브(Cost Reserve)를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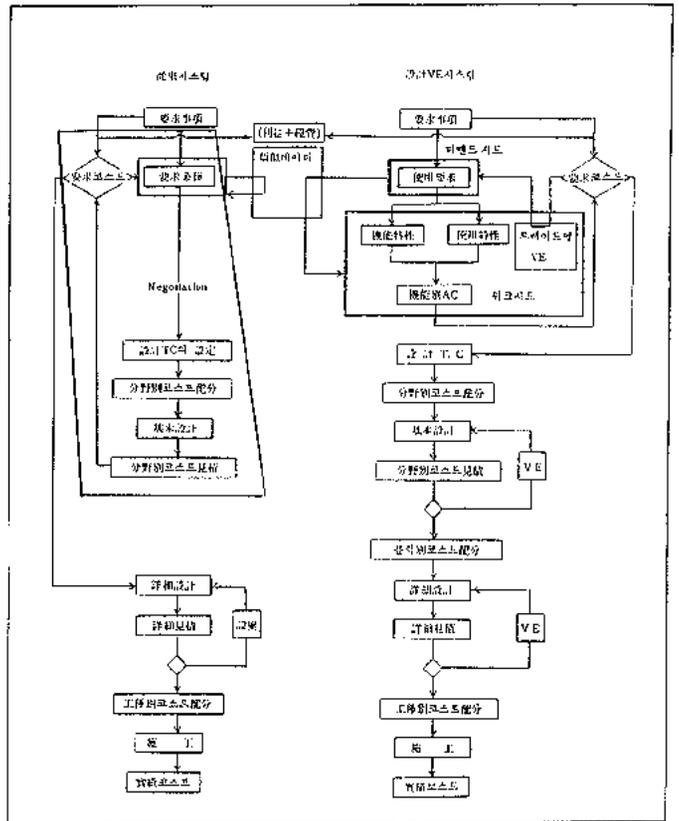
(圖 6) 퍼레이드圖



(圖 7) 従来システム과 設計VE 시스템의 比較



(圖 8) 要求コスト 경우의 플로우 차트



3. 設計VE 시스템의 목적수단

① 機能 그레이드 (Grade)와 코스트 그레이드

VE와 QC에 동시에 필요하며 그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機能의 그레이드 → 使用要求에서 오는 性能 = 使用價値

코스트 그레이드 → 企劃의 ポリシー (Policy)에 의함 = 貴重價値

② 要求事項의 파악과 디맨드 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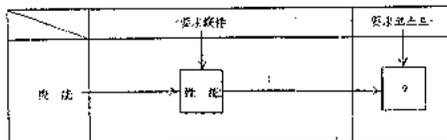
圖 9에 디맨드 시트의 內容概要를 표시하였으며, 이 시트의 목적은

① 트레이드 입을 가능케 하고

② 여유있게 VE를 확보한다.

③ 워크 시트와 설계목표 코스트

圖 10은 워크 시트의 예로서, 이때 이트릭스의 構成은 도표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워크 시트 가운데에는 要求室 1~n 에 대한 요구조건을 5단계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의 예를 표시하고 있으며, 코스트 분할로부터 설계목표 코스트의 결정까지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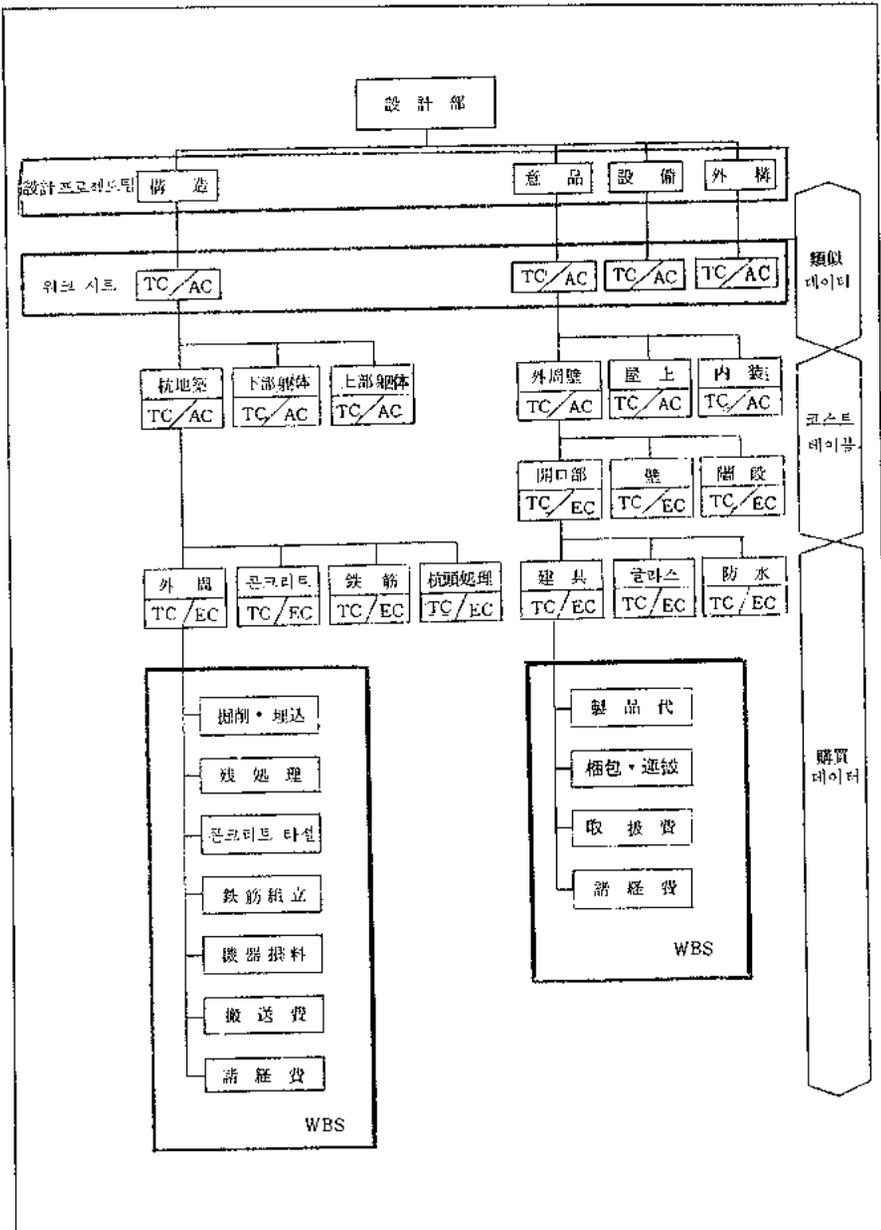
① 코스트의 분할: 이것은 要求코

(圖 9) 디맨드 시트의 概要

要求事項의分類	分類	項目	內容	備考	
使用上의 要求事項	性能	種類・程度	要求施設	駐車場 등	
			要求室		
			外裝		
			屋上		
			内裝		
			電氣	放送・TV・防犯・表示裝置	
			衛生	給湯・焼却炉	
			空調	暖房・冷房・換氣	
	搬送	エレベーター・エスケレーター			
	使用環境	自然環境		氣象・自然災害・地域の特徴	
社會環境			交通機關・交通量・公害		
保守性	保守性				
	安全性				
敷地上的 要求事項	設計	都市計劃事項	適用法規・關連法規		
		面積容積制限	敷地・道路現狀圖		
		에너지의 供給	上水・電力・電話・가스		
		地盤狀況	柱狀洞 또는 보울링		
		廢棄物處理	排水處理・塵芥處理		
		施工	既存建物等		
保全上의 要求事項	強度	隣接建物			
		搬入出의 難易			
		耐震度			
調達上의 要求事項	壽命	耐用年數	信賴度・保全性		
		設計	別途工事	家具・看板・대년트工事・支給材 등	
法規上의 要求事項	購買	指定에이커			
		指定業者			
法規上의 要求事項	施工	指定工法			
		適用法規			
法規上의 要求事項	關連法規	特許・實用新案			
		特許・實用新案			



(圖 12) 코스트 모델과 WBS의 고찰방법



後 건설업에서도 크게 취급되어야 할 수법이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自社製品과 他社製品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某 자동차 메이커의 경우는 設計段階부터 協力메이커에 參照하여 單一部品에서 部品統合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견교환을 하여 개발하고 설계에 적용시킨다.

㉔ 설계목표 코스트의 결정: 이것은 고객에 요구하는 기능에 대한 코스트를 분할하여 그것을 설계목표 코스트로서 포착하는 방법이다.

4. 코스트 컨트롤과 連結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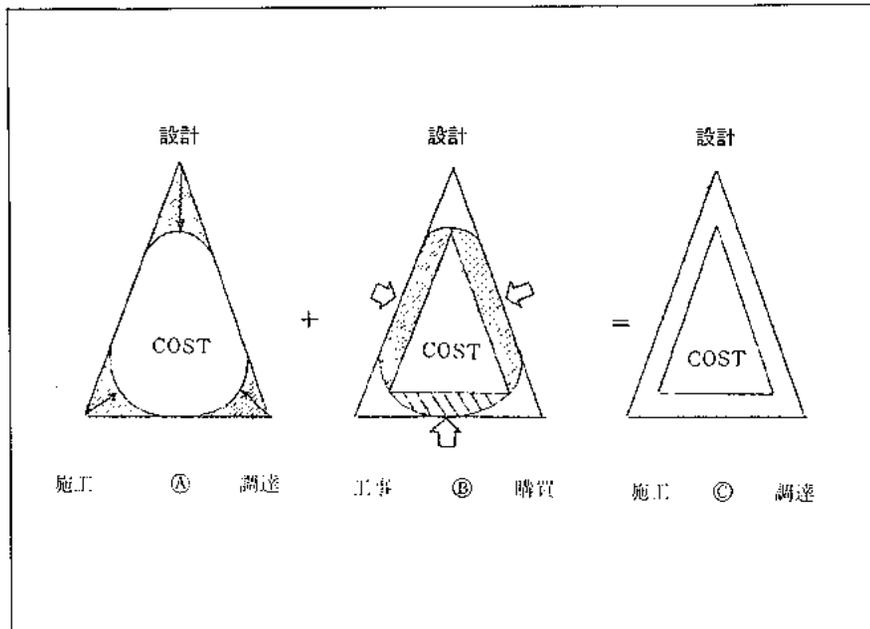
① 코스트 컨트롤과 코스트 데이터 설계목표 코스트 결정 이후는 코스트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圖 12는 코스트 모델에 있어서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를 표시한 것으로서 특히 今後の 코스트 데이터의 필요성을 示唆해 주고 있다.

類似 코스트에 대해서는 전에도 사례를 밝힌바 있으며, 지금부터 建設業의 설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忠實한 코스트 테이블 (Cost Table)에 있다. 또 購買데이터에 대해서도 현재의 情報購買부터 技術購買에의 전환이 필요하여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회의 연구에 기대해 본다.

② 連結VE의 필요성

建設設計VE 시스템의 목적과 필요성 및 순서의 概略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침을 표시하였으며,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各部會의 보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圖 13) 施工・設計・調達을 連結하는 VE



三大不正심리를 추방하자!  
 \* 부정부패심리  
 \* 물가오름세심리  
 \* 무질서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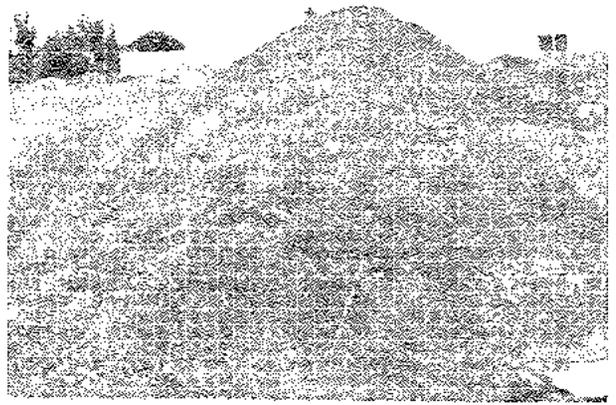
**제품명** “火山礫保温材(송이)案内

**제품의 특장**

火山礫 保温材란 火山이 噴出할 當時 自然地下 가스(GAS)로 氣泡가 形成되고 數千度の 高熱로 燒成된 火山礫을 粒度加1: 調節한 天然斷熱 建築骨材이다.

今般 弊社は 韓國南端에 위치하고 있는 國內 唯一의 火山地帶인 濟州道에 數千萬年間 放置되어 있던 老火한 量의 寄生火山礫을 10餘年間 研究 實驗하여 國內는 勿論 外國에도 火山礫骨材를 利用한 輕量 斷熱建築骨材를 開發하는데 成功 하였으며, 또한 耐火, 防音, 保温이 優秀하고 效能性도 同時에 認定받고 最近 火山礫 保温材의 供給뿐만 아니라 原資材를 利用한 多様な 種類의 輕量, 斷熱, 保温建築材를 生産하여 國內外에 供給하게 되었다.

특히 本社は 國內 唯一의 火山礫生産地인 濟州道 火山礫(송이)을 利用한 各種 建築骨材를 生産하여 輸出販賣等을 唯一하게 供給하고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火山礫 骨材〉

**송이 벽돌 試驗 成績表**

第382號

釜山地方工產品 檢査所

記 號	試 驗 項 目	試 驗 結 果
G 5	壓縮強度	61kg / cm <sup>2</sup>
G 7	壓縮強度	97kg / cm <sup>2</sup>

**火山礫(송이)骨材의 熱傳導率**

**試驗 成績書**

第3602號

公示品名: 火山礫

成 績 :

항 목	밀 도 (kg / m <sup>3</sup> )	열 전 도 율 (Kcal / mh <sup>2</sup> C)
시 료		
화 산 력	858	0.140

備考: 試驗方法, KSF 3702-79

熱傳導率은 ASTM D2326-7°에 의하였고 측정온도는 25°C 임. 끝

第3423號

公示品名: 輕量블럭

成 績 :

항 목	부피비중 (g / cm <sup>3</sup> )	압축강도 (kg/cm <sup>2</sup> )
시 료		
4" 경 량 블 록	0.94	37
6" 경 량 블 록	0.86	31

第6344號

公示品名: 輕量 斷熱, 벽돌(송이)

成 績 :

항 목	내 화 도 (SK)	열 전 도 율 (Kcal / mh <sup>2</sup> C) 측정온도 14°C
시 료		
경량 단열 벽돌	5 a	0.329

備考: 試驗方法 KSL 3113-74

KSL 910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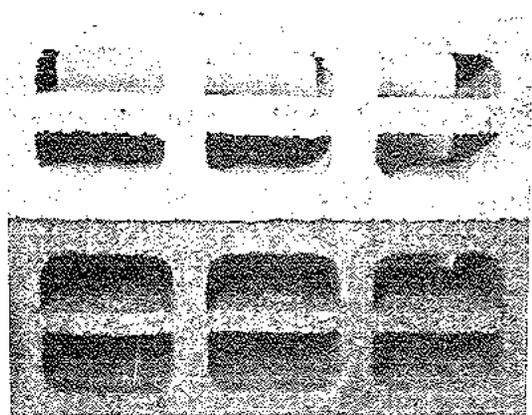
**火山礫 斷熱板**

**熱傳導率 成績**

試料 種類	項 目 單 位	密 度 (kg / m <sup>3</sup> )	熱 傳 導 率 (Kcal / mh <sup>2</sup> C)
화 산 력		665	0.095
화산력포탈(1:8)		-	0.240

**用 途**

輕量, 斷熱을 要하는 高層建物用, 호텔, 住宅, 病院, 學校, 各種 倉庫 龜裂, 結露防止, 斷熱板, 農園芸用



〈경량 및 단열 블럭〉

## 輕量 및 斷熱블럭

在來式 블럭은 空胴블럭으로서 斷熱 保溫 및 輕量建築物에는 時代의 退步된 블럭이 되어 이것을 改良하여 進歩 發展된 블럭의 特徵은 火山礫(송이) 保溫材로 構造에 있어서 外壁과 内壁間에 冷暖 空氣를 遮斷시키는 中間隔離 칸막이를 만들고 블럭의 구멍...部를 막아서 壁 築造時는 獨立된 구멍을 形成케 하므로서 築造 施工時에 接着 물달이 下落되는 물달의 낭비가 防止되며 完壁한 獨立된 密閉구멍이 되어 熱貫流率이 效果를 얻을 수 있는 特殊한 블럭으로 熱管理에 40%以上의 熱損失을 利得할 수 있다.

## 火山礫(송이) 保溫材란 ?

### ● 火山礫의 特徵

에너지節約에 火山礫 保溫材는 火山의 火道口로부터 噴出되는 其本物質은 高圧가스와 硅酸鹽에 녹는 돌 즉 溶岩이고 火道로 噴出된 物質은 스킨리아(SCORIA)라고 하며 火山이 暴發當時 堆積된 火山礫(송이)는 龍大한 賦存資源으로 우리나라에는 濟州道만이 있는 唯一無二한 天然의으로 堆積되어 方大한 建築 骨材이다.

天然의으로 高溫高壓가스에서 燒成된 火山礫(송이)은 多孔質로 氣泡가 均一하고 強度가 強하여 輕量 및 斷熱材이며 建築用 骨材로서는 如何한 人工骨材에 比할 바가 아니며 半永久的, 遜色없는 것이다.

自然이 豊富하고 埋藏量이 龍大한 賦存資源으로서 原資材 生産作業이 路天에서 할 수 있는 天然骨材이므로 人工의인 骨材와는 달리 燃料費가 들지 않으므로 廉價로 生産이 可能하며 에너지 節減은 말할 必要도 없다.

### ● 송이판넬의 特徵

1. 輕量性 一般壁體 벽돌 및 블럭보다 半 가볍다. 施工이 簡便하고 大幅 短縮되고, 工事費가 節減된다.
2. 輕量斷熱 및 耐火性 不燃材로서 高度의 斷熱性으로 普通 콘크리트 住宅에 比하여 冷, 暖房費가 約 40% 節減된다. 側定溫度 Kcal/mh°C, 熱傳導率 0.20~0.3 斷熱 SK 耐火度 5a이다.
3. 防音 多孔質輕石(송이) 吸音效果가 크므로 重量이 가벼운데 比해 遮音性도 좋고 칸막이 板材인 境遇 100 C/S의 損失은 약40d/b音타 데시벨이다.

### ● 經濟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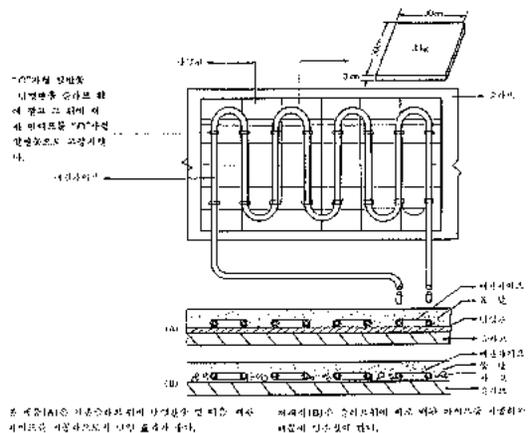
本社에는 製品化하여 加工販賣되는 벽돌, 블럭, 斷熱板 및 P.C판넬 등은 住宅 및 建物의 内外壁 特別 高層建物, 호텔建物은 輕量 遮音이 特性에 따라 使用할 수 있으며 그 輕量性과 斷熱 및 耐火性, 防音이 效果를 가질뿐만 아니라 組立式 部材나 加工性 등에 優雅한 色彩를 구사할 수 있게되어 組積費의 節減은 勿論 工事期間과 作業人員 減少, 建築物의 自重輕減 및 施工上의 粗雜을 避할 수 있어 建築用으로 多樣하게 利用될 수 있는 것이다.

輕量斷熱板: 溫突·壁·天井의 特徵

1. 住居用 溫突 및 바닥板은 火山礫(송이) 保溫材로 된 斷熱板인 것으로서 熱損失을 防止하는 溫突바닥板이다.
2. 콘크리트 바닥위에 나란히 퍼므로 파이프 配管을 適當한 間隔으로 安全한 均衡을 잡게된다.
3. 溫突바닥板에는 동기로 벤드를 固定시키므로서 迅速한 配管이 용이하다.
4. 溫突바닥 面積의 大小 不規定時에도 斷熱材로 된 一定한 規格 溫突바닥판이므로 施工時間이 短縮되고 未熟練工으로도 配管이 용이하며 一般 卍字型 鉄못을 木材와 同...하게 박는다.
5. 溫突 바닥施工時間 短縮과 施工이 용이하므로 施工人件費가 絶約된다.

## P·C 판넬

1. 規格品 生産工業化(組立式部材)
2. 高層建物 内外壁, 바닥, 지붕用



- 본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0-10  
TEL 752-0145, 778-8515
- 제주 : TEL 2-2737
- 청주 : TEL 3-2610
- 홍릉지사 : TEL 5-441993, 5-435194



P.Z.L  
新多琨開發公司

# 개 정 법 령

## 건축법시행규칙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건축허가신청등) ① 영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 4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영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법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배치도와 별표 1 의 4 란, 5 란 및 9 란의 해당도서를 첨부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별표 1 의 1 란의 도서(도시계획구역외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탄의 도서중 배치도 및 평면도에 한한다)

3. 별표 1 의 2 란 내지 9 란중 건축물의 구조·용도 및 규모에 따른 각 해당란의 도서

② 영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 호 서식의 대수선허가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 48 조 및 영 제 9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 호 서식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첨부도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구조내력·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④ 법 제 49 조 및 영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 또는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허가를 신

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 호 서식의 공작물축조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과 당해 건축물에 부수되는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및 도서에 공작물등의 축조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작물축조허가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한다.

1. 공작물등을 축조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 공작물등의 배치도

3. 공작물등의 구조도

⑤ 시장·군수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정한 첨부서류 및 도서외에 법·영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3 조 (건축허가서등) ① 법 제 5 조 제 1 항, 법 제 48 조 및 법 제 49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및 공작물축조의 허가서는 별지 제 1 호 서식·별지 제 2 호 서식·별지 제 3 호 서식 및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 5 조 제 2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의 건축등 불허가통지서는 별지 제 5 호 서식에 의한다.

제 4 조 (증축등의 신고) ① 영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제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6 호 서식의 증축등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 1 항의 증축등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 6 호 서식의 신고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건축허가수수료) 영 제 5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단복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법 제 4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가 있는 구역안에서 그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건축허가대장등) 시장·군수는 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항을 법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 7 호 서식의 건축허가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 (위법사항의 보고등) ① 공사감리자는 법 제 6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에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가 불응한 때 또는 그 시정을 권고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그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안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8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 6조제 8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 9호서식에 의한다.

**제 8 조 (착공신고등)** ①영 제 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 10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의하고, 완료에 관한 신고(이하 "준공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 11호서식 또는 별지 제 12호서식(용도변경 또는 공작물등의 축조의 경우에 한한다)의 준공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 9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 11호서식 또는 별지 제 12호서식(용도변경 또는 공작물등의 축조의 경우에 한한다)의 준공신고서에 의한다.

③제 2조제 5항의 규정은 제 1항의 준공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9 조 (가사용승인신청)** ①영 제 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신청은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 10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서는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다.

**제 10 조 (중간검사)** ①영 제 1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신청은 별지 제 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 11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은 별지 제 14호서식에 의한다.

**제 11 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 12조제 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 2조 각항에서 정한 해당서류 및 도서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협의서"로, "허가신청"은 "협의"로 한다.

**제 12 조 (검사업무의 대행등)** ①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 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 그 업무대행을 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준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와 관계도서에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 27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서에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 27호의 2 서식의 건축물준공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 또는 준공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축등허가서 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심의 또는 승인등을 얻어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 5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2. 미관지구·특정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또는 법 제 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한 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제 13 조 (옹벽의 구조등)** 영 제 14조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옹벽의 경사도·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이하일 것.

구분 \ 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맷 쌓기	1 : 0.30	1 : 0.35	1 : 0.40
찰 쌓기	1 : 0.25	1 : 0.30	1 : 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재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구분 \ 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석축용돌의뒷길이 (센티미터)	30	40	50
뒷재움돌의두께 (센티미터)	상부 30 하부 40	30 50	30 6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층수	1 층	2 층	3 층이상
떨어거리 (미터)	1.5	2	3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강관 또는 흙관으로 하고, 이 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등 시장·군수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법 제 9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 불등은 토지 굴착으로 인하여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그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이상 굴착할 때에는 그 경사도

가 토질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따라 위해방지를 위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암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토 질	경사도
경 암	1 : 0.5
연 암	1 : 1.0
모 래	1 : 1.8
모 래 질 흙	1 : 1.2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점토, 점성토	1 : 1.2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 : 1.5

4. 굴착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할 때에는 주변의 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퇴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시장·군수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으로 보아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과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이하 "식생"이라 한다)등을 할 것. 다만, 식생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식생만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콘크리트블럭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거실의 조명)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3에 정하는 조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차음구조)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각세대간의 경계벽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럭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 외에 전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차음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제17조 (계단의 구조) ①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 및 계단참의 폭·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다음의 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옥외계단(주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한다)의 단높이는 23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센티미터)

계단의 종류	계단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단너비
국민학교의 학생용계단	150이상	16이하	26이상
중·고등학교의 학생용계단이나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	150이상	18이하	26이상
그 바로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지상층의 계단이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의 계단	120이상	20이하	24이상
기타의 계단	75이상	22이하	21이상

② 제1항의 경우에 들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쪽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③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또는 신체장애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측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온돌의 구조) 법 제23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누출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고정식연탄아궁이의 연소통의 주위벽, 이동식연탄아궁이의 함실벽과 아궁이 및 그 바닥에는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온돌단열층(시멘트와 연탄재를 1 : 7의 용적비로 배합하여 시공하는 시멘트모르타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열전도저항의 값이 0.5이상인 재료로 시공한 단열층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열전도저항의 값은 1킬로칼로리당 제곱미터 시간 섭씨도(m<sup>2</sup>h °C / Kcal)로 나타낸다.
3. 온돌의 고래바닥과 두들벽에는 물이 고래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처리를 하고,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온돌단열층 또는 열전도저항의 값이 1.5이상인 재료로 시공한 단열층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열전도저항의 값은 1킬로칼로리당 제곱미터 시간 섭씨도(m<sup>2</sup>h °C / Kcal)로 나타낸다.

4. 고레바닥은 연탄가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 : 5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5. 부뚜막석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6.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분배관 및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제19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난방설비를 하는 거실의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별표 4에 정하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 거실의 외벽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은 열관류율의 값이 0.5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두께이상인 단열재로 단열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당 킬로칼로리(Kcal/m<sup>2</sup>h℃)로 나타낸다.
2.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은 열관류율의 값이 1.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두께의 2분의 1이상인 단열재로 단열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당 킬로칼로리(Kcal/m<sup>2</sup>h℃)로 나타낸다.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은 열관류율의 값이 3.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2중창 또는 복층유리(페어그라스)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당 킬로칼로리(Kcal/m<sup>2</sup>h℃)로 나타낸다.
4.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출입문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출입문에는 턱솔개탕·풍소란 또는 "문소란" 등을 만들어 기밀성능이 있도록 할 것.

제20조 (배연설비) 영 제41조제 3항의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54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있어서의 배연 설비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효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 하여 외기 또는 굴뚝(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을 말한다)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여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항상 폐쇄상태를 유지하고, 개방시에는 배연에 따라 발생하는 기류에 의하여 닫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배연구가 직접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구는 배연구의 개방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 배출능력을 가진 것으로 할 것.
6. 배연구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제21조 (헬리콥터착륙장의 설치기준) 영 제4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헬리콥터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착륙대의 길이와 폭은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폭이 각각 2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을 각각 10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착륙대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벽으로서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착륙대의 주위 한계선은 백색으로 표시하되, 그 선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착륙대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H" 표시를 백색으로 하되, "H" 표시의 선너비는 38센티미터로, "C" 표시의 선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제22조 (배관설비)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콘크리트에 묻히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재질에 적합한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 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것외에는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정장치를 설치할 것.
-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로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음로수용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2. 음로수의 배관설비는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로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 급수관이 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급수탱크 및 저수탱크에는 위생상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금속성의 탱크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수용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④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가스사업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환기설비)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가. 환기에 적합한 급기구 및 배기통을 갖출 것.
- 나. 급기구는 거실의 반자높이의 2분의1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외기에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 다. 배기구(거실에 면하는 배기통의 개구부를 말한다)는 거실의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 라.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마.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바. 급기구·배기구 및 배기통의 최상부에는 빗물 또는 위생상 유해한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2.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가. 환기에 적합한 급기기 및 배기기를 갖추거나 급기기 및 배기구나 급기구 및 배기기를 갖출 것.
- 나. 급기구 및 배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공기의 기류가 국부적으로 현저히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급기구 또는 배기구에는 빗물 또는 위생상 유해한 먼지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라. 급기구 또는 배기구에 설치하는 환기팬은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환기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마. 풍도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할 것.

3.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준하는 구조로 하는 외에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구 분	기 준
공기중에 섞여 있는 먼지의 양	공기 1제곱미터당 0.15밀리그램 이하
일산화탄소의 함유율	1백만분의 10이하
탄산가스의 함유율	1백만분의 1천이하
상 대 습 도	40퍼센트이상 70퍼센트이하
기류의 이동속도	1초간 0.5미터이하

제 24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53조 본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대수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탑승인원수에 따라 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

6층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이하	3천제곱미터초과
의 료 시 설	2 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관람집회시설		
판 매 시 설		

전 기 시 설 위 탁 시 설 숙 박 시 설 업 무 시 설	1 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교육연구시설 공 동 주 택 노 유 자 시 설 기 타	1 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제 25조 (승용승강기등의 구조) ① 승용승강기 및 영 제5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승용승강기(이하 “승강기”라 한다)는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승강기의 각 부분은 승강기안의 사람 및 물건에 의한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2. 비상시 안전하게 승강기의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3. 승강기(침대용승강기를 제외한다)에는 2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용도 및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을 명시하는 표지를 승강기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 ② 승강기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승강기마다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에는 다음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및 승강로의 출입구문이 모두 닫히지 아니하면 승강기가 승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2. 승강로의 출입구문은 승강기가 그 문의 위치에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열리지 아니하는 장치
3. 승강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 때에는 동력을 자동적으로 끊는 장치
4. 동력이 끊어질 때에 타성에 의한 원동기의 회전을 방지하는 장치
5. 승강기의 하강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 때에 자동적으로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
6. 승강기가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할 경우에도 승강기안의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7. 정전등 비상시에 승강기안에서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장치
8.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하고 출입구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
9. 정전시에도 1룩스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장치

④ 비상승용승강기는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 26조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에스컬레이터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람 또는 물건이 시설의 부분사이에 끼거나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도는 30도이하로 할 것.

3. 디딤바닥의 양측에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상부가 디딤바닥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구조로 할 것.

4. 디딤바닥의 정격속도는 분당 30미터이하로 할 것.

제27조 (변소의 구조등) ① 변소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직접 외기에 변하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변소로서 이에 대체되는 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거식변소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불침투질의 변기를 설치할 것.
2. 소변기로부터 변조까지는 불침투질의 오수관으로 연결하고, 그 이음부분의 주위는 방수조치를 하여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변조는 내수재료를 사용하고 유효한 방수 조치를 할 것.
4. 변소의 창 기타의 환기를 위한 개구부에는 방충망을 설치할 것.

③ 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로부터 10미터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 아래 3미터이상의 깊이에 묻은 폐쇄식우물로서 그 도수관에 바깥관이 있고, 그 도수관 및 바깥관이 모두 불침투질로 된 경우에는 그 거리를 2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제28조 (하자보수) 영 제93조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하자"라 함은 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의 하자로서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등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 균열·처짐·비틀림·돌출·내려앉음·파손·무너짐
2. 누수 기타의 누출
3. 작동의 불량등 기능불량
4. 전선등의 접지 및 연결등 불량

제2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표지) ① 법 제42조 제5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라 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법건축물표지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위반건축물설계자등의 보고) 법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신분증명서)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행하는 공무원이 휴대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47조 제2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이재민의 임시수용등 재해구조를 위하여 건축하는 것과 이재민이 스스로 임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시장·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에 설치하는 가설홍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으로서 1년이내의 기간동안 존치하는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4. 시장·군수가 도로변부의 미관정비를 위한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가설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안전·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

5.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것.

②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 (건축허가표시)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① 3층이상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의 주위에는 그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상 되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주위시설물이 있거나 공사현장의 주변환경 또는 공사의 상황에 따라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현장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미터 이내이고,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이상인 곳에서 찌꺼기 자제등을 투하할 때에는 다스트슈트를 사용하는등 공사현장 및 주변에 찌꺼기자제가 흩어져 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용자재는 무너져내리는 경우등에도 그 위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안전하게 쌓아두어야 한다.

④ 공사중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불연재료로 구획하는등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지하층실치의 특례)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이라 함은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가 1제곱미터마다 20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6조 (경사도의 표시방법) ① 제13조 제1호 및 제14조 제1항 제3호와 영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도의 표시는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수평거리:높이)에 의한다.

②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레바닥의 경사도, 영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 및 영 제9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붕의 물매의 경사도의 표시는 수평거리에 대한 높이의 비율(높이:수평거리)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축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 2 조 제 1 항 관련]

구분	건축물의 종류	도서의 종류	축적	표시하여야할 사항
1	건축허가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배치도	임의	1. 축적 및 방위
				2. 대지면적·건축선·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4.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5. 옹벽·우물·배수 시설·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 기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위치
				6.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위치
				7. 공사기간중의 도로점용범위
	각 층 평면도	50분의1 내지 300분의1		1. 축적 및 방위
				2. 자실의 용도 및 면적
				3. 기둥·벽·개구부의 위치 및 치수
				4.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5.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6. 비상용승강기·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2면 이상의 입면도	50분의1 내지 300분의1		1. 축적
				2. 외벽의 마감재료
				3. 개구부·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4. 굴쪽의 옥상들출부
				5. 국기계양대
	2면 이상의 단면도	50분의1 내지 300분의1		1. 축적
				2. 건축물의 높이, 자층의 높이 및 반자 높이

		상세도	임의	1. 축적 2. 벽·기둥·바닥·보·지붕·처마 및 반자의 구조(단열재료의 종류 및 두께 또는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3. 방화문의 구조 4. 계단 또는 경사도의 구조
		공사시방서	—	1. 도면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재료의 품질 및 공법등 2. 기타사항
2	영제1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구조안전의 확인대상 건축물)	구조계산서	—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의 응력산정 및 단면산정의 과정
		구조도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부재의 접합부분의 상세
3	법제23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내장재의 규제대상 건축물)	실내 마감표	—	벽 및 반자의 마감재
4	법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오수정화시설 등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도	30분의1 내지 50분의1	1.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평면 및 중·횡단면 2. 구조계산과 정화도의 산정(처리대량인원 500인이상의 경우에만 한한다)
5	영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조경의 무대상 건축물)	조경계획	임의	1. 식수 및 조경구조물의 배치 2. 식수면적의 계산
6	건축설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설비도	임의	1. 비상용승강기·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치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

7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 필요하는 건축물	소 방 설비도	임 의	비의 설치계획 육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 배연설비, 연결상수관,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계획
8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를요하는 건축물	주차장 평면도	50분의1 내지 300분의1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9	토지의형질변경을요하는 경우	토지의 지형 평면도	임 의	1. 축척 및 방위 2. 중·횡단선 3. 구조물의 위치
		토지의 단면도	임 의	1. 축척 2. 단면상세 (구조물 및 인접토지를 포함한다)

[별표 2] 건축허가수수료 (제 5조관련)

면 적	금 액 (원)
200 제곱미터 미만	5,000 2,000 (단독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200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10,000 3,000 (단독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25,000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50,000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10,000
3만 제곱미터 이상	200,000

비고: 위의 금액은 허가 1건당 액수임.

[별표 3]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제15조관련)

거실의 용도구분		조도 구분	바닥위 85센티미터의 수/평면의조도 (룩스)
1.거주	독서·식사·조리		150
	기타		70
2.집무	설계·제도·제산		700

	일반사무	300
	기타	150
3.작업	검사·시험·정밀검사·수술	700
	일반작업·제조·판매	300
	포장·세척	150
4.집회	기타	70
	회의	300
	집회	150
5.오락	공연·관람	70
	오락일반	150
	기타	30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것.		1란 내지 5란에 유사한 기준을 적용함.

[별표 4]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 완화구역 (제19조단서관련)

도 별	시	군
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순천시	
	영광군·함평군·신안군·무안군·영암군	
	해남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진도군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	
	월성군·영일군·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상남도	마산시·울산시·진주시·창원시·진해시	
	충무시·삼천포시·김해시	
	하동군·진양군·사천군·남해군·의령군	
	고성군·통영군·거제군·함안군·밀양군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	

[별표 5] 단열재의 두께기준 (제19조 제1호 및 제2호관련)

재 료 명	두께 (밀리미터)	비 고
유 리 면	50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 승인 을 얻어 생산한 건축물의 보존재이어야 한다.
난연성발포폴리스티렌폼	50	
포 리 우 레 탄 폼	50	
요 소 발 포 보 온 재	50	
암 면(광 석 면)	50	
석 면	60	
규 산 관 솜	60	
탄 산 마 그 네 솜	70	
코 르 크	70	
퍼 라 이 트	90	
기 타	열전도저항의 값이 1.6m <sup>2</sup> h℃ / Kcal 이상되는 두께	

1. 신청내용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처리기간	
				일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⑥면허번호	계호	
	⑤사무소명		⑦등록번호	계호	
	⑧주소	(전화)			
대지조건	⑨위치		⑩지구		
	⑫지목		⑬전면도로폭	m	
	⑭면적 <sup>m<sup>2</sup></sup>		⑮조경면적 <sup>m<sup>2</sup></sup>		
용도	⑯주용도		⑰부속용도		
규모	구분 면적 <sup>m<sup>2</sup></sup>	신청부분	신청이외 부분	⑱합계	⑲공사종별
				⑳건축면적	
	㉒연면적			㉓용적율%	
㉔구조		㉕층수	지하( )층	지상( )층	
㉖지하층면적 <sup>m<sup>2</sup></sup>		㉗주차면적 <sup>m<sup>2</sup></sup>			
㉘착공예정일	년 월 일	㉙준공예정일	년 월 일		
㉚표준설계도서번호	계호	㉛토지형질변경 면적 <sup>m<sup>2</sup></sup>			
㉜가설건축물	면적 <sup>m<sup>2</sup></sup>	구조			
㉝도로점용	면적 <sup>m<sup>2</sup></sup>	점용기간			
㉞배수시설	배수량	구조			
㉟오수정화시설및 분뇨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명, 구조				

허가 제 호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5조(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2.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⑳주용도	㉑공사종별												
㉒부속용도	㉓층수	지하( )층											
바닥면적 <sup>m<sup>2</sup></sup>	구분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계
	㉔신청부분												
	㉕신청이외부분												
	㉖합계												
㉗기둥수 또는 기둥면적의무예 <sup>cm</sup>													
㉘청사제지판간격 <sup>m</sup>													
㉙층높이 <sup>m</sup>													
㉚거실의반자높이 <sup>m</sup>													
구조	㉛주요구조부												
	㉜기초	㉝지붕											
	㉞벽체	㉟콘크리트설계강도 kg/cm <sup>2</sup>											
단열계	㊱외벽	㊲바닥											
	㊳안벽	㊴창호											
	㊵최고높이 <sup>m</sup> ㊶처마높이 <sup>m</sup>												
㊷개광면적비율 %      ㊸직통계단의수													
㊹승용승강기대수      ㊺배상용승강기대수													
㊻냉·난방식      ㊼변소형식													
㊽전기설비용량      ㊾기타													

건축법 제5조(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수 수 료

건축법시행규칙제3조에의함

1.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2.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배치도 1부 및 건축법시행규칙 별표1의 4란, 5란 또는 9란에 정하는 해당도서 각 1부에 한한다)

신청인	처리기간	협의기관
	시·구·군	관계부서

```

    graph LR
      A[신청인] --> B[접수]
      A --> C[허가서 교부]
      B --> D[검토]
      D --> E[협의]
      D --> F[결재]
  
```

- 작성요령
1.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2.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부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입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및 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 )안을 =로 삭제 표시한다.

4.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5. ㉔란은 그 층에 있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치수중 최소의 것을 기입한다.
6. ㉕란은 그 층에 있는 횡가재 지점간의 거리중 최대의 것을 기입한다.
7. ㉖란은 그 층의 층높이중 최대의 것을 기입한다.
8. ㉗란은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높이중 최소의 것을 기입한다.
9. ㉘란은 목조, 조석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등으로 기입한다.
10. ㉙란은 시공구조방식 및 재료등을 기입한다. (예 : 철골트러스위스레이트)
11. ㉚란은 기초형식을 기입한다. (예 : 콘크리트말뚝 위 독립기초)
12. ㉛란은 처마의 외장재료를 기입한다.
13. ㉜란은 주재료를 기입한다.
14. ㉝란은 콘크리트 4주 압축강도를 기입한다.
15. ㉞-㉠란은 단열재료 및 두께 또는 열관류율을 기입한다.
16. ㉡란은 연탄아궁이식 온돌, 온수난방, 증기난방등으로 기입한다.
17. ㉢란은 수세식, 제거식으로 기입한다.
18. ㉣란은 전기설비 총용량을 기입한다.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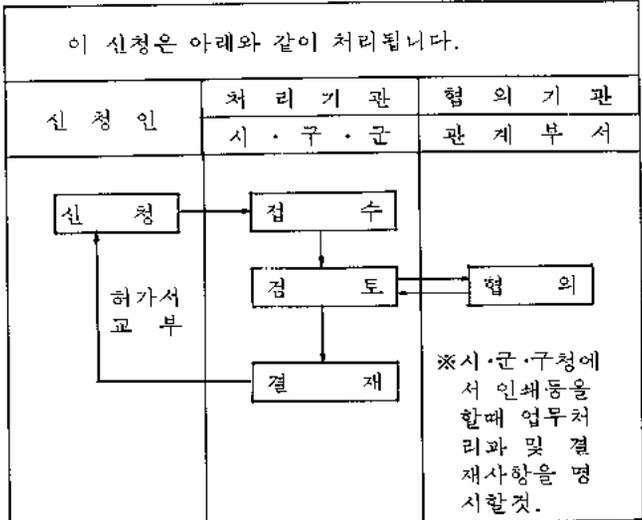
신 청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평면도(대수선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층)	수수료
2. 단면도( " " )	없음



[별지제 2호서식]

대수선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처리기간
				일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④대 지 위 치				
⑤건축면적 m <sup>2</sup>		⑧주 용 도		
⑥연 면 적 m <sup>2</sup>		⑨부 속 용 도		
⑦구 조		⑩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 대수선 내용 <input type="checkbox"/> 가. 내력벽의 벽면적 ( ) m <sup>2</sup> 를 해체하여 <input type="checkbox"/> 수선 <input type="checkbox"/> 변경한다. <input type="checkbox"/> 나. 기둥 ( )개를 해체하여 <input type="checkbox"/> 수선 <input type="checkbox"/> 변경한다. <input type="checkbox"/> 다. 보 ( )개를 해체하여 <input type="checkbox"/> 수선 <input type="checkbox"/> 변경한다. <input type="checkbox"/> 라. 지붕틀 ( )개를 해체하여 <input type="checkbox"/> 수선 <input type="checkbox"/> 변경한다. <input type="checkbox"/> 마. <input type="checkbox"/> 방화벽 <input type="checkbox"/> 방화구획을 위한 <input type="checkbox"/> 바닥 <input type="checkbox"/> 벽을 해체하여 <input type="checkbox"/> 수선 <input type="checkbox"/> 변경한다. <input type="checkbox"/> 바. <input type="checkbox"/> 주계단 <input type="checkbox"/> 피난계단 <input type="checkbox"/>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input type="checkbox"/> 수선 <input type="checkbox"/> 변경한다. <input type="checkbox"/> 사.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input type="checkbox"/> 외, 부형태 <input type="checkbox"/> 색 <input type="checkbox"/> 담장을 변경한다.				

허가제 호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대수선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수선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 5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도도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

[별지제 3호서식]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처리기간
				일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설 계 자	④성 명	⑥면 허 번 호	계 호	
	⑤사무소명	⑦등 록 번 호	계 호	
	⑧주 소	(전화)		
⑨대 지 위 치				
⑩지 역		⑪지 구		
⑫건축면적 m <sup>2</sup>		⑭주 용 도		
⑬연 면 적 m <sup>2</sup>		⑮부 속 용 도		
⑯구 조		⑰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⑱용도변경내용				



⑤ 허가신청부분	<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건축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재축
	<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용도변경
	<input type="checkbox"/> 공장물의 축조
⑥ 사유	
<p>귀하의 허가신청은 위 사유로 당해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건축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허가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㉑</p>	

	<p>※시·군·구청에서 인쇄등을 할때 업무처리과 및 결재사항을 명시할것.</p>
<p>제 호</p> <p>건축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㉑</p>	

[별지 제 6 호 서식]

증 축 등 신 고 서		처리기간
		일
① 건축구분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재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설계변경	
건축자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대지의위치		
⑥지역	⑦지구	
⑧대지면적㎡	⑨공사종별	
⑩주용도	⑪부속용도	
규모	구분 면적㎡	⑫신청부분 ⑬신청이외부분
	⑭합계	⑮공사또는 변경면적㎡
	⑯건축면적	⑰건폐율%
	⑱연면적	⑲용적율%
⑳구조	㉑층수	지하( )층 지상( )층
㉒작공예정일	년 월 일	㉓준공예정일
<p>건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건축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㉑</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p> <p>1. 평면도 1부</p> <p>2. 단면도 1부</p>		<p>수수료</p> <p>없 음</p>

[별지 제 7 호 서식]

건축 허가 대장		대장번호	제 호
허가번호	제 호		
①허가년월일	년 월 일	②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③준공년월일	년 월 일
건축주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설계자	⑦성명	⑧건축사면허번호	
	⑨주소또는 사무소명	⑩등록번호	계 호
공사감리자	⑪성명	⑫건축사면허번호	
	⑬주소또는 사무소명	⑭등록번호	계 호
공사시공자	⑮성명	⑯주민등록번호	
	⑰주소또는 사무소명	⑱건설업면허번호	계 호
대지주권	⑲위키		
	⑳대지면적㎡	㉑지역	지역 ㉒지구 지구
용도	㉓주용도	㉔기타용도	
구분	㉕건축면적㎡	㉖바닥면적㎡	
기준부분			
㉗구조	㉘건폐율%	㉙용적율%	㉚건축물의 높이 m
		기준층의 최고높이	㉛주차장의면적㎡
			목내 목외 계
㉜담당공무원	허가	과 장	계 장
	준공	①	①
		담 당	담 당
		①	①

증·개축 및 용도변경등 허가변경사항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구·군	관 계 부 서

구 분	1차허가	2차허가	3차허가
㉚건축주			
㉛허가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㉜허가년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설계자	⑫성명			
	⑬사무소명			
공사감리자	⑫성명			
	⑬사무소명			
공사시공자	⑭성명			
	⑮상호			
용도	⑯주용도			
	⑰기타용도			
⑱ m <sup>2</sup> 건축면적	허가부분			
	계			
⑲ m <sup>2</sup> 연면적	허가부분			
	계			
⑳ 건축율 % (기준포함)				
㉑ 용적율 % (기준포함)				
㉒ 주라장면적 (기준포함) m <sup>2</sup>	옥내			
	옥외			
	계			
㉓ 건축물최고 높이 m				
㉔ 준공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과장	㉕	㉖	㉗
	계장	㉘	㉙	㉚
㉛ 담당 공무원	남	㉜	㉝	㉞
	당	㉟	㊱	㊲

[별지제 8호서식]

위법건축공사보고서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공사시공자	④성명또는		⑤건설업면허번호	계 호
	⑥주소	(전화)		
⑦	대지위치			
⑧	허가번호	계 호	⑨허가일자	년 월 일
⑩	착공일자	년 월 일	⑪준공예정일	년 월 일
위법사항	⑫발생일자	년 월 일		
	⑬내용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기재한다.)		
조치내용	⑭조치일자	년 월 일		
	⑮내용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기재한다.)		
위의 공사는 건축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중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공사감리자 ㉕</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위법내용
조치내용

[별지제 9호서식]

<input type="checkbox"/> 공사감리자 <input type="checkbox"/> 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대지위치		
⑤	허가번호	계 호	⑥허가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⑦	착공일자	년 월 일	⑧공정
			%
⑨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인	변경전	변경후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⑩	성명		
⑪	면허번호		
⑫	사무소명		
⑬	사무소위치		
⑭	공사감리 또는 시공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p>위와같이 건축법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p> <p>(<input type="checkbox"/> 공사감리자) (<input type="checkbox"/> 공사시공자)의 변경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㉕</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제 10호서식]

착공신고서			처리기간
1. 신고내용			즉시
* 접수번호: [ ][ ][ ][ ]			
① 건축장소	시도	시군동	동리번지(통반)
②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③ 설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	
④ 공사감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	
⑤ 공사시공자	성명또는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	
⑥	허가일자	년 월 일	⑦허가번호
			계 호
⑧	착공일자	년 월 일	⑨착공기간
			년 월 일부터
<p>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착공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㉕</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구비서류: 동별건축내용			수수료
			없음

# 기 재 요 령

- ※ 표한 난은 기재하지 말 것.
-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만 기재할 것
- 동별 건축내용은 매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단,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사무실·작업장·창고·차고·경비실·변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별개의 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된 건축물에 포함시킬 것.
-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⑯⑰⑱⑲⑳ 난은 □안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할 것.

나. ⑪ 건축주 :

“정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입법기관·사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위원회 등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및 한국은행을 말한다.

다. ⑬ 건축물의 용도 :

대중음식점·부덕방·떡방앗간·고등학교·무역회사사무소·방직공장·전어물 창고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이며, 동일 동내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최대의 바닥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주된 용도를 기재한다. 단, 주택부분이 연면적의 2분의 1미만일 때에는 주택면적이 최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면적이 큰 용도를 주용도로 하되 ⑮이하의 난에는 해당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라. ⑭ 건축물의 구조 :

기둥 또는 내벽력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가에 따라 구분할 것.

마. ⑰ 주택의 형태 :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제 2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할 것.

바. ⑲ 주택부분의 공사면적 :

연립주택·아파트에서는 공용부분의 면적도 포함되며, 병용주택 기타에서는 주거용에 사용되는 면적만으로 한다.

2. 동별건축내용	⑩ 동별번호	□□
⑪ 건축주	1. 정부 3. 법인	2. 정부투자기관 4. 개인 5. 기타 □
⑫ 공사종별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재축 5. 이전 □	
⑬ 건축물의용도	( )용 건축물 ※ □□□	
⑭ 건축물의구조	1. 목조 2. 조적조 3. 철근콘크리트조 4. 철골조 5. 철골철근콘크리트조 6. 기타 □	
⑮ 공사부분의 면적	십만 만 천 백 십 일 □□□□□□ m <sup>2</sup>	

⑬ 신축공사의 경우 층 수	(지하층의 층수는 산입하지 아니함) □□ 층
⑭ 신축공사의 경우 대지면적	(신축건물이 2동 이상인 백만십만 천 백 십 일 경우는 1회만 기입함) □□□□□□□□ m <sup>2</sup>
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할 때	
⑯ 사업주체	1.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2. 등록업자 3. 지정업자 4. 주택조합 5. 기타 □
⑰ 주택의 형태	1. 단독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4. 기타 □
⑱ 주택의 종류	1. 전용주택 2. 병용주택 3. 기타 □
⑲ 주택부분의 공사면적	만 천 백 십 일 □□□□□□ m <sup>2</sup>
⑳ 신설호수 (세대수)	(신축 및 호수의 증가를 수반하는 증축의 경우에 한함) □□□ (세대)

(별지제11호서식)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처리기간
1. 신고내용				일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⑥면허번호	제 호
	⑤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 호
	⑧주소		(전화)	
공사감리자	⑨성명		⑪면허번호	제 호
	⑩사무소명		⑫등록번호	제 호
	⑬주소		(전화)	
공사시공자	⑭호는상표		⑮건설업면허번호	제 호
	⑯주소		(전화)	
⑰대지위치				
⑱허가번호		제 호	⑲허가일자	년 월 일
⑳착공일자		년 월 일	㉑준공일자	년 월 일
※경사일자		년 월 일	※심사사	⑳
건축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 준공, □ 동별준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㉒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건축허가서사본(건축법제 5 조 제 2 항에 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신고증사본)				없 음
2. 신청건축물 동별개요(동별준공에 한한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구·군	관계부서

신청인

접수

협의

교부

검재

결재

※ 시·군·구청에서 인쇄등을 할때 업무처리과 및 결재사항을 명시할 것

제 호

건축법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검사로 건축법 제 7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정소법 제 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

전기통신공사법 제 2조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㉑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⑥번거번호
	⑤사무소명	⑦등록번호
	⑧주소	(전화)
공사시공자	⑨성명	⑩건설업면허번호
	⑪호출번호	(전화)
⑫배지위치		
⑬지역		⑭지구
⑮허가번호	제 호	⑯허가일자
⑮허가번호	제 호	⑯허가일자
⑰준공검사일	년 월 일	⑱결사자

위와같이 건축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

에 대한 준공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㉑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허가서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신청건축물 등별개요		매	
		( )매중	
⑳주 용 도	㉑공사종별		
㉒부 속 용 도	㉓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바 다 크 적	구분 층별	㉔층	층
		㉕층	층
		㉖층	층
㉗합 계			
㉘기 내 외 의 높 이	㉙층 고 도		
㉚창 가 재 시 전 의 높 이	㉛층 고 도		
㉜창 높 이	㉝층 고 도		
㉞거 실 의 반 사 높 이	㉟층 고 도		
구 조	㊱수 요 구 조 부	㊲지 붕	
	㊳기 초	㊴처 나	
	㊵벽 체	㊶콘 크 리 트 설 계 강 도	kg/cm <sup>2</sup>
단 면	㊷외 벽	㊸바 다	
	㊹반 자	㊺창 호	
㊻최 고 높 이	㊼지 마 높 이	m	
㊽태 광 면 적 비 율	㊾직 통 계 단 의 수		
㊿승 용 승 강 기 대 수	㋀비 상 용 승 강 기 대 수		
㋁냉· 난 방 방 식	㋂변 소 형 식		
㋃전 기 설 비 용 량	㋄기 타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구·군	시·구·군	관계부서

신청

접수

교부

검  
사

결  
재

※ 시·군·구청에서 인쇄등을 할때 업무처리과 및 결재사항을 명시할 것.

제 호

건축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

에 대한 준공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㉑

(별지제13호서식)

가사용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처리기간
		일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별지제12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용도변경 <input type="checkbox"/> 공작물의 축조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처리기간
	일

설계자	④성명	⑥면허번호	제	호								
	⑤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	호								
	⑧주소 (전화)											
공사 감리자	⑨성명	⑪면허번호	제	호								
	⑩사무소명	⑫등록번호	제	호								
	⑬주소 (전화)											
공사 시공자	⑭성명또는 이름	⑮건설업면허번호	제	호								
	⑯주소 (전화)											
⑰배치위치												
⑱허가번호		제	호	⑲허가일자	년 월 일							
⑳작공일자		년 월 일	㉑준공예정일		년 월 일							
㉒용도		㉓공정		%								
가사용 신청 내용	구분	별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계
	㉔신청구분											
	㉕신청이유											
	㉖항제											
㉗가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 (일간)						
※검사일자		년 월 일		※검사자		㉘						

(별지제 14호 서식)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원증										처리기간		
일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⑥면허번호			제	호						
	⑤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	호						
공사 감리자	⑧주소 (전화)											
	⑨성명	⑪면허번호			제	호						
공사 시공자	⑩사무소명	⑫등록번호			제	호						
	⑬주소 (전화)											
공사 시공자	⑭성명또는 이름	⑮건설업면허번호			제	호						
	⑯주소 (전화)											
⑰배치위치												
⑱허가번호		제	호	⑲허가일자		년	월	일				
⑳작공일자		년	월	일	㉑중간검사예정일		년	월	일			
㉒구분신청서구분내용												
※검사일자		년	월	일	※검사자		㉘					
간혹별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중간검사를 신청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㉙</p> <p>(시장·군수·구청장) 귀 하</p>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건축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건축물의 가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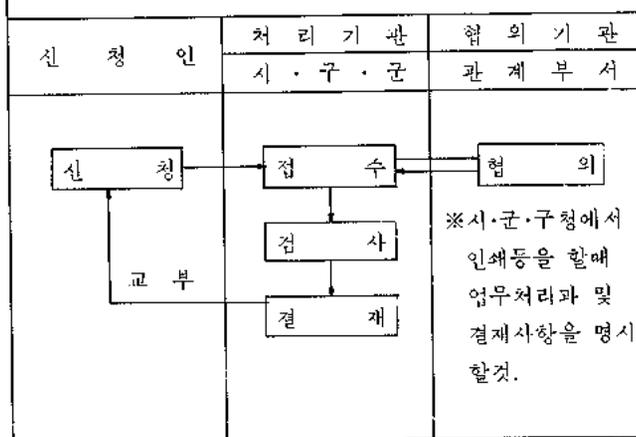
신청인 ㉙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첨부서류: 허가서 사본

수수료 없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계 호

건축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검사한 결과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함.

(시장·군수·구청장) ㉙

(별지제 15호 서식)

위법 건축물 표지			
①위치			
②건축주	③공사시공자		
④허가또는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⑤허가번호	
⑥주요용도			
⑦위반사항			
⑧조치사항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㉙			

[별지 제 16호 서식]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⑥면허번호	계 호
	⑤사무소명	⑦등록번호	계 호
	⑧주소	(전화)	
공사감리자	⑨성명	⑪면허번호	계 호
	⑩사무소명	⑫등록번호	계 호
	⑬주소	(전화)	
공사시공자	⑭성명또는 상호	⑮건설업면허번호	계 호
	⑯주소	(전화)	
⑰대지위치			
⑱허가번호			
위반사항	⑳발생일자	년 월 일	
	㉑내용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기재한다)	
조치사항	㉒조치일자	년 월 일	
	㉓내용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기재한다)	
적발자	㉔적발일시	년 월 일	
	㉕지성명 직급	성명	⑳
건축법 제 42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 및 관련 설계자 등을 위와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㉖			

위반내용
조치내용

[별지 제 17호 서식]

제 호	건축물등출입점사공무원증
소속	직명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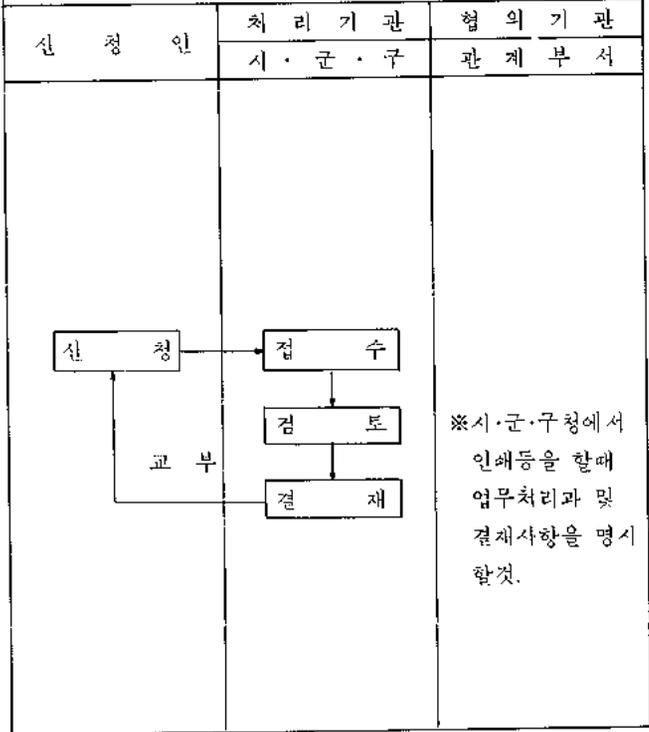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㉗	

[별지 제 18호 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위치				
⑤대지면적	m <sup>2</sup>	⑥건축면적	m <sup>2</sup>	
⑦용도		⑧연면적	m <sup>2</sup>	
⑨구조		⑩층수	지하상 { } 층	
⑪준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⑫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⑬준공예정일	년 월 일	
건축법 제 4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코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제 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증			
건축법 제 4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㉙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위치				
⑤대지면적	m <sup>2</sup>	⑥건축면적	m <sup>2</sup>	
⑦용도		⑧연면적	m <sup>2</sup>	
⑨구조		⑩층수	지하상 { } 층	
⑪준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⑫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⑬준공예정일	년 월 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9호 서식]

건축허가표지			
건축주	①성명		
	②주소		
설계자	③성명		
	④사무소명		
공사감리자	⑤성명		
	⑥사무소명		
공사시공자	⑦성명또는상호		
	⑧주소		
공사현장관리자	⑨성명		
	⑩주소		
⑪허가번호	⑫허가일자	년	월 일
⑬대지위치			
⑭건축면적	⑮연면적		
⑯주요용도	⑰층수	지상( ) 지하( )	
⑱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허가기관)			

### 도시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0,937호 · 1982. 10. 23

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시설

제3조제1항제2호 라목중 “건축물에 건조된 광장”을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 다목중 “건축물에”를 “가목 및 나목에”로 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시장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제4조 제목중 “규모등”을 “규모”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될 시설)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구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구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중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새로이 결정할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지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안”을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안”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설치할수 있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5. 주택지·초지·과수원·도로변 기타 이에 유사한 토지에서의 축목의 재식 및 벌채와 농지에서의 축목의 벌채
6. 고사된 축목 또는 넘어질 우려가 있는 축목의 벌채나 간벌·정지등 육림을 위한 축목의 벌채
7.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중 용도제한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된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의 공고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건설부장관이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 검사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다.

1.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에 관한 계획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1) 미관지구
- (2) 고도지구
- (3) 방화지구
- (4) 교육 및 연구지구
- (5) 업무지구
- (6) 임항지구
- (7) 공지지구
- (8) 보존지구
- (9) 공항지구

(10) 아파트지구(아파트건설의 완료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수립결과 아파트건설이 필요없게 된 잔여지에 대한 아파트지구해제를 위한 변경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사업에 관한 계획의 구역안에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 (1) 도로(서울특별시·직할시의 경우는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를, 기타의 시의 경우는 폭 25미터이상의 도로를 제외한다)
- (2) 광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경우는 폭 3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교통광장을, 기타의 시의 경우는 폭 2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교통광장을 제외한다)
- (3) 주차장
- (4) 자동차정류장(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을 제외한다)

- (5) 케 도
- (6) 삭 도
- (7) 고속철도(본선을 제외한다)
- (8) 하 천
- (9) 항만(1층 지정항만을 제외한다)
- (10) 녹지(철도변에 녹지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11) 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한다)
- (12) 운동장(종합운동장 및 골프장을 제외한다)
- (13) 유원지
- (14) 전망탑
- (15) 공공공지
- (16) 공용의 청사
- (17) 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을 제외한다)
- (18) 도서관
- (19) 시 장
- (20) 수 도
- (21)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 (22) 공동구
- (23) 도살장
- (24) 공동묘지
- (25) 화장장
- (26)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 (27) 전기공급설비
- (28) 저수지
- (29) 방풍설비
- (30) 가스공급설비
- (3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32) 방수설비
- (33) 방화설비
- (34) 사방설비
- (35) 방조설비
- (36) 연구시설
- (37) 문화시설
- (38) 종합의료시설
- (39) 사회복지시설
- (40) 통신시설
- (41) 자동차검사시설
- (42) 유수지시설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의한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결정(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계획결정 및 그 변경결정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사업에 관한 계획의 구역안에서의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결정중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 (1) 단위도시계획시설면적의 20분의 1미만인 구역의 변경(공원 및 녹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또는 특히 비탈면등으로 인하여 도

시계획 시설의 구역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의 변경결정

(3) 도시계획시설 내용의 결정 및 변경결정

라.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중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한한다)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구역 면적의 25분의 1 미만으로서 변경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당해 사업계획구역의 변경결정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안에서의 폭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결정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안에서의 공원의 전체면적 및 그 수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위치의 변경결정과 공원 상호간 면적의 변경결정

마. 기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의 승인 및 고시등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실효고시

(3)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의 공고

(4)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의 승인(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과 하수도사업중 중말처리장설치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하수도사업중 중말처리장설치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 읍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권한과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나.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의한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이 경우 당해시설중 학교시설에서는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을 제외한다.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3. 면의 도시계획안에 있어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가. 법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및 그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권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도시계획구역중 별표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구역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시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의”를 “시의”로 한다.

제7조의2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위도시계획시설구역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구역(공원 및 녹지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변경과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사업계획구역면적의 25분의 1 미만으로서 변경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당해 사업계획구역의 변경결정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특히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구역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시설의 변경결정

3. 이미 결정된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계획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및 시설내용의 결정 및 변경결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경우 지형도를 작성할 수 없는 공유수면인 때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2 제5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군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집행계획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판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상상(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계장에 한한다)

제19조제2항제2호중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및 전문대학”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4. 백화점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500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제19조의4 제1항중 “33평방미터이하”를 “33제곱미터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가목중 “100평방미터이하”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동호나목중 “33평방미터이하”를 “3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사설계도서(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사업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협의를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제25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6.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

제2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대체될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제27조의 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관계서류사본의 공람은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의 변경

2.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제2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기타의 행정청인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도지사 또는 기타의 행정청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중 “위원 5인이상 7인이내”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58조의 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시에 있어서는 그 위원의 수를 13인까지 할 수 있다.

제61조제3항중 “제58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제58조의 2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제58조제3항”을 “제58조의 2제3항”으로 하며, “도지사”를 “시장”으로 한다. ]를 “도지사”를 “시장”으로 본다. ]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준용하고자 하는 법의 조항

제6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 3 (준공검사) ①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도시계획사업은 건설부장관이 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의 승인을 할 때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

한 준공검사를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준공검사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중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를 “건설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 2,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의 2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의 2제1항·제3항 내지 제8항, 제19조의 5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19조의 6제1항, 제19조의 7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52조제3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제3항, 제66조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 또는 면의 도시계획구역중 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구역

경기도 화성군 및 시흥군의 반월도시계획구역

전라남도 여천군의 여천도시계획구역

충청북도 증원군 상도면 수안보도시계획구역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도시계획구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도시계획구역

경상남도 창원군 부곡도시계획구역

[별표 5]

시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

수 원	동 해	광 주	마 산
성 남	태 백	목 포	진 주
의 정부	청 주	여 수	울 산
안 양	대 진	순 천	진 해
부 천	천 안	포 향	제 주
춘 천	진 주	경 주	
원 주	군 산	안 동	
강 릉	이 리	구 미	

### ◇都市計画法施行令 改正理由

都市計画法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權限중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는 對象을 정하고, 아울러 現行規定의 運營上 나타난 未備點을 整備·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市長·郡守의 許可없이 行할 수 있는 輕微한 行爲의 범위를 擴大함(令 第5條 第1項 第4號 改 第7號).

나. 美觀地區·高度地區 등 地區의 指定 및 變更에 관한 權限 등 建設部長官의 權限중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に 委任할 事項에 관한 權限을 정함(令 第6條).

다. 建築法 등 다른 法令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받은 都市計劃事業에 의한 竣工檢査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令 第66條의 3 第1項 但書). (법제처 제공)

# 新 入 会 員

<p>□ 李鳳奎 / 전남 / 27. 7. 12 일생 / 목포공고건축과 / 대한신한건축 연구소 / 광주시 동구대인동311 - 5 / 2 - 7277</p>	<p>□ 蔡奎南 / 서울 / 30. 2. 11 일생 / 서울공대 건축과 / 화신건축 연 구소 / 종로구종로1가47번지 / 7 22-5781 · 725-2779</p>
<p>□ 沈生吉 / 전북 / 36. 1. 18 일 생 / 전주공고건축과 / 반도건축설 계사무소 / 전북부안군부안읍동중 리 185 / 2026</p>	<p>□ 朴学淳 / 서울 / 37. 3. 30 일 생 / 광주공고 / 진흥건축설계 / 서 울 구로구 구로동 420-4 / 62- 8862</p>
<p>□ 朴昌欽 / 경남 / 37. 11. 10 일 생 / 부산공대건축과 / 우성건축설 계사무소 / 안양시관왕동563-8 / 2-4118</p>	<p>□ 吳龍夫 / 서울 / 41. 5. 25 일 생 / 한양공대건축과 / (주)석우중 합설계 / 서울 강남구 잠원동 132 - 15</p>
<p>□ 陳秋慶 / 경북 / 43. 9. 15 일생 / 영남대건축과 / 자연건축 / 서울 강동구방이동93 / 412-1188</p>	<p>□ 愼相穆 / 경남 / 44. 3. 24 일 생 / 동아대건축과 / 아림건축설계 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847 - 14 / 67-3447</p>
<p>□ 鄭富泳 / 경남 / 47. 6. 20 일 생 / 부산공전건축과 / 현대건축설 계사 / 경남양산군 양산읍 북부동 413-2 / 2866</p>	<p>□ 沈聖輔 / 경기 / 47. 7. 3 일 생 / 단국대건축과 / (주)세마건축 설계사무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도동1-613 / 782-9182</p>
<p>□ 吳亮根 / 경기 / 47. 11. 10 일 생 / 서울공고건축과 / 신동아건축 공단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 362-2280</p>	<p>□ 安秉碩 / 경남 / 48. 12. 22 일 생 / 부산공전건축과 / 건축사사무 소도남 / 경남김해시서상동102 / 2-9343</p>
<p>□ 崔貞一 / 경남 / 51. 4. 10 일 생 / 경남공전건축과 / 부산건축설 계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85-17 / 89-2053</p>	<p>□ 徐貞子 / 부산 / 51. 6. 8 일 생 / 동아대건축과 / 해조건축설계 사무소 / 부산시동래구명륜동596- 3 / 552-3032</p>
<p>□ 趙英一 / 부산 / 51. 6. 25 일 생 / 부산공전건축과 / 성림건축설 계 / 서울강남구서초동85-1 / 557 - 9178</p>	<p>□ 俞柄雨 / 충남 / 51. 9. 25 일 생 / 충남대건축과 / 씨·엔·유건축 연구소 / 대전시중구대흥동189 / 253-1456</p>

<p>□李金烈 / 경남 / 51. 9. 29일 생 / 연세대공대건축과 / 미동종합 건축연구소 / 서울강남구청담동100 -15 / 555-4399</p>	<p>□李炯浩 / 서울 / 51. 10. 16일 생 / 영남대공대건축과 / 경남건축 설계사무소 / 경기도용인군용인을 김릉장리254-143 / 2875</p>
<p>□宋俊榮 / 충북 / 52. 2. 4일 생 / 중평공고건축과 / 서원건축설 계사무소 / 청주시우암동124-6/ 2-3244</p>	<p>□李圭政 / 충북 / 52. 4. 12일 생 / 수도공고건축과 / (주) 삼도건 축 / 서울용산구한강로 3가65-427 / 792-0126</p>
<p>□金會鉉 / 전남 / 52. 10. 6일 생 / 전남대건축과 / 우성건축설계 사무소 / 전남광주시 동구 대인동 133-1 / 7-9662</p>	<p>□宋昌夔 / 경북 / 52. 11. 6일 생 / 대구공고건축과 / 원경 주택설 계사무소 / 대구 중구공평동 59- 4 / 46-0122</p>
<p>□柳芝鉉 / 서울 / 52. 11. 11일 생 / 성동공고건축과 / 유진건축연 구소 / 서울동대문구신설동102-4 / 94-2345</p>	<p>□廣基錫 / 전남 / 53. 3. 8일 생 / 조선공전건축과 / 강건축설계 사무소 / 전남광주시대인동133-1 / 7-9661</p>

## 會員動靜

동정

□부산지부 △황복명·김진철  
회원 / 함포도일 건축설계 사  
무소 / 동래구 북천동3 74-1 / 상호  
변경 / 9. 29일 △이진욱회원 / 함동건  
축설계사무소 / 동래구 수안동 593 /  
업종변경 / 9. 29일 △강세주회원 / 세

경건축설계사무소 / 동래구 수안동593  
/ 업종변경 / 9. 29일 △정문일회원 / 황  
제건축설계사 / 동래구 수안동497-3  
/ 업종변경 / 10. 14일 △박상수회원 /  
신아건축설계사무소 / 동래구 수안동  
52 / 업종변경 / 10. 14 △이동길회원  
/ 영남건축설계사무소 / 중구 남포동  
1가47 / 업종변경 / 10. 15일 △오입남  
회원 / 남미건축설계사무소 / 중구 남  
포동 1가 47 / 업종변경 / 10. 15일 △  
양정부회원 / 건미건축설계사무소 / 중  
구 동광동 2가 4 / 업종변경 / 10. 15  
일 △김일조회원 / 광미건축설계 공단  
/ 부산진구 부전동 352-14 / 업종변경  
/ 10. 21일 △김일수회원 / 아진건축설  
계사무소 / 부산 진구 부전동 396-19  
/ 업종변경 / 10. 21일 △박만석회원 /  
신일건축설계사무소 / 업종변경 / 10. 21

일 △이성실회원 / 조일건축 설계사무  
소 / 동래구 북천동 380-5 / 업종변  
경 / 10. 26일 △송용부회원 / 화동건축  
설계사무소 / 동래구 수안동 521 / 업  
종변경 / 10. 26일 △배성용 회원 / 동양  
건축설계사무소 / 해운대구 중동 1372  
-15 / 업종변경 / 10. 27일

□강원지부 △원호창회원 / 원주중  
합건축설계사무소 / 원주시 일산동206  
/ 6. 30일 △심명택회원 / 제일건축설  
계사무소 / 원주시 학성 2동 270-28 /  
6. 30일 △이실영회원 / 협동 건축사무  
소 / 원주시 중앙동 28 / 6. 30일 △김  
화영회원 / 김화영건축설계사무소 / 원  
주시 중앙동 60-54 / 6. 30일 △김재  
철회원 / 강릉건축설계사무소 / 강릉시  
성내동 25 / 8. 11일 △박영봉회원 / 신

아건축설계사무소 / 동해시 발한동 37-11 / 9. 28일 △민경수회원 / 대마건축설계사무소 / 춘천시 요선동 15-7 / 10. 8일 △황기정회원 / 삼화건축 설계사무소 / 춘천시 중앙로 1-66 / 10. 8일 △이찬호회원 / 대림건축설계사무소 / 춘천시 중앙로 1가 90-2 / 10. 8일 △조정호회원 / 현대건축 설계사무소 / 춘천시 중앙로 1가 90-1 / 10. 8일 △최병욱회원 / 공간건축설계 사무소 / 춘천시 조양동 37-27 / 10. 8일

**전입** □서울지부 △한원수회원 / 입체건축 / 동대문구 신설동 93-16 / 경기도 / 10. 25일 △한익연회원 / 보령합동건축 / 강남구방배동1457 / 경기도 / 10. 25일

**전출** □서울지부 △조성만회원 / 가야건축설계 / 중구 계동 147-21 / 경기도 / 10. 26일 △김병욱회원 / 대우합동건축 / 도봉구 수유동 176-71 / 경기도 / 6. 26일

**전시** □대구지부 △대구직할시에서 지명현상 설계한 대구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 / 출판작 7작품이 대구 건축사회관 5층에서 전시 / 10. 12일부터 16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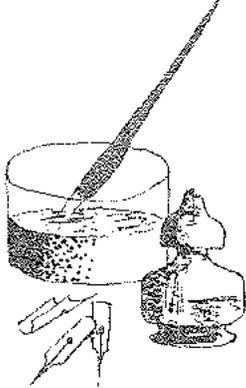
**투입** □서울지부 △김영래·임영의 회원 / 한강종합건축 / 관악구 봉천동 399-7 / 82. 10. 1일 ~ 83. 4. 1일까지 △허명관 회원 / 한

성종합건축 / 영등포구 여의도동 1-576 / 82. 10. 6일 ~ 83. 10. 5일까지

**결혼** □충남지부 △고남주 회원 / 영애 결혼 / 10월23일14시 / 동대전 성결교회 / □경북지부△최준환 회원 / 장남결혼 / 10월17일 / 포항남도예식장 △이우상 회원 / 장녀결혼 / 10월23일 / 서울 흥사단 본부 □부산지부 △김충부 회원 / 결혼 / 10월16일 / 초장동 성당 △천창길 회원 / 영애 결혼 / 10월23일 / 부산호텔 2층

**결혼** □경북지부 △현석홍 회원 / 모친별세 / 10월16일 / 자택 △장학선 회원 / 모친별세 / 10월27일 / 자택

## ◆ 編輯 後 記 ◆



□높다란 발딩 신축공사장 골조 위를 꼭예사처럼 날렵하게 오가는 인부를 본다.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한다. 그로하여 불안함을 느끼는 누구의 탓일까. 공사장의 대형 사고가 지난 한해를 점철했음이 새삼 생각된다. 안전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 (用)

□5년 이상 한집에서 부모를 모신 사람. 3년 이상 대불림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90%를 공제한 10%만 상속세를 부여키로 한다는 세법개정안이 재무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다는 어느 신문의 칼럼을 보았다. 그 칼럼은 또 이렇게 적고 있었다. 父孿는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고.

떨어지는 기온 탓일까. 아니면 낙엽의 빗공에서 오는 허전함일까.

춥다. 마냥 춥기만 하다. 소월의 <父孿>를 읊조리는 마음이..... (京)

□요즘들어 아침이면 안개가 자주 낀다. 안개 낀 아침의 출근 길에서 기승조래 반짝이는 눈동자들을 보노라면, 몇주간이고 계속 된다는 영국의, 공해와 위영진 살인적인 안개에 비하면, 초겨울의 안개 낀 아침 이라니 / 나분히 낭만적 이랄 수 있겠다. 회지를 붙들고 씨름 해 온지도 한 해가 되

어간다. 지나온 날들이 바램보다는 부족함에 아쉽기도 하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위해 본다. 11월호를 편집하면서 내 마음은 벌써 새해의 1월을 달린다. 이제 편집을 끝내고 다시 가다듬는 심호흡을 한다. (槓)

□거리거리 나딩구는 향갈색의 낙엽을 본다. 쓸쓸하고 고독한 마음이어야 함에도 웬지 아무런 동요도 없다. 그저 발밑에 켜켜쳐진 노오란 은행잎들을 바라보며 조금 공허해할 뿐이다.

메마른 마음탓일까, 아니 여유없는 생활공간탓이라고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

11월, 무언가를 느끼며 더불어 따스함 속의 고마웠던 일들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다. (宙)